

현안분석 2005-

법령용어 7

형사특별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훈동 · 이주일

형사특별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Study on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Criminal Special Code

연구자 : 이훈동(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Lee, Hun-Dong

이주일(세명대 법학과 겸임교수)
Lee, Ju-Il

2005. 11.

국 문 요 약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지 8년여가 지나서야 우리 형법이 탄생하였다. 형법을 제정당시에 관여했던 편찬위원들은 우리 민족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토대로 헌법정신에 맞는 형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반성하면서 한국 형법학의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해방된 조국에서 한동안 일본형법전이 적용되는 현실을 개탄스러워 하면서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려는 해방당시의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국민의 윤리의식과 민주화정신을 감안하면서 헌법정신에 맞는 형법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형사법의 역사는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형사법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과연 선학자들의 그러한 의지와 바람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는 한번쯤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당시의 입법자들은 일제강점기의 경험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적 형법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그 후 만들어진 수많은 형사법 분야의 법들은 그러한 처음 의지와는 달리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어려우면서, 일본법의 잔재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령은 대단히 어렵고 일상적이지 못한 용어들을 나열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탓으로 법률전문가들조차도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 우리 형사법이 만들어지고 50년 지난 시점에서 수없이 많은 특별법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법령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시민과 여전히 괴리되고 사실상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지울 길이 없다. 전문가만이 법을 독점해서는 안되고, 만약 그리되면 국민의 신뢰상

실이 뒤따르게 된다. 형사법분야는 특히 형벌의 엄격함 때문에 시민의 신뢰가 다른 어떤 법령과 비교하여도 그 중대성은 크다고 생각된다. 법을 국민에게 일일이 설명·해설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인권적인 측면에서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처음부터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

처음 우리 형사법을 만들던 법제위원들의 생각을 후학자들은 물론 입법자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맞는 형사법 쉬운 형사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키워드 : 법령용어, 소년법, 입법학, 형사특별법

Abstract

Law must be a necessary tool of livelihood. The tool of livelihood must improve more than practical and easier in life. The purpose of law render services to pursuit of happiness for people and exist to contribute the dignity of man. Therefore,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have a important thing of democratic principles and legalism.

This report make a description of criminal special code for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All the while, criminal special code make a description of difficulty and incomprehensibility. Accordingly, people of all thinks that law is difficulty and incomprehensibility and disapprove understanding and approach.

This report make a description of criminal special code and a related code of this for understanding and approach of people. For this subject, we need to research and study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more than practical and easier people of all.

※ 키워드 : criminal special code, criminal code, terminology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I. 서 론	9
1. 문제의 제기	9
2. 연구목적과 범위	11
3. 연구방법	12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3
II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83
IV.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97
V.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15
VI.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39

VII.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71
---	-----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1. 균형법 순화대비표	18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순화대비표	20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순화대비표	211
4.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순화대비표	221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순화대비표	233
6.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순화대비표	249

참고문헌	255
------------	-----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일제강점기를 벗어난지 8년여가 지나서야 우리 형법이 탄생하였다. 형법을 제정당시에 관여했던 편찬위원들은 우리 민족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토대로 헌법정신에 맞는 형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반성하면서 한국 형법학의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해방된 조국에서 한 동안 일본형법전이 적용되는 현실을 개탄스러워 하면서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려는 해방당시의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국민의 윤리의식과 민주화정신을 감안하면서 헌법정신에 맞는 형법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형사법의 역사는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형사법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과연 선학자들의 그러한 의지와 바람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는 한번쯤은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당시의 입법자들은 일제강점기의 경험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적 형법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그 후 만들어진 수많은 형사법 분야의 법들은 그러한 처음 의지와는 달리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어려우면서, 일본법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령은 대단히 어렵고 일상적이지 못한 용어들을 나열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탓으로 법률전문가들조차도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 우리 형사법이 만들어지고 50년 지난 시점에서 수없이 많은 특별법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법령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시민과 여전히 괴리되고 사실상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지울 길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이유들은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현행 법제가 고유한 전통적인 법문화를 계승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일제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법을 수용하여 오늘에 이른 것도 이유라는 지

I. 서론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이미 해방 후 50년이 훨씬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는 설득력은 크지 않다. 법률 문장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입법기술상의 문제, 전문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특수성,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는 점은 실정법국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동안 입법자와 법률전문가들이 그저 외국의 입법을 가져와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우리식의 법률용어나 법령문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은 반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쉬운 법령과 법률문장의 순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은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 건국 직후인 1948. 10. 9.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로 표기하기 어려운 말은 한자어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한글화 또는 우리말화 할 것을 선언하였다. 공용문서인 법률의 경우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 그 동안 한글과 한자로 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이 제외되기도 하여 한자를 습득하지 못한 세대가 증가하고 이들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에도 한자를 사용하고, 한자적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은 더욱더 법률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동안 몇몇 법에서 한글화 또는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논의가 법학자와 국어학자를 중심으로 있어 왔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일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연구성과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기본헌법전의 몇 배가 넘는 형사특별법분야에 대한 법률문장의 한글화와 법령용어의 순화를 위해 연구하면서, 실제 형사사법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기본헌법전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너무도 일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더욱 법령을 어렵게 만드는 한 이유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의 한글화와 우리말화하고 순화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50년 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과 용어들은 이미 보편화되고 일상화된 것이라는 반대의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은 전문가를 위한 도구가 아닌 일반 시민의 도구이며 이 도구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진행하여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현재하고 있는 법령을 좀더 일상적이고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고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일반인이 법령에 대한 쉬운 이해를 통해 규범을 통한 시민의 가치관을 증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법치국가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2. 연구목적과 범위

법률 문장은 당장 순수한 우리말로 고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타당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률문장의 한글화와 순화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쉬운 용어와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여 법이 실질적 시민생활에서 잘 실천되어지게 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역시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한 첫 작업이어서 그런지 쉬운 일은 아님을 솔직하게 시인한다.

이 글은 현행 형사특별법의 본래 의미를 지키면서 법률문장과 용어를 한글화, 순화하여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법률을 읽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이론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하는 점은 부족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특별법에 대한 한글화와 법령용어의 순화 및 문장의 순화이지만 형사특별법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양이 많아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다. 연구의 대상은 균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한정하였다. 이 점이 본 연구에서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작업하였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용어를 통일화하는 일에 대하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글은

I. 서론

형사특별법분야와 관련하여 법령의 한글화와 용어순화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완벽하고 완성된 성과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이 글의 연구방법은 형사특별법의 적용대상자와 법을 배우는 학생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이해도 등을 조사하여 그들의 생각을 일일이 찾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연구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주위의 여건상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본다. 겨우 수업시간 등을 통하여 강의를 수강하는 법학도와 교양으로 법학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문의하는 정도에서 그쳤을 뿐이다. 따라서 본 글은 기존에 나와 있는 법령의 한글화와 용어순화에 관련된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예를 들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내지는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로 고치고, 이해하기 어려움이 없어도 한자어로 표기된 법률용어에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혹은 문장의 간결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 아니면 한자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글화하였다. 그리고 가장 비중을 둔 부분 중 하나가 법령이 대부분 일본식 문장으로 된 것이 많았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리고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 표현들을 고치고, 어색하거나 문법적으로 잘못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고, 조사나 의미의 사용을 잘못하거나 문어체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순화하였다. 그리고 다른 법 영역에서 진행된 연구는 전체 법령을 토대로 하여 위의 조목을 목차로 하여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글은 그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개별 법령에서 법령의 순서대로 조문마다 검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방식이 법령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글은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볼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조문을 적고 조문마다 문제점을 지적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뒤에 부록으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였다.

II. 군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1編 總則

第1條 (被適用者) ①이 법은 大韓民國의 領域內外를 不問하고 이 법에 規定된 罪를 犯한 大韓民國軍人에게 適用한다.

②前項에서 軍人이라 함은 現役に 服務하는 將校, 准士官, 副士官 및 兵을 말한다. 다만, 轉換服務중인 兵은 제외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軍人에 準하여 이 법을 適用한다.

1. 軍務員
2. 軍籍을 가진 軍의 學校의 學生·生徒와 士官候補生·副士官候補生 및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軍籍을 가지는 在營중인 學生

1) “이 법은 大韓民國의 領域內外”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하여 일본식 표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냥 “대한민국 영역내외”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犯한 大韓民國軍人에게 適用한다.”는 표현은 수동과 피동을 혼동하여 어법상 맞지 않는 문장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한민국군인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순을 바꾸어 순화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영역내외를 불문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4) 제3항 제2호에서 “軍籍을 가진 軍의 學校의 學生·生徒...軍籍을 가지는 在營¹⁾중인 學生”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여 번역투의 문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군의학교” “군학교”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재영”이란 한자어도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적당한 용어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 적당한 용어를 찾지 못했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5) 그리고 문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군학교의 구성원 중에서 군적을 가진 학생 등에 대하여 본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제3항 제2호의 경우 마치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라고 하여 학교를 수식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문장의 어순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군 학교에서 군적을 가진 학생...재영 중이면서 군적을 가진 학생...”으로 고치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 된다.

6) “者에게는”은 “자에게”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고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도 쉽다고 본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의 各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上官이라 함은 命令服從關係에 있는 者間에서 命令權을 가진 者를 말한다. 命令服從關係가 없는 者間에서의 上階級者와 上序列者는 上官에 準한다.
2. 指揮官이라 함은 中隊以上의 單位部隊의 長과 艦船部隊의 長 또는 艦艇 및 航空機를 指揮하는 者를 말한다.
3. 哨兵이라 함은 警戒를 그 固有의 任務로 하여 守地, 守所 또는 守空에 配置된 者를 말한다.
4. 部隊라 함은 軍隊, 軍의 機關 및 學校와 戰時 또는 事變時에 있어서 이에 準하는 特設機關을 말한다.
5. 敵前이라 함은 敵에 對하여 攻擊防禦의 戰鬪行動을 開始하기 直前과 開始後의 狀態 또는 敵과 直接對峙하여 그 來襲을 警戒하는 狀態를 말한다.
6. 戰時라 함은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 對하여 宣傳布告를 하였거나 對敵行爲를 取한때로부터 當該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 對한 休戰協定이 成立된 때까지의 期間을 말한다.
7. 事變이라 함은 戰時에 準하는 動亂狀態로서 全國 또는 地域別로 戒嚴이 宣布된 期間을 말한다.

1)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관은 명령자와 복종자사이에 명령권을 가진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쉬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자어를 사용하여 권위적이고 문어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호를 “상관이란 명령자²⁾와 복종자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2) 자간은 자를 사람으로 고치려는 견해도 있지만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자라고 하거나 사람이라고 하거나를 통일적으로 사용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말한다. 명령자와 복종관계가 없는 자는 계급이 높거나 서열이 높은 자를 상관에 준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2) 동조 각호에서 예를 들어 제2호에서 “지휘관이라 함은...”에서 ...이라 함은 이라는 문어체의 문장은 불필요하고 권위적이므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그냥 “지휘관이란...”으로 하면 될 것이다.

3) 동조 제3호에서 초병은 군에서는 일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병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이지 않으므로 보초병 혹은 경계병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守地, 守所 또는 守空에 配置된 者를 말한다”에서 수지, 수소 또는 수공은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의미를 보면 땅을 지키고, 장소를 지키고, 공중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정한 곳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자라고 하면 될 것이다.

5) 제5호에서 “敵前이라 함은”에서 적전은 그 사전적 의미가 적의 바로 앞을 말하는데, 제5호의 의미는 전쟁이나 분쟁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나 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적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한글화하여 “적앞”이라고 하든지 그 의미를 완전히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開始하기 直前”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반드시 한자어를 사용하여야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인 “시작하기 바로전”으로 하면 될 것이다.

7) “그 來襲을...”에서 내습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 기습하여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내습이라는 표현은 일본식 한자어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따라서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 “기습 혹은 습격³⁾”으로 고치는 것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쉬울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내습은 불시에 습격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습격이나 기습이라는 의미 속에 이미 불시에 들어온다는 표현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반복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된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8) 제6호에서 “交戰團體에 대하여...”에서 대하여 라는 표현은 일본식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여 읊긴 문장으로 이를 고치는 것이 옳다. 선전포고를 교전단체에게 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문장인 “교전단체에게”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9) “대적행위를 취한 때로부터” 대적행위는 일상적으로는 적대적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고 취한 때는 그러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적대행위를 한때부터”라고 고치면 될 것이다.

10) “當該”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적당하지 않고, 일상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 “해당”이라는 표현이 더욱 쉽고 일상적이다.

11)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 對한 休戰協定이 成立된 때까지의 期間을 말한다.”에서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한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는 것은 그 표현이 어색한 번역문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의 휴전협정이 성립된...”으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12) “事變이라 함은...”에서 함은 이란 표현은 통상 사용되는 표현인 사변이란으로 고치면 될 것이다.

第3條（死刑執行）死刑은 所屬軍參謀總長 또는 軍事法院의 管轄官이 指定한 指所에서 銃殺로써 이를 執行한다.

“指所”는 지정한 장소를 의미하는데 앞의 문장에서 이미 관할관이 지정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다. 따라서 이를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라고 고치는 것이 어법상 옳은 문장이 된다. 더욱이 “지소⁴⁾”를 한글로 전용할 경우에 그 의

4) 지소를 한글로 사용할 경우 지정한 장소 또는 본소의 관리 아래에 있으면서, 본소에서 갈라져 나가 그 지역의 업무를 맡아보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장소라는 한자어는 가능하면 곳이라고 하면 그 의미를 전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관할관이 지정한 곳”이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第4條 (他法適用例) 第1條의 規定에 依한 이 法の 被適用者가 犯한 罪에 關하여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을때에는 他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본 조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번역문의 형태를 그대로 두어 어색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상적이지 못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순을 바꾸어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되는 죄를 범한 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타법령⁵⁾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문장이라 생각된다.

第2編 各則

第1章 叛亂의 罪

第5條 (叛亂) 作黨하여 兵器를 携帶하고 叛亂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首魁는 死刑에 處한다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其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한 者도 또한 같다.
3. 附和雷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7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1) “作黨하여”는 한자어를 직역하면 단체를 조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떼를 지음, 동아리를 이룸”이라는 의미로

5) 타 법령은 “다른 법령”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이해된다. 제5조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수괴를 사형에 처한다는 제1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체를 구성하여 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병기를 휴대하고”에서 兵器는 전투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하는 것으로 일상적으로는 무리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携帶하고’는 형법각칙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처럼 휴대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 표현인 만큼 여기에서도 무기를 사용하여 혹은 무기를 보이므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란 표현은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고, 특히 관형격조사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4) 제1호의 “首魁”는 조직 등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로 이를 고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차라리 두목이나 우두머리 등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⁶⁾ 수괴가 내란죄와 관련하여 내란의 계획하거나 주모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 반드시 1인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⁷⁾가 있다. 이에 따르면 수모자 주모자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⁸⁾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도 동조하기 어렵다.⁹⁾

5) 제2호에서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는 동일한...하거나...하거나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문장임에도 불필요하게 사용하여 일상적이지 못한 표현이다. 따라서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로 고치는 것이 법률문장의 간결성에 비추어 바람직할 것이다.

6) 주모자 또는 주동자로 고치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수괴를 고치는 방법에 대하여 일본 형사법에서 首謀者라는 표현은 더욱 적당치 않다고 생각된다(정완, 윤동호, 김정태 공저, 형사법령용어의 순화와 체계적 통일화 방안 연구-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3, 24면 이하 참조). 그리고 차라리 수괴를 그냥 사용하려면 그 어순을 바꾸어 괴수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이다.

7)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05, 633면.

8) 정완외 공저, 전게서, 27면.

9) 수괴의 대체용어로 “두목”으로 하자는 견해가 있다(정완외 공저, 전게서, 28면 참조).

6) “...약탈의 행위를...”에서 약탈의 행위라는 표현에서 “의”라는 관형격 조사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일본식 문장이다. 이를 생략하여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해석상의 문제도 생길 것이 없다. 따라서 “약탈행위를”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7)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한 者”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반드시 한자어를 사용해야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를 고치는 것이 그 의미를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살상은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이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 부수고 빼앗는 행위를 한 자”라고 하면 될 것이다.

8) 제3호의 법문을 살펴보면 부화뇌동¹⁰⁾한 자와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처벌한다고 하고 있는데 부화뇌동한 자와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를 각각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화뇌동한자와 단순가담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고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이해되기에는 폭동에 단순가담자는 자신의 주관적이고 명백한 의사 없이 일정한 행위를 따라한다는 의미를 가진 부화뇌동이 수식하는 형태의 문장이 되어야 그 의미가 명확하고 올바르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화뇌동 한 자와 단순가담자를 처벌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부화뇌동하여 단순히 폭동에만 가담한자는...”으로 고치는 것이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문장이 될 것이다.

第6條 (叛亂目的의 軍用物奪取) 叛亂을 目的으로 作黨하여 兵器, 彈藥 其他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奪取한 者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

1) “작당하여”는 표현이 일상적이지 못하므로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전체적의미가 통하게 하여 “반란을 목적으로 모여서...” 혹은 “반란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라고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0) 부화뇌동한 자란 부화뇌동은 자신의 주장이 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 없이 동조한 자라고 하면 될 것이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2)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奪取한 者는”는 문어체로 일상적이지 않고 일본식 표현¹¹⁾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군용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혹은 “군용물”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탈취한 자”는 탈취라는 표현이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꼭 사용되어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한자어가 아니므로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그냥 “빼앗은 자”라고 고치는 것이 적당하고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第8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②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1) 제1호의 후단은 범죄의 실행의 착수전에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것을 문어체로 서술하여 일상적이지 않은 문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목적한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하면...”으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2) ‘선동’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부추겨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하고 범죄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선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란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¹²⁾ 선동이나 선전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자어는 아니므로 전체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쉽게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죄를 범할 것을 부추기거나 알리는 자”라고 하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된다.

11) 供은 일본에서는 ‘바치다, 올리다’는 의미로 혼동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음독하는 일본식 표현의 하나이다(박영도, 일본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20면). 물론 공하는 으로서도 그 의미를 전달되지만 이보다 제공되는 이라는 표현이 더 쉽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정완의 공저, 전거서, 59면 참조).

12) 이재상, 각론, 639면.

第9條 (叛亂不報告) ①叛亂을 알고도 이를 上官 其他 關係官에게 遲滯없이 報告하지 아니한 者는 2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敵을 利롭게 할 目的으로 報告하지 아니한 者는 7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1) 제1항의 의미는 반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상관이나 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알리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를 의미를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도 법문장의 간결성을 해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시제나 조사의 사용도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반란을 알면서 이를 상관이나 관계관에게 지체없이 알리지 않은 자는...”으로 고치면 될 것이다.

2) 제2항의 경우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를 “알리지 않은 자”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第2章 利敵의 罪

第11條 (軍隊 및 軍用施設提供) ①軍隊要塞, 陣營 또는 軍用に 供하는 艦船이나 航空機 其他 場所, 設備 또는 建造物을 敵에게 提供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②兵器 또는 彈藥 其他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敵에게 提供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1) 요새의 사전적 의미는 ‘국방상 중요한 지점에 마련해 놓은 군사적 방어 시설’을 말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으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진영이라는 표현도 과거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현대적 표현이 아니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군사적 방어시설과 병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현대적 의미로 된다.

2) “軍用に 供하는...”에서 이러한 표현은 일본식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군용으로 제공되는 이라고 하여 문장을 고치고 수동을 피동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3) 설비는 그 의미가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건물이나 장치·기물 따위를 갖추는 일, 또는 그런 물건”을 말하는데 설비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이지 않고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장소, 시설 또는 건조물”이라고 하여 시설물 혹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될 것이다.

4) 병기는 전투에 사용되는 무기를 말하는 것으로 병기라는 표현보다 무기라는 표현이 더 일상적이다.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에서도 일본식 표현을 고치는 것이 좋다. “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군용물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第12條 (軍用施設等破壞) 敵을 爲하여 前條에 規定된 軍用施設 其他 物件을 破壞하거나 使用할 수 없게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본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용시설이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어순이 잘못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전조에 규정된...물건을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부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어법상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第13條 (間諜) ①敵을 爲하여 間諜한 者는 死刑에 處하고 敵의 間諜을 幫助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②軍事上の 機密을 敵에게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地域내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

1. 部隊·基地·軍港地域 기타 軍事施設保護를 위한 法令에 의하여 告示 또는 公告된 地域.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指定 또는 委囑된 방위산업체와 研究機關.

3. 部隊移動地域·部隊訓練地域·對間諜作戰地域 기타 軍의 特殊作戰을 수행하는 地域.

1) 간첩이란 적 또는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한다.¹³⁾ 따라서 제1항의 규정처럼 “적을 위하여 간첩한 자는...”이라고 하여 동일한 의미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법에도 맞지 않고, 법률문장의 간결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간첩행위를 한 자는...”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뒷문장의 경우에도 “敵의 間諜을 幫助한 者は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는 “간첩행위를 방조한 자는 사형...”으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문법에도 맞는 문장이 된다.

2) “軍事上の 機密을 적에게 漏泄¹⁴⁾한 자도”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남발한 일본식 문장이다. 이를 고치는 것이 옳다. 그냥 “군사상 기밀¹⁵⁾을...”이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3) 위촉은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촉이라는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잘 사용하지 않고 한자로 표기될 경우 읽기 쉬운 한자어도 아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용어인 “부탁”으로 고쳐서 “지정 또는 부탁한 방위산업체...”라고 하면 될 것이다.

4) “기타 軍의 特殊作戰을 수행하는 地域”에서 관형격조사인 ‘의’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여 일본식 문장이다.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군대가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이므로 이를 주격조사인 이를 사용하여 “기타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第14條 (一般利敵) 前3條에 記載한 以外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は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1. 敵을 爲하여 嚮導하거나 地理를 指示한 者.

2. 敵에게 降服하게 하기 爲하여 指揮官에게 이를 強要한 者.

13) 이재상, 형법각론, 646면 참조.

14) 누설한 자에서 누설은 액체같은 것이 스며드는 것을 말하고 비밀이 알려지는 것을 말하는 한자어로 법률용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쉬운 한자어는 아니므로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알려지게 한” 으로 고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15) 기밀은 더없이 중요한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기밀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이지 않으므로 군사상비밀이라고 고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3. 敵을 隱匿하거나 庇護한 者.
4. 敵을 爲하여 通路, 橋梁, 燈臺, 標識 其他 交通施設을 損壞하거나 不通하게 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部隊 또는 軍用에 供하는 艦船, 航空機 또는 車輛의 往來를 妨害한 者.
5. 敵을 爲하여 暗號 또는 信號를 使用하거나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詐傳하거나 傳達을 怠慢히 하거나 또는 虛僞의 命令, 通報나 報告를 한 者.
6. 敵을 爲하여 部隊, 艦隊, 編隊 또는 隊員을 解散시키거나 混亂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그 連絡이나 集會를 妨害한 者.
7. 軍用에 供하지 아니하는 兵器, 彈藥 또는 戰鬥用에 供할 수 있는 物件을 敵에게 提供한 者.
8. 前各號以外에 大韓民國의 軍事上利益을 害하거나 敵에게 軍事上利益을 供與한 者.

1) 이적은 적국이나 적에게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일상적이지 못하다. 적당한 용어를 찾아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2) “敵을 爲하여 嚮導하거나 地理를 指示한 者”에서 향도는 길을 인도하거나 그 인도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용어라고 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풀어서 길을 인도하거나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리를 지시한 자’는 어떤 곳의 지형이나 길 따위의 형편을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의미를 보면 이적이 적국의 상황등을 허위로 보호하여 작전계획을 잘못 되게 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등을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에게 지형이나 길을 알려주거나 인도해준 자”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3) “敵에게 降服하게 하기 爲하여 指揮官에게 이를 強要한 者”는 전체 문맥을 고려하고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적에게 항복할 것을 지휘관에게 강요한 자”라고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隱匿’은 몰래 감추어 두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은닉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그 의미를 풀어 “숨기거나 혹은 감추거나”로 하면 될 것이다.

5) “庇護한 者”는 비호는 법령에서 종종 사용되는 한자어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굳이 비호라고 사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비호한 자”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보호한 자”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6) “손괴”는 법령상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아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도 않다. 따라서 구태여 한자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한자어를 사용하여 간결성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용어를 풀어서 과손, 혹은 부수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7) “불통하게 하거나”에서 불통은 그 의미가 ‘교통이나 통신 따위가 막혀 연락이 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 불통은 교통시설에서 연관성이 있지만 통신의 의미로만 오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두절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일상적이므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8) “敵을 爲하여 暗號 또는 信號를 使用하거나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詐傳¹⁶⁾하거나 傳達을 怠慢히 하거나 또는 虛偽의 命令, 通報나 報告를 한 者”를 보면 그 내용이 적에게 암호나 신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군의 명령이나 통보 또는 보고를 사술을 사용하여 전달하거나 전달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허위로 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권위적이어서 고치는 것이 좋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간결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에게 암호나 신호를 보내거나 명령이나 통보 또는 보고를 허위 또는 잘못 전달하거나 전달을 태만이 한자”라고 하면 되고 뒤의 허위의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불필요한 문장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법문의 간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6) “사전”은 사술을 사용하여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로 대부분의 국어사전에 서도 찾을 수 없는 한자합성어이다. 한자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권위적 표현의 대표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사전을 한글로 전용할 경우에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오해될 수 있어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9) 제6호는 어순을 바꾸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 되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군의 편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부대, 艦隊, 編隊 또는 隊員을 解散시키거나 混亂을 일으켜 적을 이롭게 하거나 또는 그 連絡이나 集合을 妨害한 者”로 고치는 것이 옳다. 처벌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을 이롭게 한다는 표현을 넣는 것이 좋다.

10) “供하지 아니하는”에서 供은 일본에서 “바치다, 올리다”는 의미를 혼동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음독하는 일본식으로 표현된 법문이다.¹⁷⁾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상적으로는 “제공되는”이라는 표현이 더 쉽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그리고 군용이라고 하면 군대에 제공된 물건이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굳이 군용에 공하지 아니한 이라고 하지 않고 “군용이 아닌 兵器, 彈藥...”으로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문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뒷문장의 경우에도 전투용 제공될 수 있는 물건이므로 “전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문장의 간결성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뒷문장도 “戰鬪用으로 사용¹⁹⁾ 될 수 있는 物件을 敵에게 提供한 者.”

第16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11條 乃至 第14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②第11條 乃至 第14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법률문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인 “第11條 乃至 第14條의 罪를 犯할...”에서 ...내지의 표현은 법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일상적이지 않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다. 그러

17)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20면 참조.

18) 정완외 공저, 전거서, 59면 참조.

19) ‘사용’도 ‘쓸 수 있는’ 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11조 내지 제1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라고 하면 제11조부터 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이 되므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일상적인 표현인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혹은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의”라고 하는 것이 쉽고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第3章 指揮權濫用の罪

第18條（不法戰鬥開始）指揮官이 正當한 事由없이 外國에 對하여 戰鬥을 開始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

표제어를 불법전투개시라고 하고있는데 일상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지만 불법과 위법은 구별하는 것이 현재 형법학계의 다수의 견해²⁰⁾이므로 형법과의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전투는 불법전투가 아닌 위법전투의 개시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 된다.²¹⁾

第19條（不法戰鬥繼續）指揮官이 休戰 또는 講和의 告知를 받고도 正當한 事由없이 戰鬥을 繼續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

1) 표제를 바꾸는 것이 용어의 통일에도 맞다고 생각된다. “불법전투계속”을 “위법전투계속”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2) “休戰 또는 講和의 告知를 받고도...”에서 강화의라는 표현에서 관형격조사를 사용한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부적절하다. 문'

20) 이재상, 형법총론 5판, 2004. 207면 이하.

21) 개인적으로 불법과 위법은 실제상에서 구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구별이 어렵고, 일상적으로는 구별하여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의 반대말은 부당한 사유이고 우리 형법에서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인 정당방위의 규정에서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하여 부당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불법과 위법의 구별보다는 불법 혹은 위법과 부당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법에 맞게 문장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휴전 또는 강화의 고지를 받는 것이라 하면 고지가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부적절하다. 따라서 “휴전 또는 강화를 고지 받고”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다.

第20條 (不法進退)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에 있어서 指揮官이 權限을 濫用하여 不得已한 事由없이 部隊, 艦船 또는 航空機를 進退시킨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1)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법과 불법의 구별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불법과 위법을 구별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²²⁾ 따라서 “불법진퇴”는 “위법진퇴”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계엄지역에 있어서”는 처소격 조사인 “에”와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불필요한 문장이다. 그러므로 문장을 “계엄지역에서”라고 하는 것이 문법에도 맞고 일상적인 표현이다.

3) “不得已한 事由없이”는 전체 문맥에서 의미를 살펴보면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등을 움직이게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본 문장에서는 권한을 남용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로 고치는 것이 더 표제와 일치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리고 권한의 남용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순을 바꾸는 것이 어법상 올바르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권한을 남용하여...”라고 고치는 것이 옳다.

第 4 章 指揮官의 降服과 逃避의 罪

第22條 (降服) 指揮官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敵에게 降服하거나 部隊, 陣營, 要塞, 艦船 또는 航空機를 敵에게 放任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

22) 이재상, 형법총론, 202면 참조.

1) “指揮官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는 지휘관이 자신의 책무를 다함이 없이 적에게 항복하는 것은 처벌한다는 의미인데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는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그 해석의 명확성을 해칠 우려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문장의 간결성이나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휘관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적에게 항복하거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2) “敵에게 放任한 때에는...”은 방임의 사전적 의미가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다’라는 의미로 본조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는 적에게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차라리 그 의미 그대로 “적에게 빼앗긴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第23條 (率隊逃避) 指揮官이 敵前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部隊를 引率하여 逃避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

1) 第23條의 표제인 “率隊逃避” “率”의 한자어의 음이 솔, 율, 우두머리수 등으로 다양하게 발음되고 거느리거나 혹은 우두머리 대장의 의미로도 사용되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23조의 내용으로 볼 때, 자신의 부대를 데리고 도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率隊”는 그 의미를 풀어 사용하여 “부대와 함께 혹은 부대를 데리고”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도피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쉽게 사용되거나 읽혀질 수 있는 한자어는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용어인 ‘도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指揮官이 敵前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는 “지휘관이 적 앞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문장이 된다.

3) “도피한 때에는”역시 일상적인 용어인 “도망한 때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문장이 된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4) “인솔하여”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반드시 사용하여야 의미를 전달한다거나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데도 전혀 상관이 없는 한자어이고 특히 “솔”은 음이 다양하여 읽기에 어려움이 있어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대를 이끌고 혹은 부대를 데리고”라고 하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第24條（職務遺棄）指揮官이 正當한 事由없이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또는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의 境遇에는 死刑에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1) 제1호에서 “적전”은 적앞에서 라고 고치면 될 것이다.

2) “기타의 경우”에서 기타의 경우는 기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외국환관리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6-13호) 제6~15조의4 제2호 (나)목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한정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할 것인데,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유인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을 허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 등의 규제요건 및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규제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²³⁾. 라고 하는 관례에서 보듯이 기타라는 표현은 법령용어로 적당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예를 나열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불가피하다면 기타의 경우라고 하는 것보다 일상적이면서 이해하기 그 밖의 경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第5章 守所離脫의 罪

第27條 (指揮官의 守所離脫) 指揮官이 正當한 理由없이 部隊를 引率하여 守所를 離脫하거나 配置區域에 臨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에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1) 제27조의 표제에서 “수소이탈”은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표제를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여도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은 그 의미를 풀어 한글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소는 지휘관이 방어를 책임진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소”는 “지키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引率하여”는 인솔한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손아랫사람이나 무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인솔이라는 한자어는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인솔하여”는 “이끌고”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제3호의 기타의 경우라는 표현을 그 밖의 경우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3) 대법원 1998. 6. 18. 선고 97도2231 전원합의체 판결.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28條 (哨兵의 守所離脫) 哨兵이 正當한 事由없이 守所를 離脫하거나 指定된 時間내에 守所에 臨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2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1) 초병²⁴⁾은 경계를 서는 병사를 말하는데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므로 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렵고, 비록 균형법이라고 하여도, 초병의 주된 고유한 임무는 경계근무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경계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2) “守所를 離脫하거나”에서 수소는 지키는 곳 혹은 지키는 장소, 경계서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탈하여는 반드시 한자어로 표현하여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나거나”로 고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경계서는 장소를 벗어나거나”라고 하거나, 지키는 곳(장소)를 “벗어나거나”로 하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3) “指定된 時間내에 守所에 臨하지 아니한 때에는...”은 지정된 시간 내에 경계지 혹은 지키는 곳을 지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임하다는 표현은 “직무등을 떠맡다”는 의미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집으로 가다, (어떤 장소에) 다다르다, (어떤 때나 일에) 이르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가까이 있다, 면(面)하다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시간 내에 경계하는 장소에 돌아오지 않으면”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4) 국군병영생활규정 제61조 제2호에 의하면 위병조장은 ①위병장교 또는 위병하사관의 지시를 받아 위병소에서 근무하고, ②초병의 교대를 지시·감독하며 초병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위병장교 또는 위병하사관에게 보고하고, ③초병선을 순찰하여 초병의 근무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④위병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관리 및 관계 서류를 기록·유지하며 근무교대시 근무사항 일체를 인계인수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직무내용에 비추어 위병조장을 경계를 그 고유임무로 하는 자 즉 균형법상 초병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4) 제3호에서 “其他의 境遇”는 그 외의 경우 혹은 그 밖의 경우 등으로 고치는 것이 한글화에 적합한 표현이 될 것이다.

第 6 章 軍務離脫의 罪

第30條 (軍務離脫) ①軍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部隊 또는 職務를 離脫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2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②部隊 또는 職務에서 離脫된 者로서 正當한 事由없이 相當한 期間內에 復歸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1) 본조의 표제어가 용어의 간결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무이탈이라고 하였다 하여도, 제1항에서는 한글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직무를 벗어난 자는”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한 일본식 표현이므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다음에서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적전”은 적앞에서 라고 하면 될 것이다.

4) 제2항에서 “部隊 또는 職務에서 離脫된 者로서...”는 문어체이면서 조사의 사용이 어색하여 어려운 문장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상적인 표현인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가...”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5) 그리고 후문에서 “復歸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에서 복귀는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복귀는 “돌아오지”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아니한 자는 문어체문장으로 권위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돌아오지 않은 자도...”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31條 (特殊軍務離脫) 危險 또는 重要な 任務를 回避할 目的으로 配置地 또는 職務를 離脫한 者도 前條의 例에 依한다.

“...의 예에 의한다”는 일본식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전조에 따른다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第32條 (離脫者庇護) 前2條의 罪를 犯한 者를 隱匿 또는 庇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5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3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1) 본조의 표제어인 “비호”는 법령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감싸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호는 일상적으로는 보호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법문에서 보면 감싸 보호한다는 의미인 비호라는 표현은 앞의 은닉과 의미의 중복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 “다음의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에서 의하여는 일본식 표현을 빌어 쓴 조사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관형격조사인 “의”의 사용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3) “其他의 境遇에는...”은 그 외의 경우 혹은 그 밖의 경우에 라고 고치는 것이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第33條 (敵陣에의 逃走) 敵에게 逃走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第33條의 표제어인 “敵陣에의 逃走”는 처소격 조사인 ‘에’와 관형격조사인 ‘의(の)’를 사용한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문법에 맞고 일상적인 표현이 된다. 따라서 ‘적진으로

도주' 혹은 처소격 조사인 '에'만을 남겨서 '적진에 도주'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도주라는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는 도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고치는 것도 좋다고 본다. 따라서 표제어를 “적진으로 도망” 혹은 “적진에 도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第7章 軍務怠慢의 罪

第35條 (勤務怠慢) 勤務를 怠慢히 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無期 또는 1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1. 指揮官 또는 이에 準하는 將校로서 그 任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敵과의 交戰이 豫測되는 境遇에 戰鬥準備를 怠慢히 한 者.
2. 將校로서 部隊 또는 兵員을 引率하여 그 任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敵에 遭遇하거나 其他 危難에 處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部隊 또는 兵員을 遺棄한 者.
3. 職務上 攻擊하여야 할 敵에 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攻擊하지 아니하거나 職務上 當面하여야 할 危難으로부터 離脫한 者.
4. 軍事機密의 文書 또는 物件을 保管하는 者로서 危急한 境遇에 있어서 不得已한 事由없이 敵에게 이를 放任한 者.
5.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에서 兵器, 彈藥, 食糧, 被服 其他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運搬 또는 供給하는 者로서 不得已한 事由없이 이를 缺乏하도록 한 者.

1) ‘그 任務를 遂行함에 있어서...’에서 본 법문은 불필요한 문어체 문장으로 권위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행함에 있어서라고 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면서’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2) “引率하여”하다는 표현 또한 불필요한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 또한 법문의 권위적인 특징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인솔하여를 이끌고 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敵에 遭遇하거나’에서 조우는 ‘우연히 만나거나 맞닥뜨림’을 뜻하는 한자어인데 조우란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의미를 풀어 사용한다면 조사도 고치는 것이 의미를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이해하는데 더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 ‘적과 우연히 맞닥뜨리거나’라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적에 대하여...’는 적이 목적어이므로 조사를 적에 대하여 라는 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일상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목적격 조사인 “직무상 공격하여야할 적을...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職務上 當面하여야 할 危難으로부터 離脫한 者’는 직무상 군인은 긴급한 위난 즉 적의 공격 등으로부터 일반인과 달리 위난을 피하지 못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인과 같은 정도로 피난하거나 하는 것을 처벌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직무상 당면해야할 위난이라고 하지 않고 직무상 위난을 감수해야할 의무있는 자가 위난으로 이탈한 자를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일종의 위난의 피할 수 없는 특칙을 인정하는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직무상 위난을 감수하지 못한 자”라고 고하는 것이 문장의 간결성이나 이해를 하는데도 쉬울 것이라 생각된다.²⁵⁾

5) 제4호의 경우 전체적으로 관형격조사인 ‘의’를 사용한 일본문장을 번역한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로서에서 자격격 조사인 로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주격조사로 바꾸어도 문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일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급한 경우로 고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군사기밀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위급에 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자’라고 하면 될 것이다.

6) ‘被服’이라는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냥 ‘옷’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7) ‘供하는’은 일본식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제공하는 또는 ‘주는’으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8) ‘者로서...’는 자격격 조사로 이를 “자가”라는 주격조사를 사용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된다.

25) 이는 총칙상 긴급피난의 특칙을 규정한 것이다(형법 제22조 제2항).

9) ‘缺乏하도록 한 者’ 결핍이라는 한자어는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하도록 한 자’는 ‘부족하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第36條 (飛行軍紀紊亂) 飛行에 關한 法規 또는 命令을 違反하여 航空機를 操縱 함으로써 飛行軍紀를 紊亂하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1)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에서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란 표현은 일본 문장을 그대로 번역한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법령상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어법에 맞지 않아 어색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다음 뒤의 ‘의’를 삭제하고 구별에 ‘의하여’에서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다음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其他의 境遇에는...’ 앞에서 기타라는 표현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구체적인 경우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금은 한글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그외의 경우에는’ 혹은 ‘그 밖의 경우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한글화하는데 맞다고 본다.

第37條 (僞計로 因한 航行危險) 詐僞의 信號를 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軍用에 供하는 艦船 또는 航空機의 航行에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1) ‘위계’는 사전적 의미가 ‘거짓 꾸민 계획이나 계략’을 말하고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그 목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기망하거나 유혹하는 것을 말한다.²⁶⁾ 형법 분야에서 위계라는 표현은 법령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속임수’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조의 표제어를 ‘속임수를 사용한 항행위험’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2) ‘詐僞의 信號를 하거나’에서 사위는 사술이나 허위인 신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술이나 허위의 신호를 사용하거나’로 바꾸는 것이 어법에도 맞다고 본다.

3) ‘其他의 方法으로’에서 기타의 방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한글화한다면 기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밖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글화에 부합한다고 본다.

4) ‘供하는’은 일본식 한자어로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공하는’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²⁷⁾

5)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에서 다음의 구별에서 ‘의’를 삭제하고 우리 어법에 맞게 문장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의하여 라는 표현도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한글화와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우리 어법에도 맞는 표현이다.

6) ‘其他의 境遇’에서 기타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한글화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외의 경우에’ 혹은 ‘그 밖의 경우에’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

2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5, 38면 참조.

27) 정완외 공저, 103면 참조.

第38條 (虛偽의 命令, 通報, 報告) ①軍事に 關하여 虛偽의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7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1)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다음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의 어법에 맞고 이를 좀더 쉽게 고치려면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2) ‘其他의 境遇에는’에서는 기타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굳이 한글화한다면 ‘그 밖의 경우에는’ 혹은 ‘그 외의 경우에는’으로 하는 것이 쉬운 표현이 된다.

第39條 (命令等의 虛偽傳達)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에서 軍事に 關한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傳達하는 者가 이를 虛偽傳達하거나 傳達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

1) 第39條의 표제어에서 ‘命令等의 虛偽傳達’에서 표제어의 ‘의’는 문법상 맞지 않고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본조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법령의 태도가 대부분 그러하다. 그래서 문법에 맞게 조사를 사용하자면 “명령 등을 허위²⁸⁾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표현이 된다.

2) ‘前條의 例에 依한다’라는 표현 또한 우리 법령에서 항상 사용되는 표현인데, 일본식 한자어이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조의 예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된다.

28) 허위는 거짓이라고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적절하다고 본다(정완의 공저, 전게서, 51면 이하).

II. 군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40條 (哨令違反) ①정당한 사유없이 所定の 規則에 의하지 아니하고 哨兵을 交替시키거나 交替한 者は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2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경우에는 5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②哨兵으로서 睡眠 또는 飲酒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全文改正 1994.1.5]

1) 第40條의 표제어인 ‘哨令違反’에서 초령은 사전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한자어이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전혀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를 풀어 사용하거나 다른 적당한 용어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초를 서는 병사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초병의 주된 임무가 경계를 서는 것이므로 ‘경계규칙위반²⁹⁾’ 경계수칙위반 혹은 경계명령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2)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3) ‘敵前’은 ‘적앞’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기타의 경우에는’에서 기타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哨兵으로서 睡眠 또는 飲酒한 者도³⁰⁾ 수면은 잠자는 것을 말하고 음주 또한 술을 마셔 취한자’를 말하는 것으로 경계병이 잠을 자거나 또는 술을 마신 경우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이며, 한글화에도 맞다고 생각된다.

29) 군형법 제40조의 초병을 교체행위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시킨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지휘관의 근무편성행위가 규칙에 위반되어도 본조의 교체행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2978 판결).

30) 군형법 제40조 초령위반죄 중 초병이 수면 또는 주취한 경우에는 초병이 안말 또는 주취하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위 행위에 직무태만의 요건까지 첨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161 판결).군형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초령위반죄는 초병의 신분에 있는 자가 수면 또는 음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초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505 판결).

6) ‘교체’라는 한자어도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교체라는 의미보다는 교대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第41條 (勤務忌避目的의 詐術) ①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②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假病 其他 偽計를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10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1) 第41條에서 표제어의 조사의 사용이 일본식이다. 그러므로 고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기피’는 흔히 사용되는 법령 용어이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므로 오히려 일상적인 표현인 ‘거부’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勤務忌避目的의 詐術’은 ‘근무 거부목적으로 사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제1항에서 ‘기피할 목적으로’는 거부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이다.

3)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고 일반적인 표현이어서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第42條 (有害飲食物供給) ①有毒性이 있는 飲食物을 軍에 供給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②前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③過失로 因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④敵을 利롭게하기 爲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1) 유해음식물공급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데 제1항에서 유독성 있는 음식물을 공급한자라고 하여 본죄의 범위를 혼돈케 하고 있다. 따라서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이를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유해 한 것과 유독한 것은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제를 유해음식물이라고 한 이상 제1항을 ‘유해성 있는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過失로 因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은 불필요한 문어체 문장으로 법문장에서 극복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문어체가 아닌 일상적인 표현으로 법문장을 만드는 것이 일반인에게 쉽게 법을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자”라고 고치는 것이 쉬운 문장이 된다. 이러한 것이 권위적인 법문장을 순화하는 기본이라고 생각된다.

3) 제4항의 경우에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적을 이롭게 한 자는...’이라고 어순을 바꾸는 것이 표현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도 쉬울 것이다.

第43條（出兵拒否）指揮官이 出兵을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者로부터 그 要求를 받고 相當한 理由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7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이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이라는 문장은 문장을 간결히 하고 문어체적인 표현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이라고 고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第8章 抗命의 罪

第44條（抗命）上官의 正當한 命令에 反抗하거나 服從하지 아니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1年以上 7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3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1)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제1호의 ‘敵前’은 ‘적앞’으로 하면 될 것이다.

3) ‘其他의 境遇에는’에서는 기타라는 표현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꼭 사용해야 한다면 ‘그 밖에’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第45條 (集團抗命)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死刑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7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1) ‘집단을 이루어’라는 표현은 집단이라는 개념속에 이미 조직을 이룬다는 것이 이미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복적이고 문어체적이라 권위적인 법령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45조의 법문을 살펴보면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항명의 방법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그냥 ‘집단으로’라고 하면 일상적이고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2)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제1호에서 ‘적전’은 적앞으로 ‘其他의 者는’ 집단의 우두머리를 제외한 집단 항명한 나머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수괴는 ‘수모자’ 혹은 두목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괴는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5) ‘其他의 境遇에는’에서는 기타라는 표현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꼭 사용해야 한다면 ‘그 밖에’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第46條 (上官의 制止不服從) 暴行을 하는 者が 上官의 制止에 服從하지 아니한 때에는 3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制止’는 말려서 못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 한자어이다. 표제어는 간결성 때문에 제지의 불복종이라고 하여도 본문의 문장은 이를 풀어서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폭행을 하는 자가 상관이 말리는 것을 듣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쉬운 문장이 되어 이해하기 쉽다.

第47條 (命令違反) 正當한 命令 또는 規則을 遵守할 義務가 있는 者が 이를 違反하거나 遵守하지 아니한 때는 2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1) ‘遵守’는 명령이나 규칙을 그대로 따라서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에서 보면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이라는 지켜야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있으므로 굳이 준수라고 하지 않고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지킬 의무’라고 하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2) ‘遵守하지 아니한 때는’의 표현 또한 ‘지키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第9章 暴行·脅迫·傷害와 殺人의 罪

第48條 (上官에 對한 暴行, 脅迫) 上官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は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5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1)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에 “...에 대한”은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고 이를 고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일상적인 표현인 “상관을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상관을 폭행 협박한 자는...”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2)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敵前인 境遇에는’ 적앞에서 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4) ‘其他의 境遇에는’에서 기타라는 표현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 밖의 경우’ 혹은 ‘그 외의 경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상적이라고 생각된다.

第49條 (上官에 對한 集團暴行, 脅迫)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10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1) ‘집단을 이루어’라는 표현은 집단이라는 개념속에 이미 조직을 이룬다는 것이 이미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복적이고 문어체적이라 권위적인 법령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45조의 법문을 살펴보면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항명의 방법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그냥 ‘집단으로’라고 하면 일상적이고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2)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수괴’는 ‘우두머리’ 혹은 ‘두목’으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50條 (上官에 對한 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48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1) “휴대하고”의 뜻은 소지 혹은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소지할 필요는 없고 몸 가까이 지니고 있으면 된다³¹⁾.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여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표현이다. 특히 우리 법원은 이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라고 해석하여 자동차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조의 경우에 특수폭행 또는 협박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보이거나 사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범죄이므로 그 의미를 풀어 사용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해석상의 문제도 남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조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보이거나 사용하여”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장이 된다.³²⁾

2) ‘敵前인 境遇에는’ 적앞에서 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3) ‘其他의 境遇에는’에서 기타라는 표현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 밖의 경우’ 혹은 ‘그 외의 경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상적이라고 생각된다.

第51條 (上官에 對한 集團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49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死刑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2年以上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1)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

31) 이재상, 형법각론, 271면 참조.

32) 박상기, 형법각론,

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敵前인 境遇에는’ 적앞에서 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3) ‘其他의 境遇에는’에서 기타라는 표현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 밖의 경우’ 혹은 ‘그 외의 경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상적이라고 생각된다.

4) ‘기타의 자는’ 우리말로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나머지 사람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第52條 (上官에 대한 暴行致死傷) ①第48條 내지 第51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②第48條 내지 第51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을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全文改正 1963.12.16]

1)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이라는 표제어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지만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려면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만들려면 ‘상관을 폭행치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운 문장이다.

2)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敵前인 境遇에는’ 적앞에서 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4) ‘其他의 境遇에는’에서 기타라는 표현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 밖의 경우’ 혹은 ‘그 외의 경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상적이라고 생각된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52條의2 (上官에 대한 傷害) 上官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本條新設 1963.12.16]

1) ‘상관에 대한 상해’이라는 표제어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지만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려면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만들려면 ‘상관을 폭행치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운 문장이다.

2)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敵前인 境遇에는’ 적앞에서 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4) ‘其他의 境遇에는’에서 기타라는 표현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 밖의 경우’ 혹은 ‘그 외의 경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상적이라고 생각된다.

第52條의3 (上官에 대한 重傷害) 第52條第2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本條新設 1963.12.16]

1) 상관에 대한 중상해에서 ‘...에 대한’은 법령상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일상적이지는 않고, 꼭 이렇게 표현하여야 법령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그냥 일상적인 표현인 ‘상관을 중상해’라고 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 본문의 내용도 시제나 수동 피동의 혼돈으로 인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상관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다.

3)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第52條의3 (上官에 대한 重傷害) 第52條第2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は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本條新設 1963.12.16]

1) “상관에 대한 중상해”는 “상관을 중상해”라고 하여도 무방하고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2) “상관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는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라고 하는 것이 더 쉽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3)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第54條 (哨兵에 對한 暴行, 脅迫) 哨兵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は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7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3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 “초병은” 균형법이나 군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초병의 경우 군에서 주된 임무가 경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경계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2) ‘...에 대하여’는 일본식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한 문어체로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단순하게 ‘경계병을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3)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第55條 (哨兵에 對한 集團暴行, 脅迫)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5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1) “초병에 대한”은 “초병을”이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2)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3) 수괴는 ‘수모자’ 혹은 두목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괴는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第56條 (哨兵에 對한 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54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1年以上의 有器懲役に 處한다.

1) 제56조의 표제도 ‘초병에 대한’은 “경계병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2)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³³⁾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는 자동차 등을 이용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개념을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이거나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第57條 (哨兵에 對한 集團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55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10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10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1) “초병”은 군대에서는 보통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초병은 경계를 담당하는 병사를 말하는 것으로 차라리 경계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반적인 문장이 된다.

3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2)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³⁴⁾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는 자동차 등을 이용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개념을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이거나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다음의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4) 수괴는 ‘수모자’ 혹은 두목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괴는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第58條 (哨兵에 대한 暴行致死傷) ①第54條 내지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②第54條 내지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全文改正 1963.12.16]

1) 초병은 경계병으로 고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3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2)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3) 적전은 적앞에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4) 기타는 그 외 등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第58條의2 (哨兵에 대한 傷害) 哨兵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本條新設 1963.12.16]

1) “哨兵에 대한 傷害”라는 표제어도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고, 문어체로 표현하는 것은 권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어체적인 표현인 “초병을 상해”라고 하고 초병은 경계병을 말하는 것으로 경계병이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될 것이라고 본다.

2)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3) 적전은 ‘적앞에서 상해하면’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第58條의3 (哨兵에 대한 重傷害) 第58條第2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本條新設 1963.12.16]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 ‘哨兵에 대한 重傷害’라는 표제어는 구어체로 바꾸어 “경계병을 중상해”라고 하는 것이 권위적인 법령을 쉽게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2) ‘哨兵³⁵⁾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은 전체적으로 문어체적인 표현이 되어 법령의 권위적인 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문장을 구어체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예를 들어 “경계병에게 치명상³⁶⁾을 입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걸리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3)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4) “적앞에서 중상해하면...”이라고 고치는 것이 구체적이고 이해하기도 쉽다고 생각된다.

5) 기타의 경우는 “그 외의 방법³⁷⁾으로 중상해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라 생각된다.

第58條의4 (哨兵에 대한 傷害致死) 第58條의2 및 第58條의3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本條新設 1963.12.16]

35) 초병은 경계병으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36) 치명상은 비록 한자어이긴 하지만 해석을 위해 오히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7) 그 밖의 방법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 1) 초병에 대한 상해치사는 초병을 상해치사라고 하여도 될 것이다.
- 2)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 3) “적앞에서 상해치사한 때에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구체적이고 이해하기도 쉽다고 생각된다.

第59條 (哨兵殺害와 豫備, 陰謀) ①哨兵을 殺害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②前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초병은 경계병으로 고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

第60條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暴行·脅迫等) ①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7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②兇器 기타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1年以上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5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③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을 하여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④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을 하여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⑤集團을 이루어 第1項 내지 第4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
[全文改正 1963.12.16]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 1) 초병은 경계병으로 고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 2) ‘...자에 대하여’는 문어체적이고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권위적이고 어려운 법문이 되게 한다. 따라서 ‘직무수행 중인 자를’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 3) “폭행하여 치상한 자는” 타인을 치상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폭행하여 치상케 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이 태를 맞게 고치는 것이므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 5) ‘적전인 경우에는’ “적앞에서 치상케한 자는”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기타의 경우에는” “그 외의 곳에서 치상케 한자는”으로 고치는 것이 구체적이고 이해하기도 쉬운 문장이다.
- 7)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³⁸⁾을 휴대³⁹⁾하고”는 해석상의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위험문건의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

38)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39)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⁴⁰⁾라고 해석하는 등 해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휴대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휴대라는 표현 대신에 보이고 혹은 이용하여 등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8)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을 하여 致死한 者는”은 문어체 문장으로 쉬운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표현인 “직무수행중인 자를 폭행하여 치사케 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9) “罪를 犯한 때에는”도 또한 법령에서 흔히 보는 표현방법이지만 일상적인 표현은 아닌 문어적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죄를 범하면”이라고 하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표현이다.

10) “집단을 이루어”는 문어체로 집단이라는 의미 속에 이룬다는 의미가 들어 있고 이를 집단을 이루어 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집단으로”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第60條의3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重傷害) 第60條第4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 또는 哨兵 이외에 職務遂行중인 者の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本條新設 1963.12.16]

1) “직무수행중인자에 대한 중상해”라는 표현 또한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일상적이진 않고, 따라서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예를 들어 “직무수행중인자를 중상해”라고 하는 것이 좀더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2) “職務遂行중인 者の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에서 범죄인이 직무수행중인 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

40)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직무수행중인 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발생하게 하거나⁴¹⁾...”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다음의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第60條의4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傷害致死) 第60條의2 및 第60條의3의 罪를 犯하여 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를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本條新設 1963.12.16]

1) 표제어를 앞의 원칙에 따라서 “직무수행중인자를 상해치사”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2) ‘다음의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第61條 (特殊騷擾) 集團을 이루어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首魁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2. 他人을 指揮하거나 率先하여 助勢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3. 附和雷同한 者는 2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41) 하게 하거나는 발생시키거나로 태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집단을 이루어는 집단으로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문장이다.

2) 휴대하고는 보이고 사용 또는 이용하여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⁴²⁾

3)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4) 수괴⁴³⁾는 우두머리 혹은 두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5) “助勢”는 그 의미가 힘을 보태거나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이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움을 준자”라고 하면 될 것이다.

6) 솔선은 남보다 앞장서서 뭔가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솔선이라는 표현은 과거부터 흔히 사용되어 오던 말이지만 쉬운 한자어는 아니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장서서 도운 자”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본다.

7) “부화뇌동한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한자어가 어려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이를 적당한 말로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화뇌동이라는 것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 없이 덩달아 남의 생각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말하므로 “덩달아 따른자”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42) 제60조 참조

43)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주동자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62條 (苛酷行爲) 職權을 濫用하여 虐待 또는 苛酷한 行爲를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학대⁴⁴⁾와 가혹행위는 전자의 경우 심하게 괴롭히거나 혹독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고, 가혹행위란 매우 모질고 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현행 형법상 학대와 가혹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학대와 가혹행위는 그 의미나 범위가 다른 것보다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구별도 의미 없다고 생각된다.

第10章 侮辱의 罪

第64條 (上官侮辱등) ①上官을 그 面前에서 侮辱한 者는 2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文書, 圖書 또는 偶像을 公示하거나 演說 其他 公然한 方法으로 上官을 侮辱한 者는 3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③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上官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④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上官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어법을 고치는 것이 좀더 쉬운 문장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자”라고 하는 것이 보다 쉬운 표현이라 생각된다.

44)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참조),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게 된 전후의 경위 등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를 가리켜 위와 같은 의미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2) “면전에서” 면전은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굳이 한자어를 사용해야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글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전적 의미가 ‘보고 있는 앞, 눈앞’이므로 “상관을 그 앞에서 모욕⁴⁵⁾한 자”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연히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⁴⁶⁾ 이처럼 개념상의 대립을 초래하고 있는 표현이고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는 표현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따라서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에서 사실의 적시는 어법을 고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라고 하면 공연한 사실, 공연한 적시라는 이중의 꾸밈이 되는데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어법이 된다.

第65條 (哨兵侮辱) 哨兵을 그 面前에서 侮辱한 者は 1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1) 초병은 경계병으로 고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생각된다.

2) “면전에서” 면전은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굳이 한자어를 사용해야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글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그 앞에서” 라고 하면 될 것이다.

45) 모욕이라는 표현 또한 흔히 사용되지만 법률상 의미를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용어를 찾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46) 대법원 1989.7.11. 선고 89도886 판결.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11章 軍用物에 關한 罪

第66條 (軍用施設等에의 放火) ① 불을 놓아 軍의 工場, 艦船, 航空機 또는 戰鬪用에 供하는 施設, 汽車, 電車, 自動車, 橋梁을 燒毀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 불을 놓아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貯藏하는 倉庫를 燒毀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軍用에 供하는 物件이 現存하는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2. 軍用에 供하는 物件이 現存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1) 표제어에서 ‘군용시설물 등에의 방화’라는 문어체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법령에서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표현 또한 일본식 문장을 번역하여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권위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군용시설물 등에 방화’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고 본다.

2) 제1항에서 ‘불을 놓아’는 방화죄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⁴⁷⁾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가 일반적인 통상적인 방화이다. 그러나 불을 놓다라는 표현은 들불 등을 놓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고의범의 형태로 본다면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불을 놓아’라는

47) 소훼의 용어 순화와 관련하여 소훼의 사전적 의미는 불태워 무너뜨리다는 것을 합쳐서 사용한 한자어이다. 그런데 이는 국어사건에서도 거의 찾을 수 없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형법적으로는 불에 의하여 건조물 또는 물건을 손괴하는 것 즉 불태워 부수는 것을 말한다. 방화죄의 기수시기 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소실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물론 사려져 없어진다는 의미의 소실이 있어 혼돈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적이 있지만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실이라고 순화할 것을 제안하는 견해도 있다(정완외 공저, 전개서, 33면이하 참조).

표현보다는 ‘불을 질러’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3) “...戰鬪用에 供하는”에서 供하는 이라는 표현은 일본식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법문으로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투용으로 제공하는”이라고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는’이라는 표현은 태를 고치는 것이 어법에 맞다고 본다. 따라서 “전투용으로 제공되는”으로 고치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 된다.

4) 橋梁은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반드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글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리”라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燒毀한”에서 소훼는 그 의미가 불에 태워 없앤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한자어이다.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고 그 한자어를 읽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한자어가 많다는 것 또한 법령의 권위적인 면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 燒燬를 의미를 풀어서 ‘태워버린(없앤)’이라고 하여도 법령의 간결성을 해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6) ‘供하는’은 제공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될 것이다.

7)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8) “현존하지 아니하는”의 표현도 이해하기 쉽지만 문어체적인 표현으로서 권위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어 법령의 간결성에도 맞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존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생각된다.

9) 현존하는 현존하지 않은 등은 ‘남아 있는’ ‘남아 있지 않은’으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67條 (露積軍用物에의 放火) 불을놓아 露積한 兵器, 彈藥, 車輛, 裝具, 器材, 食糧, 被服 其他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燒毀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1) “불은 놓아”는 불을 질러 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훨씬 일상적이라고 생각된다.

2) “露積”은 한데에 쌓아 둔다는 의미를 지닌 한자어이다. 그러나 노적은 어려운 한자어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지도 않는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일상적인 용어인 “야적”이라고 하거나 그 의미를 풀어 한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불을 질러 한데 쌓아둔...”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본다.

3) ‘피복’은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반드시 한자어를 사용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피복은 ‘의복 또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공하는’은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번역한 형태로 법령에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이를 고치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제공되는’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5)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第68條 (爆發物破裂) 火藥, 汽罐 其他 爆發性있는 物件을 破裂하게 하여 前2條에 規定된 物件을 損壞한 者도 前2條의 例에 依한다.

1) 기관(汽罐)은 밀폐된 용기 안에서 물을 끓이며 고온·고압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기관이란 한자어는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일상적이지도 않다. 이러한 장치를 보일러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이해하기도 쉬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보일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는 전체문장과 대비해 볼 때 파열은 찌개지거나 갈라져 터지는 것을 말하는 한자어이다. 따라서 이를 한자어로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한글화하여 “물건을 터뜨려서”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3) “...의 예에 의한다”는 표현은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이도 일본법령을 번역한 번역문의 형태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2조의 예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第69條 (軍用施設等損壞) 第66條에 規定된 物件 또는 軍用に 供하는 鐵道, 電線 其他의 施設이나 物件을 損壞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1) ‘공하는’은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번역한 형태로 법령에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이를 고치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제공되는’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손괴’라 함은 물리적으로 위와 같은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⁴⁸⁾ 손괴⁴⁹⁾라는 한자어도 적당한 용어를 찾을 필요가 있다. 뒤의 법문에서 손괴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파손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타’라는 표현도 ‘그 이외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표현이 되며, 한글화에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48)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

49) 손괴를 그 의미를 풀어서 부수다는 표현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된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70條 (鹵獲物毀損) 敵으로부터 鹵獲한 物件을 橫領하거나 燒毀 또는 損壞한 者は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노획’은 그 의미가 “싸움터에서 적의 병기나 군용품 따위를 빼앗음”을 말하는 것으로 어려운 한자어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노획은 한글로 전용할 경우에 그 의미가 적등을 사로잡을 때 사용되는 노획은 ‘노획(虜獲)’으로 사용될 경우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노획은 그 의미속에 적에게서서 물건을 빼앗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노획한 물건’이라고 하든 지 아니면 ‘적에게서 빼앗은 물건’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이어서 쉬운 문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第71條 (艦船, 航空機의 覆沒損壞) ①就役中에 있는 艦船을 衝突 또는 坐礁시키거나 危險한 곳을 航行하게 하여 艦船을 覆沒 또는 破壞한 者は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②就役中에 있는 航空機를 墜落시키거나 覆沒 또는 損壞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前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は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1) “覆沒損壞”복몰은 사전적 의미가 “배가 뒤집혀 가라앉는 것”을 말하는데 표제어에서 함선과 항공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항공기의 추락등과 침몰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는 적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복몰이라는 한자어는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는 한자어도 아니다. 그리고 일본의 법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침몰이라는 표현이 더 일상적이라고 생각한다.

2) “就役中에 있는”에서 취역이란 사전적 의미가 역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박의 경우 역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항해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취역중이라는 표현 속에 있다는 것이 이미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동의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항해중인” 혹은 “업무중인”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간결성이나 문장의 어법에도 맞는 표현이 된다고 본다.

3) “坐礁시키거나” 좌초시킨다는 것은 암초 등에 걸리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한자어이므로 이를 한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풀어서 서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4) “破壞한”은 파괴는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반인이 읽기에는 어려운 한자어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고, 따라서 이를 한글로 전용하든지 아니면 부수다고 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순 자는”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第72條 (未遂犯) 第66條 乃至 前條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1) “乃至”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로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그 의미를 일반인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그 의미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거나 사물의 이름 사이에 쓰이어 ‘또는’·‘혹은’의 뜻”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내지는 제66조에서부터 제71조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제66조부터 전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第73條 (過失犯) ①過失로 因하여 第66條 乃至 第71條의 罪를 犯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 “乃至”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로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그 의미를 일반인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그 의미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거나 사물의 이름 사이에 쓰이어 ‘또는’·‘혹은’의 뜻”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내지는 제66조에서부터 제71조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2) “과실로 인하여”는 법령상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이는 불필요한 문어체로 권위적인 법령의 모습 중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일상적인 표현인 “과실로써”라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第74條 (軍用物 紛失) 銃砲·彈藥·爆發物·車輛·裝具·器材·食糧·被服 기타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保管할 責任이 있는 者로서 이를 紛失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紛失”은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다. 그러나 문장의 간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일반인의 이해를 우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분실이라는 한자어도 한글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의 권위의 탈을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잃어버림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기타 軍用に 供하는” 기타는 적당한 말로 바꾸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해서 적당하다. 따라서 ‘그 외’ 혹은 ‘그 밖의’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리고 “供하는”것은 일본식 표현으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物件을 保管할 責任이 있는 者로서 이를 紛失한 者는”은 문어체적인 표현으로 불필요하게 장문이 되어 이해하기 어렵고 권위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간결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좋

을 것이다. 그러므로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잃어버린 때에는 5년이하의...”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도 쉽고 어법에도 맞는 표현이 될 것이다.

第75條 (軍用物等 犯罪에 대한 刑의 加重) ①銃砲·彈藥·爆發物·車輛·裝具·器材·食糧·被服 기타 軍用に 供하는 物件 또는 軍의 財産上의 利益에 關하여 刑法 第2編第38章 내지 第41章의 罪를 犯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銃砲·彈藥 또는 爆發物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第1號 이외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 ②第1項第2號의 경우에는 刑法에 定한 刑과 比較하여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
- ③第1項의 罪에 대하여는 50萬圓이하의 罰金을 併科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75.4.4]

1) “기타 軍用に 供하는” 기타는 적당한 말로 바꾸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해서 적당하다. 따라서 ‘그 외’ 혹은 ‘그 밖의’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리고 “供하는”것은 일본식 표현으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3)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남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또한 일본식 법문을 번역한 번역문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불필요하게 사용된 의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에 제공하는 물건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것이 어법상으로도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군의 재산이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앞문장에서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군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여...”라고 하는 것이 문장을 간결하게 하면서 이해하기도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第76條(豫備, 陰謀) 第66條 乃至 第69條와 第71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は 7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1) “乃至”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로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그 의미를 일반인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그 의미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거나 사물의 이름 사이에 쓰이어 ‘또는’·‘혹은’의 뜻”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내지는 제66조에서부터 제71조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2) 예비 음모⁵⁰⁾ 같은 표현도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적당한 용어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3)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한 일본식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되고 있다. 이를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일반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그 목적인 범죄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도 쉽다고 생각된다.

50)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따라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음모는 결코 이해하기 쉬운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第77條 (外國의 軍用施設 또는 軍用物에 對한 行爲) 이 章의 規定은 國軍과 共同作戰에 從事하고 있는 外國軍의 軍用施設 또는 軍用に 供하는 物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

“공하는”은 일본식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군용에 제공되는 물건에 대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고, 수동과 피동의 태를 바꾸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第12章 違令의 罪

第78條 (哨所侵犯) 哨兵을 欺罔하여 哨所를 通過하거나 哨兵의 制止에 不應한 者は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1年以上 5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1) 제12장 위령의 죄에서 위령은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아니고 이는 다시 말해서 법령이 권위적이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령의 사전적 의미가 명령위반의 준말처럼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차라리 “명령위반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2) 초병은 군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경계병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3) “기망하여”에서 기망은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긴 하지만 일반인이 잘 사용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는 아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법문을 “경계병을 속이고...”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의미를 전달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통과하다는 표현도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냥 “지나가다”라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5)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는 ‘의’라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하여”는 일본식 문장이므로 역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6) 적전은 적앞으로 고치면 될 것이다.

第79條（無斷離脫）許可없이 勤務場所 또는 指定場所를 一時離脫하거나 指定한 時間内に 指定한 場所에 到達하지 못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1) 일시이탈을 잠시 이탈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2) ‘到達’은 법령상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착’이 더 친숙한 표현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第80條（軍事機密漏泄）①軍事上の 機密을 漏泄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前項의 罪를 범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1) 누설은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가 아니고 한글로 전용할 경우에도 누설은 새어나가다의 의미와 감옥이라는 의미를 가져 혼돈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군사상의⁵¹⁾ 기밀을 새어나가게 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이 쉽고 일반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제2항의 경우에는 어순을 고치는 것이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어법에도 맞으면서 이해하기도 쉬운 일상적인 문장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51) ‘의’ 관형격조사로써 일본식 문장의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전항의 죄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第81條 (暗號不正使用) 暗號를 許可없이 發信하거나 受信할 資格이 없는 者에게 受信하게 하거나 또는 自己가 受信한 暗號를 傳達하지 아니하거나 虛僞傳達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발신하거나 수신할...”은 발신과 수신 등은 흔히 사용되는 법령상의 한자어이다. 그러나 이는 굳이 한자어를 사용하여야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보내거나 받는 것으로 고쳐 “암호를 허가 없이 보내거나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거나 받은 암호를 전달하지 않거나...”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한자어를 줄이고 문어문장도 일상적인 표현방법으로 바꾸고, 법령의 한글화에도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第13章 掠奪의 罪

第82條 (掠奪) ①戰鬪地域 또는 占領地域에서 軍의 威力 또는 戰鬪의 恐怖를 利用하여 住民의 財物을 掠取한 者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戰鬪地域에서 戰死者 또는 戰傷病者의 衣類 其他의 財物을 掠取한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1) 약탈은 폭력을 이용하여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 한자로 사용될 경우 일반인이 쉽게 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이므로 이를 한글로 전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약탈을 한글로 전용하여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제1항의 경우에도 어법에 맞게 어순을 바꾸는 것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군인이 군의 힘을 이용하여 전투지역 등에서 약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여기서 주어는 군이므로 관형격조사 의를 없애고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군이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전투지역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또는 점령지역에서 주민의 재물을 약취⁵²⁾-빼앗은-자는...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는 문자이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 기타 재물을 약취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항의 해석에서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전상병자란 전투중 사망자 혹은 부상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투지역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을 모두 말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본 항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본다면 전투지역에서 전투중 사망자나 부상자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처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항을 좀더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전투지역에서 전투중 사망자나 부상자의...”라고 하는 것이 해석상 쉬울 것이다.⁵³⁾

第83條 (掠奪로 인한 致死傷) ①前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殺害하거나 致死한 者は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②前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하거나 致傷한 者は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全文改正 1963.12.16]

1) “치사한, 치상한”은 “치사케 한, 치상케 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다. 형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치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⁵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적할 것이다.

52)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문장의 문맥상 약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해석상의 문제도 남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약취를 우리말인 빼앗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53) 만약 본 항의 내용이 전투지역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자의 재물을 약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라고 하면 되지 않고, “전투지역에서 사망자나 부상자”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투지역에서 군인 사망자와 민간인 사망자를 구별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본항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54) 형법 第301條 (強姦등 傷害·致死) 第297條 내지 第300條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죄를 범하여’ 라고 표현하는 경우에 ‘죄를 범하여’가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족한가 아니면 기본범죄가 기수에 이르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더욱이 형법의 경우 “죄를 범한 자”가 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나 미수여도 상관없는가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강간치사상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강간치사상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⁵⁾ 문제는 낙태치상죄나 교통방해치사상죄 등과 같이 미수범을 포함하는 규정이 없는 죄는 미수범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고 판례⁵⁶⁾도 같은 입장이다.⁵⁷⁾ 그러므로 이러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본조의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형법과 통일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차라리 “전조의 죄가 성립하여...”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3) 제2항의 경우에도 “상해하거나 혹은 상해에 이르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第84條 (戰地強姦) ①戰鬪地域 또는 占領地域에서 婦女를 強姦한 者は 死刑에 處한다.
 ②前項의 罪에 對한 公訴에는 告訴를 要하지 아니한다.

55)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그 행위와 치상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생식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억지로 성교하려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주일 간의 좌둔부 찰과상을 입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209 판결).

56) 형법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죄의 주체는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미수범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4.7. 선고 95도94 판결). 다만 이 판례 이후에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어 현행성폭력특별법의 경우 제9조 제1항은 제6조의 미수범까지도 포함한다는 반대의 견해가 있다(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5, 155면 이하).

57)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4, 215면.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 “전지강간”에서 전지는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을 말하는데 이를 한글로 전용할 경우에 전지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용어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 전투지 등에서 강간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2) 강간의 객체인 부녀⁵⁸⁾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로 그 의미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일반인이 사용할 때에는 부녀자란 기혼의 여성으로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 “여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문어체적인 법령을 일반적인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고치면 “전항의 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第14章 捕虜에 關한 罪

第86條 (捕虜) 敵에게 捕虜가 된 者로서 友軍部隊 또는 陣地로 歸還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歸還할 適切한 行動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他友軍捕虜로 하여금 歸還하지 못하게 한 者는 2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58)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性)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정상적인 경우 남성은 xy, 여성은 xx)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생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각 성염색체의 구성에 맞추어 내부생식기인 고환 또는 난소 등의 해당 성선(性腺)이 형성되고, 이어서 호르몬의 분비와 함께 음경 또는 질, 음순 등의 외부성기가 발달하며, 출생 후에는 타고난 성선과 외부성기 및 교육 등에 의하여 심리적, 정신적인 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하여)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1) 포로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한자로 사용될 경우에 어려운 한자이다. 따라서 이를 한글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한글을 사용하여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적에게 포로가 된 자로서”에서 문장이 번역문의 형태를 이룬 문어체 문장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포로는 그 의미자체가 “전시에, 범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이유로 인하여 교전상대국의 권력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적국인”을 말하는 것으로 적에게 포로가 된 자로서 라고 하지 않고 그냥 “포로가 된 자”가라고 하면 이미 그 속에 문장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동일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국어 문법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3) 우군 부대는 “우리 부대”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반적이라고 생각된다.

4) ‘귀환’은 일반인이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한자어이다. 그러므로 “돌아오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는 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귀환에 필요한 행동”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5) “他友軍捕虜”는 다른 우리편으로 포로가 된자를 말하는 것으로 범문의 간결성을 이유로 한자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것 또한 불필요한 한자어의 남발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른 포로”라고 하여도 의미는 전달되고 법 문장의 간결성을 해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본다.

第87條 (看守者の 捕虜逃走援助) 捕虜를 看守 또는 護送하는 者가 그 捕虜를 逃走하게 한 때에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 표제어에서 “간수자”란 오늘날 교도관리를 이르는 옛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교도관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교도관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다만 포로의 경우 포로를 수용하는 곳을 교도소나 구치소라고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수용소 등을 명칭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간수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용소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간수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라 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의 법문에서 간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도관리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냥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될 것이다.

2) “捕虜逃走援助”에서 도주의 원조죄에서 도주원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포로의 도주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도주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⁵⁹⁾ 그리고 도주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도망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령에서 한글화 작업을 하면서 이미 법령 중에는 도망이라는 표현을 사용되고 있다.

3) 그리고 “援助”는 법령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반인은 쉽게 읽거나 이해할 수 없고, 또한 한글로 전용될 경우에 원조는 도와준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처음에 해당하는 등 그 의미가 혼동될 수 있는 한자어이다. 더욱이 원조를 한글로 그 의미를 풀어 사용하여도 법문의 간결성을 해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우리말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적인 법령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4) 그리고 법문을 전체적으로 일상적인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포로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가 포로를 도

59)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 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656 판결).

망시키면...”이라고 하는 것이 원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 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조의 경우 범문의 표제와 달리 단순히 도주를 막지 못해도 도주원조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듯한 오해를 하게 할 수 있다.

第88條 (捕虜逃走援助) ①捕虜를 逃走하게 한 者는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②捕虜를 逃走시킬 目的으로 捕虜에게 器具를 供與하거나 其他 그 逃走를 容易하게 하는 行爲를 한 者는 7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1) 표제어인 “捕虜逃走援助”는 “포로의 도망을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2) 제1항의 경우 ‘도주’를 ‘도망’으로 고치고 여기서 ‘포로의 도망이’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로의 도망을 도운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표현이 된다.

3) ‘기구’는 포로가 도망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구보다는 도구라고 하는 것이 본법의 취지와 좀더 일치하고 또한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도 쉬운 것이다.

4) “공여”는 법령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오히려 ‘제공하다’는 표현이 더 일상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도구를 준다. 혹은 기구를 준다라고 하여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5) ‘其他’는 ‘그 이외에’ 혹은 ‘그 밖에’ 라고 하여 불필요하고 불명확한 표현인 한자어의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6) “용이하게”는 ‘쉽게’라고 하는 것이 더 간결하면서도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조차 불필요하게 한자어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법령이 지닌 권위적인 면이면서,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89條 (捕虜奪取) 捕虜를 奪取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1) “奪取”는 억지로 빼앗는다는 의미와 냄새 등을 제거하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 한글화할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탈취라는 한자어 또한 일반인이 쉽게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풀어서 사용하거나 다른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그리고 탈취란 그 성격상 정범으로서 실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도주하게 하는 것은 포로에게 도망할 것을 야기 시키거나 이를 쉽게 하는 등 일종의 공범관계에서 가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탈취란 포로를 불법하게 이탈시키는 일체의 사실적 행위를 말한다. 탈취의 수단과 방법에는 적극적인 방법과 위계, 기망 등 그리고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취란 포로를 그 관리자의 실력적 지배하로부터 불법적으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포로를 해방하여 달아나게 하는 것은 탈취가 아니라 도주하게 하는 것이다.⁶⁰⁾ 이처럼 탈취라는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고 논란도 많고, 또한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를 논란이 적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주 원조와 구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로를 불법적으로 해방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게 둔 경우에는...”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第90條 (逃走捕虜庇護) 逃走한 捕虜를 隱匿하거나 庇護한 者는 5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1) “도망포로보호”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60) 이재상, 형법각론, 726면 참조(다만 김일수/서보학 교수는 각론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2) “隱匿”은 법령상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한자어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숨기다”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리고 “비호”는 잘 보호한다는 의미이지만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 보호로 대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第91條 (未遂犯) 第87條 乃至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내지는 “...에서 부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第15章 其他의 罪

第92條 (醜行) 鷄姦 其他 醜行을 한 者는 1年以下の 懲役에 處한다.

1) 계간은(鷄姦)은 동성간의 간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동성애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2) 기타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성애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이하의...”라고 하면 될 것이다.

第93條 (部下犯罪不鎮定) 部下가 多數共同하여 罪를 犯함을 알고도 그 鎮定을 爲하여 必要한 方法을 다하지 아니한 者는 3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1) 부하는 한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한글화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2) “다수 공동하여” 공동은 2인 이상을 말하고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공동하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몇 명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본조의 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부

II. 균형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하의 소요사태 등을 진정시키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차라리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하들이 함께 모여서 죄를...”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3) “진정”은 그 용어를 한글로 전용할 경우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한글로 전용할 경우 그 의미가 거짓이 없는 참된 정이나 애뜻한 마음(眞情), 참으로·바로·정말(眞正), 실정을 털어놓고 말함(陳情), 억눌러서 평정함, 가라앉힘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차라리 ‘진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第94條 (政治關與) 政治團體에 加入하거나 演說 또는 文書 其他의 方法으로 政治的意見을 公表하거나 其他 政治運動을 한 者는 2年以下の 禁錮에 處한다.

1) 기타의 방법으로는 앞의 문서와 이어서 “문서 등의 방법으로...”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되는 일상적인 표현이 되고 불필요한 한자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연히 알려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특정한 1인에게 알린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을 때에는 공표에 해당한다.⁶¹⁾ 따라서 사전적 의미인 “세상에 널리 알린다”라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일반인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앞의 문장과 연결하여 보면 “...연설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밝히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61) 이재상, 각론, 668면.

II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1條 (目的) 이 法은 集團的, 常習的 또는 夜間에 暴力行爲等을 恣行하는 者等을 處罰함을 目的으로 한다.

“恣行”은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행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쉬운 한자어는 아니다. 그리고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결코 필요한 단어도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법은...폭력 행위 등을 한 자 등을 처벌함...”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도 쉽고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라고 본다.

第2條 (暴行等) ①常習的으로 刑法 第257條第1項(傷害), 第260條第1項(暴行), 第276條第1項(逮捕, 監禁), 第283條第1項(脅迫), 第319條(住居侵入, 退去不應), 第324條(暴力에 依한 權利行使妨害), 第350條(恐喝) 또는 第366條(損壞)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夜間 또는 2人以上이 共同하여 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때에는 各 刑法 本條에 定한 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
③이 法 違反(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 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 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
④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第3項의 境遇에는 刑法 第260條 第3項 및 第283條第3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衣한”은 한자어로 표기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한글화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2) “공동하여”에서 공동은 공동정범을 말하는 것이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II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⁶²⁾ 이처럼 공동하역의 개념은 한자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공동”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여야만 반드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한글화하여 고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권위적인 법령을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예를 들어 “2인 이상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3) “累犯”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형법제35조 제1항). 누범⁶³⁾은 실제법상 일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시에는 과거의 범죄행위가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서 과형상 수죄라고 할 수 있다.⁶⁴⁾ 이는 실제법상 일죄를 과형상 수죄로 한다는 것은 피고인을 실제보다 불리하게 소송에서 취급한다는 점에서 책임주의에 위반되고 나아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⁶⁵⁾⁶⁶⁾ 그리고 누범은 법령상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일반인에게는 낯설은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범”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⁷⁾

62)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63)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행을 선고받아 복역자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 가중은 정당하다(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2004 판결).

64)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조 제2항).

65)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1.23. 선고 89도2227 판결).

66)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672면.

67) 이에 대하여 우리 형법에서 누범과 재범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한자의 의미에 따르면 재범이라는 말 속에는 누범 뿐만 아니라 현행 형법에서 경합범이나 상습범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재범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견해도 있다(정완희 공저, 전거서, 43면 이하).

4)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상 흔히 사용되는 문어체 표현이다.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보다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第3條 (集團의 暴行等) ①團體나 多衆의 威力으로써 또는 團體나 集團을 假裝하여 威力을 보임으로써 第2條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者 또는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그 罪를 犯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夜間에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③常習의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④이 法 違反(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 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 第1項의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도 第3項과 같다.

1) “威力으로써”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⁶⁸⁾ 그런데 위력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약간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사전적 의미를 보면 위력은 사람을 위압하는 힘 또는 강대한 힘이나 권력을 말하는 것으로써 차이가 없지는 않다.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법률을 일반인과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위력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억압 혹은 압박,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가장”은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말하는데 속이다는 것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나 집단임을 속여서 위협하여...”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훨씬 쉬울 것이다.

3) 본조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68)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II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여기서 흉기는 무기일 것을 요한다는 이유에서 청산가리나 마취제 등은 흉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인 이상 이를 고체에 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액체나 기체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⁶⁹⁾ 문제는 형법이 위험한 물건⁷⁰⁾과 흉기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형법 제331조, 제334조). 원래 위험한 물건은 흉기를 포함한 상위개념이며, 흉기는 위험한 물건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휴대는 소지 즉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범행이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하지 않고 범행현장에서 이를 소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휴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상대방에게 인식케 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⁷¹⁾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이 다수의 지위를 누리는 것은 실제로 휴대라는 표현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면서 휴대라는 개념을 법원은 더욱 확대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는

69) 이재상, 형법각론, 271면.

70) 위험한 물건이란 무기나 폭발물과 같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물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면도칼, 안전면도용 칼날, 파리약 유리병, 마요네즈병 깨진 맥주병이나 항아리 조각은 물론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이나 빈양주병, 드라이버나 쪽가위, 곡괭이자루, 벽돌, 의자와 당구큐대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승용차 또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이재상, 형법각론, 제66조 참조).

7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것으로 보았다.⁷²⁾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등을 한 경우에 중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를 상대할 경우 신체 등의 위험성이 훨씬 쉽게 노출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생명 신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본조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대정도 즉 소지정도로는 족하지 않고, 이를 상대방이 인신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휴대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고, 많은 해석의 문제를 남겨 범죄자에 대한 부당한 확대처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휴대라는 한자어 대신에 이를 “보이고” 혹은 “사용하여”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하고 이해하기도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5) 제2항이 문구는 어순을 고쳐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1항의 죄를 야간에 범한 사람은...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바른 어순이 된다고 생각된다.

6) 제3항의 경우에도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사람은)...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되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상습적이라는 것은 범죄자의 주관적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의 상습이 아니라 범죄자의 상습성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상습적으로 범한자 라고 하는 것이 수식되는 표현을 바로 전에 두는 것이 어법에 맞는 문장이라 할 것이다.

7) 누범은 범죄를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일반인은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법령의 권위를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이 통상적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표현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라면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 “재범”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본다.⁷³⁾

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73) 물론 법률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범과 재범은 분명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법학자가 가진 일종의 선입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II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4條 (團體등의 구성·活動) ①이 법에 規定된 犯罪를 目的으로한 團體 또는 集團을 構成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首魁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幹部는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3. 그외의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構成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가 團體 또는 集團의 威力을 과시하거나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의 行위를 한 때에는 그 罪에 대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

1. 刑法 第8章 公務妨害에 關한 罪중 第136條(公務執行妨害)·第141條(公用書類等の 無效·公用物の 破壞)의 罪, 同法 第24章 殺人의 罪중 第250條第1項(殺人)·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第253條(偽計等に 依한 囑託殺人等)·第255條(豫備, 陰謀)의 罪, 同法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중 第314條(業務妨害)·第315條(競賣, 入札의 妨害)의 罪, 同法 第38章 竊盜와 強盜의 罪중 第333條(強盜)·第334條(特殊強盜)·第335條(준강도)·第336條(약취강도)·第337條(強盜傷害, 致傷)·第339條(強盜強姦)·第340條第1項(海上強盜) 및 第2項(海上強盜傷害, 致傷)·第341條(常習犯)·第343條(豫備, 陰謀)의 罪를 犯한 者

2. 이 법 第2條 또는 第3條의 罪를 犯한 者

③他人에게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할 것을 強要하거나 勸誘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④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構成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여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金品을 모집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1) “단체 조직 등의 구성”에서 구성하는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꼭 한자어를 사용하여야 그 의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의미를 전달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한, 그리고 법령의 간결성을 해치지 않는 한 우리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 등을 만들, 활동”이라고 하는 한글화 및 우리말 화하는데 옳다고 본다.

2)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란 표현은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고, 특히 관

형격조사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3)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⁷⁴⁾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이는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법령이 불필요한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일본의 법령을 번역한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상적인 표현이 두목 또는 우두머리 등으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한 것이다. 이미 우리 법원에서도 수괴를 우두머리⁷⁵⁾ 혹은 두목⁷⁶⁾이라는 표현을 보통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4) 제2항의 구성하거나 “만들거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5)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가 團體 또는 集團의 威力을 과시하거나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의 行위를 한 때에는...”은 구성하거나 뒤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에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의 과시하거나...에서 단체 또는 집

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하며,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이 중간 간부로부터 지휘·통솔을 받음으로써 실제 두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고, 설사 두목을 알고 있다 하여도 조직의 생리상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75) 우두머리, 간부, 행동대원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상하관계가 정해진 30여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확립된 위계질서에 따라 지휘, 통솔이 이루어지며 정해진 행동강령과 규율 아래 시내 일대의 유흥가를 폭력으로 지배하여 경제적인 이권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여 온 두 폭력조직이 시내 일대 유흥가의 주도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여 양파의 구성원들이 수시로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면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경우 위 두 폭력조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739 판결).

76) 기존 범죄단체의 두목이 바뀌고 활동 영역과 태양이 변화하였으나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단체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II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단을 생략하여도 문맥이 어색하지 않고, 동일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어법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만들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라고 하는 것이 법문의 간결성이나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6) 제3항의 경우 “他人에게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할 것을 强要하거나 勸誘한 者は 2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에서 어순을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이며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라고 할 것이다.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이 강요나 권유를 하는 대상이 타인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 된다.

第5條 (團體등의 이용·지원) ①第4條第1項의 團體나 集團을 利用하여 이 法 또는 其他 刑罰法規에 規定된 罪를 犯하게 한 者は 그 罪에 對한 刑中 가장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

②第4條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로서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資金을 제공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1) “法 또는 其他 刑罰法規에 規定된 罪”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벌법규가 규정된 죄란 다른 아닌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본조를 간결하게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간결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단체...이용하여 죄를 범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제1항의 표현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그 죄에 대한 형 중 가장 중한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제1항의 취지는 범죄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 죄에 대한 가장 중한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4조 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해당 범죄의 형중 가장 중한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문장이 된다.

3) “第4條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로서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資金을 제공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일상적이고 불필요한 문어체 문장을 수정하여 권위적인 법령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제4조 제1항의 團體 또는 集團을 만들거나 가입하지 않은 자가 그러한 단체 또는 集團의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쉬운 표현이 될 것이다.

第7條 (虞犯者) 正當한 理由없이 이 法에 規定된 犯罪에 供用될 憂慮가 있는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거나 提供 또는 斡旋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제7조의 표제어인 “우범자(虞犯者)”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본문의 내용과 우범자가 같은 의미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우범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표제어를 붙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제공, 알선” 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犯罪에 供用될 憂慮”는 공용된다는 한자어는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역시 일본식 법령을 번역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는 “범죄에 사용될 염려” 혹은 “범죄에 제공될 우려”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3) 여기서는 휴대라는 것이 앞에서 기술된 휴대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휴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지고”라고 하는 것이 특수폭행 등에서 규정된 것과 구별될 수 있고, 그 의미의 혼돈도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4) “斡旋”은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결코 일반적이거나 쉬운 한자어는 아니다. 알선하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양편의 사이에 들어서 일이 잘되도록 이리저리 마련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상적으로

II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는 알선보다 오히려 “주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므로 일반인이 잘 알 수 있게 “주선”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⁷⁷⁾

第8條 (正當防衛等) ①이 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等으로 사람에게 危害를 加하거나 加하려 할 때 이를 豫防 또는 防衛하기 위하여 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境遇에 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한다.

③第2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 其他 不安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驚愕·興奮 또는 唐慌으로 因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될 것이지 “등”은 삭제하여도 해석의 문제는 남지 않는다.

2)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은 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명확하지도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형법처럼 과잉방위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제3항에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⁷⁸⁾에서”는 기타 불안스러운

77) 동법의 제7조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특수폭행의 규정에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78)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오빠인 이 사건 피해자 (남, 33세)는 고향인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무런 직업 없이 지내면서 거의 매일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와서는 어머니인 공소의 1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며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행패를 계속하므로, 그의 술주정과 그로 인한 생활고 등을 참다못한 공소의 1은 1978.경 그녀의 둘째 아들인 공소의 2와 딸인 피고인을 데리고 피해자 몰래 서울로 이사한 다음, 그녀는 시장에서 노점상등으로 피고인은 목욕탕 또는 미용실의 종업원으로, 동생 공소의 2는 공원으로 각기 열심히 일하여 근근히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피해자가 1982.경 그의 가족들이 사는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와 그때부터 함께 살면서 다시 전과 같이 술주정과 행패를 계속해 오다가 1985.1.13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에 큰 상해를 입어 같은해 8.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신이상자처럼 욕설을 하거나 흉포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리는 정도가 더욱 심하여진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날인 1985.8.28.21:30경에도 피해자는 술에 몹시 취하여 그의 가족들이 사는 집에서 집안팎을 들락날락하면서 퇴근하여 집에 돌아온 피고인에게 갖은 욕설을 퍼붓고 있다가 같은 날 24:00경 시장에서 신발 노점상을 하는 어머니 공소의 1이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그녀에게 “씹할년”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그의 버릇을 잘 아는 공소의 1로부터 “내일 아침에 돈 10,000원을 줄테니 들어가서 자거라”는 대답을 듣고는 일단 수그러진듯 그의 방에 들어갔으나 곧 그의 방에 있는 선풍기를 들고 다시 나오면서 “10,000원이 뭐냐, 100,000원을 쥐야지, 이년들, 저희들은 새 선풍기를 쓰고 내게는 현 선풍기를 쥐”라

고 소리치며 위 선풍기를 집어던져 부수는 등 난동을 계속하므로 이에 겁을 먹은 어머니 공소의 1과 피고인 및 공소의 2가 모두 안방으로 피해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으나, 잠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거칠게 “문을 열라”고 고함치면서 안방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가 하면, 문손잡이를 잡아 비틀고 힘을 주어 미는 등의 행패를 5시간 가량 계속함으로써 다음날인 같은달 29.05:00경에는 위 안방문이 거의 부서질 지경에 이르게 된 사실, 이에 견디다 못한 공소의 1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자 피해자는 주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식칼을 찾아 꺼내어 왼손잡이인 그의 왼손에 들고 공소의 1을 향해 “이년, 너부터 찢러 죽이고 식구들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칼을 그녀의 얼굴 가까이 갖다 들이대어 그녀가 놀라서 기절한 사실, 그 순간 이를 방안에서 보고 있던 동생 공소의 2가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마루로 뛰어나감과 동시에 왼손으로는 어머니 공소의 1을 옆으로 밀치면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고 칼을 뺏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오른손으로 공소의 2의 목을 앞에서 움켜쥐고 손아귀에 힘을 줌으로써 공소의 2로 하여금 숨쉬기가 곤란할 지경에 이르게 한 사실, 그때까지 겁에 질려 방안에서 이를 보기만 하고 있던 피고인은 그대로 두면 공소의 2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구하기 위하여 마루로 뛰어나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손으로 그의 목을 앞에서 잡아 쥐고 힘껏 조르면서 뒤로 밀자, 그가 뒤로 넘어지므로 피고인도 함께 앞으로 쓰러진 다음, 그의 몸위에 타고 앉은 채로 정신없이 두손으로 계속 그의 목을 누르고 있던 중, 피고인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풀려난 공소의 2가 기절하여 쓰러져 있는 공소의 1의 상태를 살피는 등 약간 지체한 후에 피고인이 그때까지도 피해자의 몸위에서 두손으로 그의 목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리고 “누나, 왜 이래”하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듯 피해자의 목에서 손을 떼면서 일어났으나, 그때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졸임으로 말미암아 질식된 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평소 흥포한 성격인데다가 술까지 몹시 취한 피해자가 심하게 행패를 부리던 끝에 피고인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식칼을 들고 공소의 1에게 달려들어 찢을 듯이 면전에 칼을 들이대다가 공소의 2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 공소의 2의 목을 손으로 졸라 숨쉬기를 어렵게 한 위급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공소의 2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넘어뜨린 행위는 공소의 1, 2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사건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위행위로 말미암아 뒤로 넘어져 피고인의 몸아래 깔려 더 이상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적어도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졌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위에 타고 앉아 그의 목을 계속하여 졸라 누름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극히 짧은 시간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방위위사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위와 같이 연속된 전후행위는 하나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야간에 흥포한 성격에 술까지 취한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불의의 행패와 폭행을 하여 온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862 판결).

II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상태하에서라는 표현을 앞에 두는 것은 어법상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된다. 그리고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는 그 이외에 그밖에 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第9條(司法警察官吏의 職務遺棄) ①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를 搜查하지 아니하거나 犯人을 알면서 이를 逮捕하지 아니하거나 搜查上 情報를 漏洩하여 犯人의 逃走를 容易하게 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賂物의 收受要求 또는 約束을 하고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1)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없다.⁷⁹⁾ 이처럼 직무유기란 내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해하기 대단히 어렵다. 적당한 용어를 찾아 바꿀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로는 적절한 용어를 찾을 수 없어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 문어체 문장을 고쳐 일상적인 표현으로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법경찰관리로서”라는 자격격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주격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문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면서 이해하기도 쉽다.

3) “누설”은 어려운 한자어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를 새어나가게...”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법문의 간결성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는 도주는 도망으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용이하게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반드시 한자어를 사용하여야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한글화하는

79)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쉬운 표현조차도 한자어를 남발하는 것 역시 권위적인 법령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망을 쉽게...”로 고치는 것이 쉬운 문장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5) “뇌물의 수수요구”는 관형격조사 “의”를 고치는 것이 일본식 표현을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뇌물이 목적이므로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그리고 수수요구는 한글화할 경우 그 의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수가 거두어 받는 것, 주고받는 것, 등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말로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뇌물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약속하고...” 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第10條 (司法警察官吏의 行政的 責任) ①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第2條 乃至 第6條의 犯罪가 發生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그에게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그 搜查를 怠慢히 하거나 또는 搜查能力不足 其他의 理由로써 司法警察官吏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任命權者에게 當該 司法警察官吏의 懲戒, 解任 또는 替任을 要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要求가 있을 境遇에는 任命權者는 2週日以內에 當該 司法警察官吏에 對하여 行政處分을 한 後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는 내지는 법령상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로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어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쉽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2조부터 제6조의 범죄”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고 의미를 전달하기도 쉬울 것이다.

2)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법령에서 사용되는 문어체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다 쉬운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것이 좀더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3) “태만히”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되는 법령상의 한자어이지만 태만은 결코 쉬운 한자어가 아니므로 일반은 이를 읽고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사를 “게을리” 하고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I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4) “搜查能力不足 其他의 理由로써 司法警察官吏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者에 對하여⁸⁰⁾는 그 任命權者에게 當該 司法警察官吏의 懲戒, 解任 또는 체임⁸¹⁾을 要求할 수 있다”에서 우선 어순을 바꾸는 것이 어법에 맞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사법경찰관이 수사능력부족등을 이유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를...”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되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5) “당해”는 해당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당해”라는 표현은 한자어를 일상적인 용어와 달리 뒤집어 사용함으로써 권위적인 이미지를 가지려는 법령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된다.

6)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문어체 문장으로 이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범문의 간결성에도 부합하고 일상적인 표현이 된다.

7) “當該 司法警察官吏에 對하여 行政處分을 한 後”는 당해는 해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어법에 맞고, “사법경찰관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에게”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고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문어체문장과 번역문의 형태를 벗어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80) “대하여”도 역시 전체 문장에서 빠져도 좋을 것이다.

81) 체임은 “교체”라는 표현이 더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이 될 것이다.

IV.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1條 (目的) 이 법은 刑法·關稅法·租稅犯處罰法·山林法 및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에 規定된 特定犯罪에 대한 加重處罰等を 規定함으로써 健全한 社會秩序의 維持와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1) “加重處罰等を 規定함으로써”는 문어체 문장을 간결하게 조사를 바꾸어 고치는 것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중처벌등을 규정하여”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寄與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기여는 “남에게 이바지하거나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결코 읽기 쉬운 한자어는 아니고 한자어를 사용해야 그 의미를 전달하거나 또는 범문의 간결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第2條 (賂物罪의 加重處罰) ①刑法 第129條·第130條 또는 第132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그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賂物의 價額(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

1. 收賂額이 5千萬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收賂額이 1千萬원이상 5千萬원미만인 때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削 除 <1990.12.31>

수수는 거두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뇌물이 목적이므로 이를 앞으로 어순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문장이 된다. 예를 들어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뇌물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약속한 가액(수뢰액)에 따라...”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아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IV.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3條 (斡旋收財) 公務員의 職務에 속한 事項의 알선에 관하여 金品이나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公務員의 職務에 속한 事項의 알선에 관하여”는 일본식 문장을 번역한 형태로 주격조사를 관형격조사를 사용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명목으로...”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법문도 명확히 하여 범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⁸²⁾⁸³⁾

2) 알선은 일반적으로는 주선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인 표현이라 할 것이다.

第4條 (賂物罪適用對象의 擴大)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團體 (이하 “企業體”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企業體(이하 “政府管理企業體”라 한다)의 幹部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資本金의 2分の 1이상을 出資하였거나 出捐金·補助金등 그 財政支援의 규모가 그 企業體 基本財産의 2分の 1이상인 企業體

82) 본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 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83) 알선수재죄도 적당한 용어를 찾아 바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2. 國民經濟 및 産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業務의 公共性이 현저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導·監督하거나 株主權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決定 및 任員의 任免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實質的인 支配力을 행사하고 있는 企業體

②第1項의 幹部職員의 범위는 企業體의 設立目的, 資産, 職員의 규모 및 해당 職員의 구체적인 業務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1) 표제어에서도 관형격조사 의를 빼고 조사를 알맞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뇌물죄 적용대상을 확대”라고 하는 것이 어법상 맞는 표현이다.

2)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團體(이하 “企業體”라 한다)로서”에서 자격격 조사인 로서를 사용하여 문어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3)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에서 내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라고 고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형격조사 ‘의’를 남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쉽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를 적용하면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훨씬 이해가 쉬운 문자이면서 법문의 간결성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출연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므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차라리 일반적으로는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5) “株主權의 행사 등을 통하여”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고 조사의 사용이 맞다고 할 것이다. 습관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문장의 답습이라 할 것이다.

IV.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4條의2 (逮捕·監禁等の加重處罰) ①刑法 第124條·第125條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사람을 致傷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刑法 第124條, 第125條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사람을 致死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本條新設 1983.12.31]

1) “치상”은 법령상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일반인은 결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적당한 용어로 풀어서 사용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치상한 때는” “과실로 상해한 때”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때” 등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치사한 때’역시 일반인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따라서 치사한 때란 과실로 사망시킨 때,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 때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第4條의3 (公務上 秘密漏泄의加重處罰) 國會法 第5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4.6.28]

1) 표제어에서 관형격조사를 고치는 것이 법령의 한글화를 제촉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공무원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은 “공무원 비밀누설하면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고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쉬운 표현이 된다.

2) “규정에 위반⁸⁴⁾한 자”는 “규정을 위반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 문장이라 할 것이다.

84) 2002년의 개정 민사소송법은 제45조에서 위배하다는 것을 일상적이기는 하지만 한문투의 권위적이고 구시대적이라는 이유에서 “어긋나다”로 바꾸었다(박갑수, 개정민사소송법의 순화와 향후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3. 4. 30., 20이하 참조). 그러나 어긋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엇갈리다 또는 ‘서로 꼭 맞지 않다’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히려 약속, 시간, 명령 등을 지키지 않다는 어미에서 ‘어기다’라고 고치는 것이 적당한 견해에 찬성한다(정완의 공저, 전개서, 47면 참조).

IV.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5條（國庫等 損失）會計關係職員等の責任에關한法律 第2條第1號·第2號 또는 第4號(第1號 또는 第2號에 規定된 者의 補助者로서 그 會計事務의 일부를 처리하는 者에 한한다)에 規定된 者도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損失을 미칠 것을 認識하고 그 職務에 관하여 刑法 第355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失이 5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失이 5千萬원이상 5億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1) “보조자로서”는 “보조자 중”이라 하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2)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는 문어체적 표현으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第5條의2（略取·誘引罪의 加重處罰）①刑法 第287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略取 또는 誘引한 目的에 따라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

1.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의 父母 기타 그 未成年者의 安全을 念慮하는 者의 憂慮를 利用하여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할 目的인 때에는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殺害할 目的인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7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②刑法 第287條의 罪를 犯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

1.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의 父母 기타 그 未成年者의 安全을 念慮하는 者의 憂慮를 利用하여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이를 要求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3.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暴行·傷害·監禁 또는 遺棄하거나 그 未成年者에게 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4. 第3號의 罪를 犯하여 未成年者를 致死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7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IV.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한 者를 幫助하여 略取 또는 誘引된 未成年者를 隱匿 기타의 方法으로 歸家하지 못하게 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④刑法 第288條·第289條 또는 第292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⑤常習으로 第4項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정한 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

⑥第1項·第2項(第2項第4號를 제외한다) 및 第4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罪를 犯한 者를 은닉 또는 逃避하게 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⑧第1項, 第2項第1號·第2號 또는 第4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本條新設 1973.2.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인’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감언이설을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기망에 준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유혹이 있고 상대방이 그러한 유혹에 현혹되어 명백히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야 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⁸⁵⁾”라고 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를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유인이라고 하지 말고 “적극적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기타는 법령에서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를 삭제하여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고, 문법적인 문제도 또한 발생하지 않는 불필요한 한자어이다.

3) “未成年者의 安全을 念慮하는 者의 憂慮를 利用하여”는 안전을 염려하는 것은 걱정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일상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염려하는 자의 우려는 동일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문법에도 맞지 않는 어색한 문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자의 우

85) 서울고법 2002. 4. 12. 선고 2001노3042 판결.

려라고 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법문의 간결성에도 맞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안전을 걱정하는 자를 이용하여”라고 하면 될 것이다.⁸⁶⁾

4) “未成年者를 致死한 때에는”에서 치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법령의 권위를 벗어나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를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 혹은 “미성년자를 사망케 한 때” 아니면 처음부터 고의와 과실을 분명히 하여 “미성년자를 과실로 사망케 한 때”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5) “隱匿”은 일반인은 이해하거나 읽기 어려운 한자어이다. 따라서 “숨기다”라고 하여도 그 의미를 통하게 하고 해석상의 문제도 남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기타의 方法으로 歸家하지 못하게 한 者는”에서 본문의 기타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한자어이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른 방법” “그 밖의 방법”이라고 하며 될 것이다. 그리고 귀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한자어로 이러한 한자어도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을 권위주의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도 될 수 있으면 우리말로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다른 방법으로 집에 가지 못하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면서 이해하기도 쉽고 일반인에게 유리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7) “逃避하게 한 者”는 도피 하다는 것은 도망 하다는 것과 그 의미가 다르다 할 수 없고, 도피라는 표현을 굳이 해석하면 피하여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 도망과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도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도망시킨

86) 근본적으로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한다는 것이 안전을 염려할 의무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법문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안전을 염려하는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주는 것이 더 나은 입법태도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있는자의 걱정을 이용하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IV.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자”라고 하여 피동과 수동의 격을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표현이 된다고 생각된다.

第5條의3 (逃走車輛運轉者의 加重處罰) ①道路交通法 第2條에 규정된 自動車·原動機裝置自轉車 또는 軌道車의 交通으로 인하여 刑法 第268條의 罪를 犯한 當해 車輛의 運轉者(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道路交通法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하고 逃走한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被害者를 致死하고 逃走하거나, 逃走後에 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被害者를 致傷한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事故運轉者가 被害者를 事故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逃走한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被害者를 致死하고 逃走하거나 逃走後에 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被害者를 致傷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本條新設 1973.2.24]

1) 도주는 도망으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2) 궤도차는 궤도 위를 운행하는 차량으로 기차나 전차를 말하는데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므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기차 등으로 고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自動車·原動機裝置自轉車 또는 軌道車의 交通으로 인하여”는 문장의 간결성을 위해서 본조처럼 나열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라고 하든지 아니면 “차량을 운전하여”라고 하는 것이 문장도 간결하고 이해하기도 쉬운 문장이 된다.

4) 당해는 해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5) “제50조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하고” ‘제50조에 規定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라 할 것이다.

6) “도주”는 도망으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라 할 것이다.

7) “다음의 구분에 따라”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형격조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라 생각된다.

第5條의4 (常習強·竊盜罪등의 加重處罰) ①常習으로 刑法 第329條 내지 第331條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②5人이상이 共同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③常習으로 刑法 第333條·第334條·第336條·第340條第1項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④刑法 第363條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⑤刑法 第329條 내지 第331條와 第333條 내지 第336條·第340條·第362條의 罪 또는 그 未遂罪로 3回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 이들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도 第1項 내지 第4項과 같다.
[本條新設 1980.12.18]

1) 제1항의 경우 어순을 바꾸는 것이 어법에 맞는 문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미수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

2) 제2항의 경우에도 어순을 바꾸는 것이 어법에 맞는 문장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1항의 죄를 5인 이상 공동하여 죄를 범한 자는...”이라고 하여야 일반적인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될 것이다.

3) 제5항의 경우에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 이들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도 第1項 내지 第4項과 같다”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는 문어체 문장으로 법령의 권위적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받은 자가”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4) 누범은 재범으로 고치는 것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재범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범위의 명확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문장을 파악하여 이해하면 문제될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제5조의5에서 표제어에서 이미 재범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IV.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5條의5 (強盜傷害등 再犯者의 加重處罰) 刑法 第337條·第339條의 罪 또는 그 未遂罪로 刑을 받아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를 받은 후 3年내에 다시 이들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本條新設 1980.12.18]

표제어에서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에서 재범자이라고 하는 관형격조사를 사용하는 법령의 관행은 일본식 법문을 번역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하지 말고 “강도상해등 재범자를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하고,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第5條의8 (團體등의 組織) 他人의 財物을 竊取할 目的으로 團體 또는 集團을 構成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首魁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幹部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3. 加入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本條新設 1980.12.18] [제5조의7에서 이동<1990.12.31>]

1) 표제어에서 단체 등의 조직이라는 표현 또한 관형격조사를 사용한 일본식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단체 등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오래된 잘못된 법령의 관행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타인은 불필요한 한자어의 사용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3) 집단을 구성한 자는 구성이라는 한자어는 일상적으로도 잘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굳이 사용하려면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만들다”라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집단을 만든 자”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한자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4) “수괴”는 우두머리 혹은 두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판례에서도 이미 이러한 용어는 사용되고 있다.⁸⁷⁾

5)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로 된 문어체로 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관형격조사를 사용하는 일본식 문어체의 형태를 가진 법령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맞는 어법의 문장이 될 것이다.

第5條의9(報復犯罪의 加重處罰等) ①刑法 第250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가 자기 또는 他人의 刑事事件의 搜查 또는 裁判과 관련하여 告訴·告發 등 “搜查端緒의 제공”, 陳述, 證言 또는 資料提出에 대한 報復의 目的인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告訴·告發 등 搜查端緒의 제공, 陳述, 證言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告訴·告發을 取消하게 하거나 虛偽의 陳述·證言·資料提出을 하게 할 目的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刑法 第257條第1項·第260條第1項·第276條第1項 또는 第283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가 第1項의 目的인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③第2項의 罪중 刑法 第257條第1項·第260條第1項 또는 第276條第1項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致死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④자기 또는 他人의 刑事事件의 搜查 또는 裁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者 또는 그 親族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面談을 強要하거나 威力을 보인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0.12.31]

1)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은 “보복범죄를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하며,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이 중간 간부로부터 지휘·통솔을 받음으로써 실제 두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고, 설사 두목을 알고 있다 하여도 조직의 생리상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IV.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2) 수사단서의 제공은 관형격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목적격조사를 사용하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수사단서를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는 표현이다.

3) “報復의 目的인 때에” 역시 관형격조사인 의를 남발한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법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복을 목적으로 한 때”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4) “치사한 때에는”은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이를 과실로 사망하게 한때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때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 될 것이다.

5) 타인은 “다른 사람”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6) 위력은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第6條 (關稅法違反行爲의 加重處罰) 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輸出 또는 輸入한 物品의 價額(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千萬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物品價額이 1千萬원이상 5千萬원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輸入한 物品原價가 5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輸入한 物品原價가 2億원이상 5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로서 輸出 또는 返送한 物品原價가 2億원이상인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逋脫·減免·免脫 또는 還給받은 稅額이 1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逋脫·減免·免脫 또는 還給받은 稅額이 2千萬원이상 1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輸入한 物品原價가 5億원이상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2. 輸入한 物品原價가 2億원이상 5億원미만인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⑥ 第1項 내지 第5項의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相當하는 罰金を 併科한다.

1. 第1項의 경우에는 物品價額의 2倍이상 10倍이하
2. 第2項의 경우에는 輸入한 物品原價의 2倍
3. 第3項의 경우에는 輸出 또는 返送한 物品原價
4. 第4項의 경우에는 逋脫·減免·免脫 또는 還給받은 稅額의 2倍이상 10倍이하
5. 第5項의 경우에는 輸入한 物品原價

⑦ 관세법 제271조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第1項 내지 第6項의 예에 의한 그 正犯 또는 本罪에 준하여 處罰한다.

⑧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常習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全文改正 1997.8.22]

1)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로 된 문어체로 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관형격조사를 사용하는 일본식 문어체의 형태를 가진 법령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맞는 어법의 문장이 될 것이다.

2) “관세법 제269조 제3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로서”에서 자격격조사로서를 사용하는 것이 문어체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자가...”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3) 환급받은에서 환급은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반인은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한자어이다. 한글화한다면 사용되지 않아도 좋을 한자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환급받은”을 풀어서 ‘되돌려 받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된다고 생각된다.

4) “第1項 내지 第6項의 예에 의한 그 正犯 또는 本罪에 준하여 處罰한다”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서 내지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따라서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IV.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표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표현인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를 따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될 것이다.

5) “구성하거나”는 “만들거나”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6) 제8항의 어순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습으로는 행위자적인 요소이므로 앞에 둘 것이 아니라 “...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 문장이라 할 것이다.

第7條（關係公務員의 武器使用）關稅法違反事犯을 團束할 權限있는 公務員은 海上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停止命令을 받고 逃避하는 경우에 이를 制止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銃器를 사용할 수 있다.

1) 도피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지만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고, 따라서 도피를 도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에서 시제를 고치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제를 고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第8條（租稅逋脫의 加重處罰）①租稅犯處罰法 第9條第1項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逋脫하거나 還給받은 稅額 또는 徵收하지 아니하거나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이하 “逋脫稅額等”이라 한다）이 年間 5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년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逋脫稅額等이 年間 2億원이상 5億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는 그 逋脫稅額等の 2倍이상 5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を 併科한다.

1)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로 된 문어체로 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관형격조사를 사용하는

IV.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일본식 문어체의 형태를 가진 법령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맞는 어법의 문장이 될 것이다.

2) 환급은 “되돌려 받은”으로 고치는 것이 한자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취지에 맞다고 할 것이다.

第9條 (山林法 違反行爲의 加重處罰) ①山林法 第116條·第118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林産物의 原産地價額이 1千萬元이상이거나 山林毀損面積이 5萬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林産物의 原産地價額이 100萬元이상 1千萬元미만이거나 山林毀損面積이 5千제곱미터이상 5萬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山林法 第117條·第119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全文改正 1980.12.18]

1) 표제어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산림법 위반행위를 가중처벌”이라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다음의 구분에 따라”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로 된 문어체로 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관형격조사를 사용하는 일본식 문어체의 형태를 가진 법령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맞는 어법의 문장이 될 것이다.

第10條 (通貨僞造의 加重處罰) 刑法 第207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통화위조의 가중처벌이라는 표제어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고치는 것이 일본식 법령의 문장에서 탈피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통화위조를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IV.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11條 (麻藥事犯의 加重處罰) ①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 第58條중 麻藥과 관련된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②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 第59條·第60條중 麻藥과 관련된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所持·栽培·사용등을 행한 麻藥의 價額(이하 이 條에서 “價額”이라 한다)이 500萬원이상인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價額이 50萬원이상 500萬원未滿인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全文改正 1980.12.18]

1) 표제어를 “마약사범을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의 구분에 따라”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로 된 문어체로 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관형격조사를 사용하는 일본식 문어체의 형태를 가진 법령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맞는 어법의 문장이 될 것이다.

第12條 (外國人을 위한 脫法行爲) 外國人에 의한 取得이 금지 또는 制限된 財産權을 外國人을 위하여 外國人의 資金으로 取得한 者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財産權의 價額이 1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財産權의 價額이 1億원미만인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1) “外國人에 의한 取得이 금지”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이 금지”라고 고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2) “다음의 구분에 따라”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로 된 문어체로 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관형격조사를 사용하는 일본식 문어체의 형태를 가진 법령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맞는 어법의 문장이 될 것이다.

第14條（誣告罪）이 法에 規定된 罪에 대하여 刑法 第156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는 무고⁸⁸⁾죄를 범한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된다.

第15條（特殊職務遺棄）犯罪搜查의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를 認知하고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인지하고’는 한자어를 사용하여야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알면서도”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고 이해하기도 쉽다고 생각된다.

第16條（訴追에 관한 特例）第6條 및 第8條의 罪에 대한 公訴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要하지 아니한다.

“요하지 아니한다”는 문어체 문장으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88) 무고는 1995년 일본형법 개정에서 허위고소라고 바꾸었다. 무고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말이며, ‘誣’라는 한자는 어렵지만, 무고의 의미는 제대로 통용되고 있다. 또한 본문에 등장하지 않으므로 이를 둘러싼 해석론이 전개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정완외 공저, 전개서, 49면 참조). 그러나 무고는 일상적이지 못하므로 일반인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법령이 시민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적절한 법률용어를 찾는 연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V.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1條 (目的) 이 법은 사람의 生命·身體, 上水源 또는 自然生態系등에 有害한 環境汚染 또는 環境毀損을 초래하는 행위를 加重處罰하고, 그에 대한 行政處分을 強化함으로써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는 문어체 문장으로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쳐 일반인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마.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
 - 다. 廢棄物管理法 第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場廢棄物을 버리거나 埋立하는 행위
 - 아.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毒物을 관리함으로써 有毒物을 排出·漏出하는 행위
 - 자. 악취방지법 제15조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
 - 차. 大氣環境保全法 第8條 또는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
 - 마. 土壤環境保全法 제2조제4호의 規定에 의한 特定토양오염유발시설
4. “營業”이라 함은 다음 각目の 1에 해당하는 業을 말한다.
- 가. 水質環境保全法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
 - 나.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
 - 다. 廢棄物管理法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
 - 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등 關聯營業

V.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다. 體育施設の 설치·이용에 관한法律 第1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골프場業 및 스키場業

바.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숙박업

아. 觀光振興法 第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宿泊業

자. 骨材採取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業

1)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⁸⁹⁾·糞尿⁹⁰⁾ 및 畜産廢水”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한 일본식문장이라 할 것이다.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지만, 번역문의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제3호에서 규정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2) “내지”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이 또한 일본식 한자어에서 빌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 “부터”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이 될 것이다.

3) 매립은 “깎거나 낮은 땅을 메워 돋우는 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다 파서 묻는다는 의미가 더 강하므로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파묻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4) “有毒物을 관리함으로써 有毒物을 排出·漏出하는 행위”에서 문어체 문장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어순을 바꾸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다고 할 것이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유독물을” 따라서 “유독물을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관리하여 배출·누출하는...”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5) “악취방지법 제15조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의 문장 또한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로 되어 있어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악취

89) “오수”는 오염되거나 더럽혀진 물을 말하는데 오수라는 한자어 대신 “더러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면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자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권위적이라 할 것이다.

90) 분노 또한 한자어로 사용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된다. “똥오줌”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경박해 보일까?

방지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도 쉽다고 생각된다.

6) “土壤環境保全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도 관형격조사를 빼고 우리식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오염유발시설”이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7) “水質環境保全法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은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폐수처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우리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면서, 일본식 번역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8)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은 “유해화학물관리법 제15조에 규정한 유해물영업 및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면서 우리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다.

9) “廢棄物管理法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규정한(된)...”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10)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등 關聯營業”은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가 아닌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더러운 물,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분뇨등 관련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1)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골프場業 및 스키場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되고 일상적인 표현이 된다고 할 것이다.

12)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식품접객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 표현에 맞는 문장이 된다.

V.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숙박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

14) “觀光振興法 第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宿泊業”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관광숙박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번역문의 형태를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된다.

15) “骨材採取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業”은 “골재채취업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골재채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법령의 표현이 사실상의 관행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된다고 생각된다.

第2條 (定義) 5. “不法排出施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말한다.

가. 第3號 各目的 法律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申告를 하여야 하는 排出施設로서 許可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排出施設

나. 第3號 各目的 法律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이 取消되거나(許可 또는 승인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閉鎖命令을 받은 후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排出施設

다. 第4號 各目的 法律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

라. 第4號 各目的 法律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許可가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閉鎖命令을 받은 후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

마. 法律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된 地域에 設置된 排出施設 또는 營業이 금지된 地域에서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

바. 大氣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第2號, 水質環境保護法 第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 또는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8條第1項第1號·第2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

6. “事業者”라 함은 排出施設 또는 不法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또는 營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7. “環境保護地域”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地域·區域 또는 島嶼를 말한다.

가.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特別對策地域
 나. 自然環境保全法 第2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地域, 同法 第2條第13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留保地域,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臨時生態系保全地域 및 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市·道生態系保全地域
 다. 獨島等島嶼地域의 生態系保全에 관한 特別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特定島嶼
 라. 自然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公園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公園保護區域
 마. 水道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公告된 上水源保護區域
 바. 濕地保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濕地保護地域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아.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水邊區域

1) “第3號 各目的 法律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申告를 하여야 하는 排出施設로서 許可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排出施設”이라고 한 제5호의 규정에서 불필요한 문어체문장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쳐서 이해하기 쉽고 권위적이지 않게 하면서, 번역문의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문장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3호 각목의 법률에 따라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가 필요한 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고 우리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다. 그리고 법령의 문어체적인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 권위적 법령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2) 본조 제5호 나호에서 “第3號 各目的 法律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이 取消되거나(許可 또는 승인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閉鎖命을 받은 후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排出施設”이라는 표현도 문어체적이어서 일반적인 어법에 맞지 않다. “...법률에 따라서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 또

V.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는 승인...배출하는 배출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3) 다호에서 “第4號 各目的 法律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⁹¹⁾ 施設物”은 “제4호 각목의 법률에 따라서 허가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본다.

4) 라호는 “第4號 各目的 法律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許可가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閉鎖命令을 받은 후 營業을 영위⁹²⁾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은 문어체 문장을 고쳐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제4호 각목의 법률에서 허가가 취소되거나...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5) 마호에서 “法律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된 地域에 設置된 排出施設 또는 營業이 금지된 地域에서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은 전체적인 문어체를 버리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법률에서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설치된...금지된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계속하는(혹은 영업행위를 하는) 건물 그 이외의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6) 바호에서 “大氣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第2號,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2항 각호의 1 또는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8條第1項第1號·第2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은 “대기...제2호에서 규정된(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7)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위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위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위적인 법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91) 기타는 그 이외에 그 밖에 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한글화에도 맞다고 할 것이다.

92) 영위는 한자어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인은 어렵다. 그러므로 “영업을 계속하는”으로 고치는 것이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영업을 계속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8) 제7호에서 도서는 우리 법령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고 도서라는 한자어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냥 “섬”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9) 본조의 가호에서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特別對策地域”은 관형격조사를 남발한 일본식 문장이 아닌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예를 들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규정한(된)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9) 나호의 “自然環境保全法 第2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地域, 同法 第2條第13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留保地域,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臨時生態系保全地域 및 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市·道生態系保全地域”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한 생태계보전지역...동법...제13호에 규정된 자연유보지역, 동법(같은 법) 제23조에 규정한 지정·고시된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30조에 규정한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계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벗어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10) 다호에서 “獨島等島嶼地域の生態系保全에관한特別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特定島嶼⁹³⁾” 독도 등 섬지역의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규정된 지정·고시된 특정섬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11) 라호에서 “自然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公園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公園保護區域”은 “자연공원법 제...호에 규정한 자연공원 및 같은 법 제25조에 규정한 지정·고시된 공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이라고 할 것이다.

93) 도서가 섬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섬 또는 군도 등을 포괄하고 있기는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V.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2) 마호에서 “水道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公告된 上水源保護區域”은 “수도법 제5조에서 규정한 지정·고시된 상수원보호구역”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어법의 문장이라 할 것이다.

13) 바호에서 “濕地保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濕地保護地域” “濕地”는 사전적 의미는 늪을 말하는데, 습지를 한자어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한글로 사용되어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습지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문장도 전체적으로 우리 어법에 맞게 일본식의 문장을 고치는 것이 일반인에게 쉬운 표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규정된 지정·고시된 습지보호지역”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14) 사호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규정한 지정된 야생동...및 같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지정 시도...보호구역”이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인 어법에 맞는 문장이라고 할 것이다.

15)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水邊區域”은 한강수계...법률 제4조에서 규정된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을 말한다.

第3條 (汚染物質 不法排出의 加重處罰) ①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함으로써 公衆의 生命 또는 身體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上水源汚染을 초래하여 公衆의 食水使用에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③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한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거나 土砂를 排出한 者로서 第3號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상 7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1. 農業·畜産業·林業 또는 園藝業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土地를 당해用途로 이용할 수 없게 한 者
 2. 바다·河川·湖沼 또는 地下水를 別表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汚染시킨 者
 3. 魚貝類를 別表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集團斃死에 이르게 한 者

1) 표제어에서 관형격조사를 사용하는 형태의 문장도 관행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또한 일본식 표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오염물질 불법배출을 가중처벌”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배출함으로써”는 문어체 문장으로 법령의 권위적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표현인 “배출하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을 생각된다.

3) “치상”은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이다. 따라서 “상해에 이르게한 때”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4) “불법배출한 자로서”는 불필요한 문어체 문장으로 법령을 권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불법배출한 자가”라고 하면 될 것이다.

5) “토사”는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꼭 사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그 의미를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흙과 모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6) “湖沼”는 호수와 늪지를 말하는 한자어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이다. 따라서 이를 풀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호소를” 호수와 늪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법령의 간결성도 해치지 않는다고 본다. 더욱이 법령의 간결성이 일반인이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라 본다.

7) 어패류는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한글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생선과 조개류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더 쉽다고 본다.

8) “집단폐사”는 문장의 문맥에서 비추어 사용하지 않아도 좋을 한자어이다. 그리고 일반인이 그 한자를 읽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일정규모 이상을 죽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된다.

V.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4條 (環境保護地域 汚染行爲등의 加重處罰) ①環境保護地域에서 第3條第1項 내지 第3項의 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는 해당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할 수 있다.
②環境保護地域에서 自然環境保全法 第20條第1項第2號(同法 第28條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獨島等島嶼地域의 生態系保全에 관한 特別法 第8條, 自然公園法 第23條(公園區域중 自然保存地區 및 自然環境地區의 경우에 한한다), 濕地保全法 第13條第1項第1號 또는 水道法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土地를 300제곱미터 이상 形質變更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③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하거나 第2項의 罪를 범하여 環境保護地域을 그 設定 또는 指定의 目的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1) 표제어 “오염행위등의 가중처벌”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을 벗어나기 위해 표제어도 “오염행위등을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2) “내지”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다.

3) “자에 대하여는” 문어체적이면서 번역문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범한 자는(혹은 자에게)”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사용하는 표현이라 생각된다.

4) 도서지역은 섬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서를 한자어로 표기할 경우 일반인은 더욱 어렵다.

第5條 (過失犯) ①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3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3條第2項 또는 第4條第3項의 罪를 범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億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3條第3項의 罪를 범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V.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 본조의 경우에 어순을 바꾸는 것이 법령을 간결하게 만들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3조 제1항의 죄를 업무상...중대한 과실로 범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2) 제2항의 경우에도 어순을 바꾸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제3조 제2항 또는 제4조 제3항의 죄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한 자는...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3) 제3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3조 제3항의 죄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한 자는 3년...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올바른 어법의 문장이 된다고 생각된다.

제 6 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04.2.9]

1) 표제어에 관형격조사를 사용한 것을 고치는 것이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을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2) “내지”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제68조 제1호부터 제3호 또는...”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한자어식 표현을 고칠 수 있으면 가능한 고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第 7 條 (廢棄物不法處理의 加重處罰) 團體 또는 集團이 營利를 目的으로 廢棄物 管理法 第58條의2의 罪를 범한 자는 2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하고 廢棄物의 投棄 또는 埋立으로 인하여 취득한 價額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相當 하는 罰金을 併科한다.

V.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 표제어에서 폐기물불법처리의 가중처벌이라고 하여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한 것은 아니다. 다만 법령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의 문장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폐기물⁹⁴⁾불법처리를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일반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2) 본조의 경우 목적범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목적을 앞으로 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번역문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폐기물관리법 第58條의2의 罪를 단체 또는 집단이 營利를 目的으로 범한 者는...2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하고”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에 맞는 어법이라고 본다.

3) “투기”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투기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지 말고 버린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투기라는 한자어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법령의 권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4) 매립은 파서 묻는 것을 말하는데 매립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하고 법령의 간결성도 해치지 않는다면 우리 말로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권위적인 법령을 일반인의 도구로 돌려주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립이라는 한자어가 어렵지는 않지만 그리고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표현이지만 묻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5) 취득한은 한자어식 표현 또한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얻은”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을 버리거나 파묻어 얻은 가액의...”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94) “폐기물”은 waste를 번역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폐기물이란 버려지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다르게 쓰일 뿐이라고 생각되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을 사용하는 태도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한다.

第8條 (累犯의 加重) 第3條 내지 第5條 또는 第7條의 罪로 禁錮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3年내에 第3條第1項, 第4條第3項 또는 第7條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이 경우 第7條의 罪를 범한 者는 廢棄物의 投棄 또는 埋立으로 인하여 취득한 價額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相當하는 罰金을 併科한다.

1) 누범은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범⁹⁵⁾”으로 고치는 것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2) 관형격조사 의를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따라서 표제어를 “누범을 가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다고 본다.

3) “내지”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第3條부터 第5條...”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한자어식 표현을 고칠 수 있으면 가능한 고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투기”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투기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지 말고 버린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투기라는 한자어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법령의 권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5) 매립은 파서 묻는 것을 말하는데 매립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하고 법령의 간결성도 해치지 않는다면 우리 말로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권위적인 법령을 일반인의 도구로 돌려주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립이라는 한자어가 어렵지는 않지만 그리고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표현이지만 묻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6) 취득한은 한자어식 표현 또한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것은 아니고 따라서 “얻은”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을 버리거나 파묻어 얻은 가액의....”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95) 물론 재범과 누범이 엄격하게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부연설명을 하는 문장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V.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9條 (命令不履行者에 대한 處罰等) ①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撤去命令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②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撤去命令을 위반한 者 또는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標識板을 제거·훼손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한 번역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어법상 어색하고 어려운 문장이 된다. 따라서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撤去命令을 위반한 者”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가 아닌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

3)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은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설치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

第1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條 내지 第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1) “기타”는 “그 밖에” 혹은 “그 이외에”라고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업무에 관하여”는 업무와 관련하여 라고 하든지 업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3) “내지”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第5條부터 第7條...”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한자어식 표현을 고칠 수 있으면 가능한 고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第11條 (推定) 汚染物質을 사람의 生命·身體, 上水源 또는 自然生態系등(이하 “生命·身體등”이라 한다)에 위험(第3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不法排出한 事業者가 있는 경우 그 物質의 不法排出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地域안에서 同種의 物質에 의하여 生命·身體등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不法排出과 발생한 위험 사이에 상당한 蓋然性이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 事業者가 不法排出한 物質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推定한다.

1) “그 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는 관형격조사를 사용한 일본식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일본식문장구조를 고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 물질을 불법 배출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동종의 물질로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고...”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은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물질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3) “추정”은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이를 특별히 다른 용어로 고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의미가 일반인은 생소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조에서 표제어는 그대로 두어도 법문에서는 추정은 법령에서 또다른 표현인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여 일반인도 조금은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법령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第12條 (課徵金) ①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이하 “特定汚染物質”이라 한다)을 不法排出(第2條第2號 各目 내지 各目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事業者에 대하여 不法排出利益(不法排出한 때부터 摘發된 때까지 特定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함으로써 支出하지 아니하게 된 當해 特定汚染物質의 處理費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과 特定汚染物質의 제거 및 原狀回復에 소요되는 費用(이하 “淨化費用”이라 한다)을 課徵金으로 賦課·徵收한다.

V.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法排出利益을 算定함에 있어 不法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한 날부터 不法排出이 摘發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特定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한 것으로 推定한다.
-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を 賦課함에 있어서 水質環境保全法 第19條, 大氣環境保全法 第19條 또는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금이 賦課된 경우에는 不法排出한 때부터 摘發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排出賦課金の 금액을 課徵金에서 減額한다.
- ④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罰금이 併科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淨化費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위반횟수, 特定汚染物質의 종류 및 不法排出期間등을 고려하여 算定하되, 구체적인 算定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⑥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の 賦課處分을 받은 자가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 ⑧環境部長官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課徵金の 賦課·徵收에 관한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徵收된 課徵金の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

1) “事業者에 대하여” 불필요한 문어체이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에게는”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2) 당해는 해당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3) “特定汚染物質의 제거”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법령상 일본식 문장의 관행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오염물질을 제거”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 될 것이다.

4) 제2항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은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고,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1항에서 규정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훨씬 쉽고, 우리 어법에도 맞다고 생각된다.

5) “摘發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는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날로부터 적발된 때까지는 운영한 날로부터 적발된 때까지 라고 하면 그 의미속에 기간의 의미가 이미 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굳이 기간에 대하여 라는 표현을 중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불필요하게 의미를 중복하여 우리 어법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법문의 간결성도 침해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문장을 순화하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어법에도 맞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날부터 불법배출이 적발된 때까지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6) “추정한다”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법률용어이다. 추정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법령의 표제어 등에서는 추정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법문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추정한다고 하여야만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거나 법령의 간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추정은 다른 법령에서 ‘볼 수 있다 혹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므로 “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쉽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법령을 권위주의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라 본다.

7) 제4항에서 “第7條의 規定에 의한”를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7조에서 규정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8)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淨化費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6)”는 표현은 법문을 불필요하게 번잡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제1항의 규정을 정화비용의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96) 법령에서 이처럼 분명하지 않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식의 표현 또한 일본식이 라고 할 것이다. 이 또한 청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V.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이를 문장을 분리하지 말고 합하여 간결하게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고 일상적이어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정화비용을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9) 제5항의 경우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어법에 맞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된다.

10)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の 賦課處分을 받은 者가”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과징금부가처분을 받은 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11)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은 불필요한 문어체문장으로 법령이 권위적인 면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이 간결하고 일상적이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12) 제7항의 규정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항에서 규정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우리 어법에 맞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13)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는 “제19조에서 규정한(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第13條 (代執行등) ①環境部長官은 不法排出施設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당해施設의 사용중지·撤去 또는 閉鎖를 명할 수 있다.

②不法排出施設이 第2條第4號 바目 내지 아目的 規定에 의한 營業을 영위하는 施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不法排出施設이 다음 各號의 1의 地域에 所在하는 경우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1. 環境保護地域

2. 湖沼水質管理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湖沼水質保全區域

3. 河川(河川法 第2條第1號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과 小河川⁹⁷⁾整備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을 말한다)·湖沼(湖沼水質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湖沼를 말한다)·바다(水路業務法 第5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海岸線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境界로부터 直線距離 500m 이내인 地域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法排出施設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撤去命令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하고 그 費用을 所有者 또는 占有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法排出施設에 대한 撤去命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不法排出施設 또는 그 事業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標識板을 設置하여야 한다.

1) “당해시설”은 “해당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어법에 맞다. “당해”라는 표현은 한자어를 일상적인 용어와 달리 뒤집어 사용함으로써 권위적인 이미지를 가지려는 법령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된다.

2) “당해시설의 사용중지”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식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시설을 사용중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표현이라 생각된다.

3) “所在하는”은 소재 한다는 것은 장소나 지역에 있다는 것으로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표현으로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위적인 법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고 쉽다고 생각된다.

4) “호소”는 호수와 늪을 말하는 것인데 호소는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어법 상으로는 오히려 “소호”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된다고 생각된다. 호소는 관행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한자어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호소보다는 소호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5) “第1項의 規定에 의한”은 관형격조사를 남발하고 있고,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1항에서 규정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훨씬 쉽고, 우리 어법에도 맞다고 생각된다.

97) 하천이나 소하천은 강이나 시내를 말하는 것의 한자어이다. 법령이 하천법 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또한 한자어를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은 아닐까? 강이나 시내 혹은 개울물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V.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14條 (行政處分效果의 承繼) 事業者가 不法排出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併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事業者에 대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行政處分의 效果는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새로이 設立되는 法人에 承繼된다.

1) “行政處分效果의 承繼”에서 “행정처분효과를 승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

2) “승계” 일상적으로는 ‘계승’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승계는 어려운 한자어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음”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어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양도”는 사전적 의미가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양도라는 한자어는 국어사전에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한자어이고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양도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하여야할 필요가 없고 이를 우리말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넘겨주거나 사망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第15條 (賞金)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發覺전에 搜查機關 또는 環境部長官, 地方環境官署의 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통보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1) “통보한 者에 대하여는”은 통보는 “통지하여 보고한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이다. 이는 반드시 한자어를 사용하여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법령의 권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알린 자에게는 혹은 알려준 자에게는”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발각”은 그 의미가 “숨겼던 일을 드러내거나 알아냄”을 말하는 것으로 한자어로 사용되면 대단히 일반인의 입장에서서는 어렵다. 그러므로 “드러나기 전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第16條（事業場의 出入등）①環境部長官은 第12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을 하기 위하여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不法排出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汚染物質을 採取하거나 關係書類·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染物質을 採取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에 그 汚染度檢査를 의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표제어에 “사업장의 출입 등”은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 어법에 맞지 않고, 일본식 표제어를 관행적으로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 출입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

2) “第12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은 우리 어법에 맞고 일반인이 알기쉽게 고치는 것이 좋다. 따라서 “第12條 또는 第13條에서 규정한 혹은...규정된”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하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법령을 문어체로 표현하는 것이 권위적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일반인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관계공무원에게”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법령이 덜 권위적이라고 생각된다.

4) “출입하여”는 들고 나는 것을 말하는데 본문에서 의미상으로는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꼭 출입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석상의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말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등에 들어가...”라고 하면 될 것이다.

5) 채취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반인이 그 한자어를 읽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는 “자연물을 베거나 캐거나 뜯거나 줍거나 따서 거두어들임, 혹은 연구나 조사 등을 위하여 표본이나 자료가 될 것을 찾거나 골라서 거두어 채집”을 의미한다. “수집”이라고 하는

V.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6)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으로 고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일상적인 표현이라 생각된다.

7) “出入·檢査”에서 공무원이 제1항에서 규정한 오염물질을 채취 검사하는 공무원이므로 출입,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 검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第17條 (關係機關의 協助) 環境部長官은 關係機關의 長에게 이 法에 의한 行政處分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關係機關의 協助”에서 협조는 일상적으로도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본 글의 취지가 가능하다면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때에도 협조는 “남이 하는 일을 거들어 줌, 도와줌”을 말하는 한자어로 “관계기관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이 法에 의한 行政處分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에서 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쉽고 일상적인 문장으로 어법에 맞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 법에 정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3) “응하여야 한다”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식 표현이다. 우리말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응해야 한다는 한자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한자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법령의 권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되고 한글화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가까이할 수 있는 법령이 될 것이다.

第18條 (資料의 電算管理) 環境部長官은 이 法の 規定에 의한 犯罪의 團束 및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電算管理할 수 있다.

1) 표제어에서 일본식 표현인 자료의 라는 관형격조사를 빼고 “자료를 전산관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고 생각된다.

2) “法の 規定에 의한 犯罪의...”는 또한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은 우리 어법에 맞지 않고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단속...”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第19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權限의 위임”은 “권한을 위임”이라고 하여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일본식 법령문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된다.

2)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은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하여 어순도 고치고 조사도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본다.

V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性暴力犯罪을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그 節次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人權伸張과 健全한 社會秩序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1) “社會秩序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에서 문장이 번역문의 형태를 가지고 문어체적이어서 일상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의 구조를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문자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문장을 전체적으로 순화하고 쉽게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된다고 본다.

2) “규정함으로써”는 구어체적인 표현이 “규정하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다.

3) “인권 신장”에서 신장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물체의 크기나 세력 따위가 늘어나고 펼쳐짐, 또는 늘이고 펼침”을 말하는 한자어이다. 법령이나 일상생활에서 관행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한자식 표현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한자식 표현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한글화할 수 있다면 그 적절한 용어를 찾아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인권을 늘이고 펼침이라는 것은 우리 어법상 어색한 면이 있다고 본다.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 인권의 보장을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장이라는 한자식 표현과는 꼭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인권을 높이고”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다고 생각된다.

VI.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性暴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

1. 刑法 第22章 性風俗에 관한 罪중 第242條(淫行媒介⁹⁸)·第243條(淫書等の 頒布等)·第244條(淫書等の 製造等) 및 第245條(公然淫亂)의 罪

5. 이 法 第5條(特殊強盜強姦等) 내지 第14條의2(카메라등利用撮影)의 罪

②第1項 各號의 犯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罪는 性暴力犯罪로 본다.

1) 본조 제1항의 문장은 “이 法에서 “性暴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라고 하여 불필요하게 문어체를 문장을 사용하여 일반인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를 일반인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쉬운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법령을 일반인에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호의 1에...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2) “추업”은 “추잡하고 천한 생업”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매음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추업은 창기나 작부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추업에 해당한다⁹⁹). 그런데 추업의 사전적 의미는 추잡하고 천한 생업이라고 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음란한 짓과 연관된 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추업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달리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일상적인 용어이면서 그 범위가 분명한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98) “음행매개”는 음행이란 음란한 짓이나 행실을 말하고 매개는 사이에 들어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본조에서 보는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다. 음행매개라는 표제어를 고칠 수 없다면 본조문에서 이를 풀어 사용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예를 들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한..”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99) 이재상, 형법각론, 2005, 136면 참조.

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¹⁰⁰⁾

3) “이 法 第5條(特殊強盜強姦 등) 내지¹⁰¹⁾ 第14條의2(카메라 등 利用 撮影)의 罪”에서 내지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법 제5조부터 제14조의2까지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표현이 된다.

4) “第1項 各號의 犯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罪는 性暴力犯罪로 본다”에서 문장을 전체적으로 순화하고 어순을 바꾸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그리고 번역문의 형태를 벗어날 수 있다. “제1항 각호의 범죄가 다른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죄는...”이라고 하는 것이 더 쉽고 일반적인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라 생각된다.

第3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犯罪를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有害環境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필요한 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靑少年에 대한 性教育 및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教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에 대한 性教育 및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教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第2項의 規定에 의한”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라는 표현은 법령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이다. 우리 어법에는 맞지 않으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2항에서 규정한 혹은 제2항에서 규정된...”으로 고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일반인이

100) 1992년 형법개정 법률안이 추업을 “매음 기타 추한 영업”으로 바꾼 예가 있다(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1992, 145면). 이에 대하여 매음을 넣지 않고 “추한 영업”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정완, 윤동호, 김정태, 공저, 전제서, 38면). 그러나 이러한 추한 영업은 추업을 직역한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101) 내지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쓰이어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거나, 사물의 이름 사이에 쓰이어 ‘또는’·‘혹은’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일반인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VI.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고 본다.

2)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教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에서 문장을 전체적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필요한 교육 필요한 사항으로 필요 한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우리 어법에도 어긋나고 어색한 문장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성폭력에 방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第4條 (被害者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를 고용하고 있는 者는 누구든지 性暴力犯罪와 관련하여 被害者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는 관형격조사를 사용한 표제어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우리 어법에 맞게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고 우리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다.

2) “기타 불이익”에서 기타는 법령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표현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 이외 혹은 그 밖의” 불이익이라고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第2章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節次에 관한 特例

第5條 (特殊强盜强姦등) ①刑法 第319條第1項(住居侵入), 第330條(夜間住居侵入竊盜), 第331條(特殊竊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0條 및 第331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 第297條(强姦) 내지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②刑法 第334條(特殊强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4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 第297條(强姦) 내지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1) “동범”은 같은 법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내지”는 사전적 의미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일반인은 이를 쉽게 구별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도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하는 것이 순화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第6條 (特殊強姦等) ①凶器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合同하여 刑法 第297條(強姦)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方法으로 刑法 第298條(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의 方法으로 刑法 第299條(準強姦, 準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例에 의한다.
 ④第1項의 方法으로 身體障礙로 항거불능인 狀態에 있음을 이용하여 女子를 姦淫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醜行한 者도 第1項 또는 第2項의 例에 의한다.

1) “휴대하고”의 뜻은 소지 혹은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소지할 필요는 없고 몸가까이 지니고 있으면 된다¹⁰²⁾.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여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표현이다. 특히 우리 법원은 이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라고 해석하여 자동차¹⁰³⁾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조의 경우에 특수폭행 또는 협박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보이거나 사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범죄이므로 그 의미를 풀어 사용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해석상의 문제도 남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조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¹⁰⁴⁾을 보이거나 사용하여”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장이 된다.¹⁰⁵⁾

102) 이재상, 형법각론, 271면 참조.

103)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104)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105) 박상기, 형법각론, 266면 참조.

V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2) “第1項의 방법으로 刑法 第298條(強制醜行)의 罪를”은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따라서 “형법 제298조의 죄를 제1항의 방법으로 범한 자는...”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3) 제3항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299조의 죄를 제1항의 방법으로 범한 자는...”으로 고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고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쉬운 문장이 된다.

4) “身體障礙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女子를”은 어순을 바꾸는 것이 우리어법에 맞는 문장이 되어 이해하기 쉽고, 문장도 간결하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여자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여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第7條 (親族關係에 의한 強姦 등) ①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7條(強姦)의 罪를 범한 때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8條(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③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9條(準強姦, 準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의 범위는 4寸이내의 血族과 2寸이내의 姻戚으로 한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은 事實상의 關係에 의한 親族을 포함한다.

1) 제7조의 표제어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인 자가 강간등을 행한 경우에 이를 처벌한다는 의미를 가진 법문이다. 따라서 ‘친족에 의한 강간 등’이라고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친족관계에 의한’ 이라고 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는 “친족이 혹은 친족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도 의미를 전달하거나 해석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3) “第1項 내지 第3項의”는 내지를 사용하지 않고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4)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親族을”은 “사실상의 친족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법령을 간결하게 하여 순화된 문장이 될 것이다.

第8條 (障礙人에 대한 姦淫등) 身體障礙 또는 精神上的의 障礙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女子를 姦淫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醜行한 者는 刑法 第297條 (強姦) 또는 第298條(強制醜行)에 정한 刑으로 處罰한다.

1) 제8조의 표제어에서 “障礙人에 대한 姦淫등”은 “장애인을 간음 등”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고 생각된다.

2)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은 신체장애라고 하면서 정신상의 장애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아니면 “신체 또는 정신장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 된다.

3)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는 불필요한 문어체문장으로 이를 간결하게 고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인 여자를...”이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4) “사람에 대하여 醜行한 者”은 문어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어체 문장의 법령은 권위적인 법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第8條의2 (13歲미만의 未成年者에 대한 強姦, 強制醜行등) ①13歲미만의 女子에 대하여 刑法 第297條(強姦)의 罪를 범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13歲미만의 사람에게 대하여 刑法 第298條(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13歲미만의 사람에게 대하여 刑法 第299條(準強姦, 準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④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13歲미만의 女子를 姦淫하거나 13歲미만의 사람에게 대하여 醜行을 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本條新設 1997.8.22]

V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 제8조의2 표제어는 “13歲미만의 未成年者에 대한 強姦, 強制醜行 등”을 번역문의 형태가 아닌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제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 문장이다.

2) 제1항의 경우에 “13歲미만의 女子에 대하여 刑法 第297條(強姦)의 罪를 범한 者...”는 어순을 바꾸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7조의 죄를 13세 미만의 여자에게 범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라 생각된다.

3) 같은 식으로 제2항 또한 “형법 제298조의 죄를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범한 자...”라고 하면 될 것이라 생각된다.

4) 제3항의 경우에도 “형법 제299조의 죄를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어법에도 맞다고 본다.

5) 제4항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어순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의 여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第9條 (強姦 등 傷害·致傷) ①第5條第1項, 第6條 또는 第12條(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②第7條, 第8條 또는 第12條(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은 “그 사람”이라고 하여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10條 (强姦 등 殺人·致死) ①第5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5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 또는 刑法 第297條(强姦) 내지 第300條(未遂犯)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②第6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6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1) “刑法 第297條(强姦) 내지 第300條(未遂犯)의 罪를”의 경우에는 내지는 기간을 의미하거나 장소를 의미할 때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법령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일반인은 그러한 의미에 대하여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제297조부터 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제2항의 “내지” 또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제6조부터 8조까지의 죄를...”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第11條 (業務상 威力 등에 의한 醜行) ①業務·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醜行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法律에 의하여 拘禁된 사람을 監護하는 者가 그 사람을 醜行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표제어는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가 있는 자가 위력 등의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2) “기타 관계로 인하여”는 문어체 문장으로 어색하고 일상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제1항의 경우에는 업무상 혹은 고용 등 관계가 있는 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업무·고용 그 밖의 사유로”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될 것이다.

V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3) “자기의 감독 받는 사람에 대하여”에서 주어는 보호감독을 하는 자
신이므로 관형격조사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법에 맞게 문장을 고
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자기가 보호 감독하는 사람에게”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올바른 표현의 문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제2항의 문장 구조와 맞게 하는 측면도 있다.

第12條 (未遂犯) 第5條 내지 第10條 및 第14條의2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5條 내지 第10條”에서 내지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사
용되는 표현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
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5조에서부터 제10조”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본다.

第13條 (公衆密集場所에서의 醜行)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公衆이 밀집하
는 場所에서 사람을 醜行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법령에서 관
행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로 이를 꼭 공중, 밀집, 장소라는 한자어를 사
용하여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따라
서 이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혹은
많은 사람이 모인 곳 혹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고 하는 것이 법령의
한글화하려는 생각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2) 기타는 해석상의 문제도 있고, 불필요한 한자어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따라서 “그 이외에, 그 밖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

3) “사람을 추행한 자는”에서 ‘사람은’을 생략하는 것이 법령을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된다.

第14條 (通信媒體利用淫亂)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性的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目的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性的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圖畫, 映像 또는 물건을 相對方에게 도달하게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통신매체”에서 매체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작용을 다른 곳으로 전하는 구실을 하는 물체”를 말하는데 통신매체는 일상적으로도 잘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통신 수단 혹은 통신도구”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으로 본다.

2) “성적욕망을 유발”에서 유발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한자어로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성적욕망을 일으키거나”로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한글화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3)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에서 기타라는 한자어를 빼고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수단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第14條의2 (카메라등 利用撮影)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機械裝置를 利用하여 性的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他人의 身體를 그 意思에 反하여 撮影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元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8.12.28]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에서는 불필요한 한자어를 남발하여 권위적인 법령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문장의 의미를 고려하여 “카메라와 같은 비슷한 기능을 갖춘”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2) “기계장치”라고 하지 않아도 카메라 등이 이미 기계장치이므로 “도구 또는 기계”라고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법령의 간결성

V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3) 유발은 불러일으키다, 혹은 그냥 일으키다 라고 하면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법령의 간경성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4) “타인의 신체”에서 타인은 불필요한 한자어이다. 물론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사용되어야만 할 한자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하면 될 것이다.

第16條 (保護觀察等) ①法院이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 刑의 宣告를 猶豫할 경우에는 1年동안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가 少年인 경우에는 반드시 保護觀察을 명하여야 한다.
②法院이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 刑의 執行을 猶豫할 경우에는 그 執行猶豫期間내에서 일정기간동안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併科할 수 있다. 다만,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가 少年인 경우에는 반드시 保護觀察·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하여야 한다.
③性暴力犯罪를 범한 者로서 刑의 執行중에 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동안 保護觀察을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許可한 行政官廳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保護觀察·社會奉仕 및 受講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保護觀察등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1) “法院이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에서 불필요한 문어체 문장을 버리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령도 간결 하면서 이해하기도 쉽고, 권위적이고 관행적인 문어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가 少年인 경우에는”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는 성폭력범죄자로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이면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고 법령의 간결성에도 맞는 문장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자가 소년이면...”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3)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로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의 자격격 조사를 사용하여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으로 보이지만 불필요한 문어체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번역문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자가...”라고 하는 것이 법령을 간결하게 하고 일반적이어서 이해하기도 쉽다고 생각된다.

第17條(保護監護) 第5條 내지 第10條 및 第12條의 罪는 社會保護法 第5條(保護監護)의 別表에 規定된 罪로 본다.

“第5條 내지 第10條”는 “제5조부터 제10조 및”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어서 이해가 쉽다고 생각된다.

第19條(告訴期間) ①性暴力犯罪중 親告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30條(告訴期間)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犯人을 알게 된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告訴하지 못한다. 다만, 告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起算한다.

②刑事訴訟法 第230條(告訴期間)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1) “경과하면”은 기간이 지나는 것을 말하는 한자어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한자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과하면은 지나면 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라고 생각된다.

2) “起算한다”는 셈을 계산한다는 의미로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지만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19조의 표제어에 고소기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기산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3)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는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문어체 문장으로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다. 따라서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될 것이다.

4) “준용한다”에서 준용은 주요 목적이 법령의 중복을 피하고 법문을 간소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VI.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고 있지만 문제점이 전혀 없지도 않다. 준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대로 좇아서 씬”으로 해석할 수 있어 실제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령에서 적용과 준용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는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第20條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の 準用) ①性暴力犯罪에 대한 處罰節次에는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第7條(證人에 대한 身邊安全措置)·第8條(出版物등으로부터의 被害者保護)·第9條(訴訟進行의 協議)·第12條(簡易公判節次의 決定) 및 第13條(判決宣告)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第5條·第6條·第9條·第10條 및 第12條(第5條·第6條·第9條 및 第10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는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第2條(適用範圍)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強力犯罪로 본다.

1)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の 準用”에서 표제어에 관형격조사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어법이다. 따라서 “특례법을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신변”은 몸 또는 몸주변을 말하는 것으로 한자어로 사용될 경우 일반인이 이해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신변을 한글로 사용할 경우 신기로운 변화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이미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지만 일본식 한자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일상적인 한자어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물론 신체와 신변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신체안전조치라고 하여도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일반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3) “...의 規定에 의한 特定強力犯罪로 본다”는 관형격조사를 남발한 일본식 문장이 아니라 우리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1항에서 규정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일반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第21條 (被害者の 身元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性暴力犯罪의 捜査 또는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關여하는 公務員은 被害者の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被害者를 特定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人的事項과 사진등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에 規定된 者는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 犯罪構成事實을 제외한 被害者の 사생활에 關한 비밀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원”은 그 사람의 출생이나 출신·경력·성행¹⁰⁶⁾ 따위에 관한 일을 말하는 것으로 신원보증등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고 신원보증인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원은 본문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상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 “性暴力犯罪의 捜査 또는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關여하는 公務員은”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고 본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關여한 공무원”이라고 하여 시제도 맞게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3) “被害者の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被害者를 特定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人的事項과 사진 등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이 인적사항이므로 이를 굳이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설명하고 기타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여 법령의 간결성을 해치고 있어 이를 간결하게 고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

106) 성행은 그 의미가 ‘성질과 행실’이라는 의미와 ‘매우 성하여 유행한다’는 뜻의 성행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일상적으로 구별이 어렵다. 형법해석론상 성행을 양형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범죄인의 전과나 범행 이전의 사회생활을 고려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김일수, 한국형법Ⅱ, 박영사, 2002, 631면). 이러한 의미로는 품성과 행실을 의미하는 품행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은 성행을 ‘품행’으로 하고 있다(정완/윤동호/김정태 공저, 형사법령용어의 순화와 체계적 통일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8면 참조).

V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이라고 하는 것이 법령의 간결성에도 부합하고 이해하기도 쉽다고 본다.

4) “性暴力犯罪의 訴追에”에서 관형격조사를 사용한 일본식 문장이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고 본다. 물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본식 문장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訴追”는 그 의미가 형사소송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법령에서 이미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사전적 의미와 법령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공소제기와 공소의 제기 유지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소추라는 표현보다 공소의 제기 소송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다고 본다.

제21조의2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수사기관은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1]

1) “영상물의...”에서 표제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형격조사를 빼고 “영상물을...”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2) “손상¹⁰⁷⁾”은 손해나 상처를 말하는 한자어로 명예의 경우 훼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손상이라고 한 것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격이나 명예를 다치게 혹은 명예를 떨어뜨리거나”라고 하면 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이 될 것이라 본다.

3) “정신상의 장애”는 정신장애라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본다.

4) “사물의 변별”에서 변별은 서로 다른 점을 구별하는 것으로 식별 또는 분별이라는 말로 사용된다. 그러나 법령에서 변별이라는 용어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인은 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변별이라고 하지 않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본다.

5) “미약”은 미미하고 약하다는 의미로 미약하다는 어근이다. 미약이라는 한자어는 국어사전에서도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따라서 미약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냥 “약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6)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에서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는...에 의하여는 무엇을 수단으로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인데 이 또한 일상적으로 문장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영상물 녹화장치를 이용하여...라고 하든지 아니면 영상물 녹화장치로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고 본다.

7)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불필요한 문어체 문장으로 법령을 권위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촬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도 쉽고 일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8) “동석하였던”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의미를 지닌 한자어로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반드시 한자어를 사용하여야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동석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함께 있던 혹은 함께 했던으로 고치면 될 것으로 본다.

107) 손상은 떨어지고 상한다는 의미의 한자어이다.

V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9)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문장 또한 일본의 번역문을 그대로 법령화 해놓은 우리 법령의 관행적인 모양이다. 그러므로 우리 어법에 맞게 시제와 조사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함께 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진술하여 그 성립이 진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도 쉽다고 생각되어 일상적이라 할 것이다.

10) “수사기관은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어순을 고쳐서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우리 어법에도 맞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第22條 (審理의 非公開) ①性暴力犯罪에 대한 審理는 그 被害者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決定으로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證人으로 召喚받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와 그 家族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證人訊問의 非公開를 신청할 수 있다.
③裁判長은 第2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許可與否 및 公開, 法廷외의 場所에서의 訊問등 證人의 訊問方式 및 場所에 관하여 決定할 수 있다.
④法院組織法 第57條(裁判의 公開)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1) “심리의 비공개”는 “심리를 비공개”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라 생각된다.

2) “性暴力犯罪에 대한 審理는”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어법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일본식 문장을 그대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이를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어법에도 맞아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고 본다.

3) “證人으로 召喚받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와 그 家族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證人訊問의 非公開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전체적으로 번역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문장을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증인으로 불려나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을 사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도 쉽다고 본다.

4) “第2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에서 “제2항의 신청이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간결성이나 우리 어법에도 맞고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제22조의2 (전문가의 의견조회) ①법원은 정신과 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결과에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1]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03.12.11>]

1) “진단소견”에서 소견이란 어떤 사물을 보고 살펴어 가지는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특히 소견이라고 하여야 할 이유는 있는 것인가? 이 또한 권위적인 생각의 산물이 아닌가한다. 그렇지 않아도 소견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되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표현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2)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결과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문어체 문장을 고쳐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견 조회한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

VI.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22條의3 (信賴關係에 있는 者등의 同席) ①法院은第5條 내지 第9條와 第11條 및 第12條(第10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의 犯罪의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는 경우에는 檢査,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申請에 의하여 被害者와 信賴關係에 있는 者를 同席하게 할 수 있다.

②搜查機關이 第1項의 被害者를 調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被害者가 지정하는 者를 同席하게 할 수 있다.

③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21조의2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때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7.8.22]

1) “信賴關係에 있는 者등의 同席”은 관형격조사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어법에 맞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과 동석”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 “第5條 내지 第9條”에서 내지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5조부터 제9조”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3) “調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被害者가 지정하는 者를 同席하게 할 수 있다”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바른 어법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령을 간결하게 하고 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고 본다.

4) “조사하는 때에는”은 시제를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조사할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22조의4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은 중계장치를 사용한 증인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2)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에서는 내지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반적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아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해석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부터 제5호의 규정에”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일 것이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제1항에서 규정한 증인신문을 위한 절차·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第22條의5 (申告義務) 18歲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敎育 또는 治療하는 施設의 責任者 및 關聯從事者는 자기의 보호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이 第5條 내지 第10條, 刑法 第301條(強姦등 傷害·致傷) 및 第301條의2(強姦등 殺人·致死)의 犯罪의 被害者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搜查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7.8.22]

1) “第5條 내지 第10條”에서 내지는 부터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2) “18歲미만의 사람을”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18세미만인 사람을 보호하거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다.

3) “...의 犯罪의”에서 둘 중에 한 관형격조사는 빼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고 본다.

第22條의6 (證據保全의 特例) ①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被害者가 公判期日에 出席하여 證言하는 것이 現저히 곤란한 事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疏明하여 당해 性暴力犯罪를 搜查하는 檢事에 대하여 刑事訴訟法 第184條(證據保全의請求와 그 節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保全의 請求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 21조의2제2항의 要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公판기일에 出席하여 證言하는 것이 現저히 곤란한 事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요청을 받은 檢事は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證據保全의 請求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7.8.22]

1) “疏明하여”에서 소명의 사전적 의미는 자동사로 변명하거나, 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을 법관으로 하여금 가지게 하거나 또는 그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한자어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체적인 문장에 비추어 적절하게 순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혹은 그 사유를 증거로 제출하여) 당해...”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刑事訴訟法 第184條(證據保全의請求와 그 節次)第1項의 規定에 의한”은 우리 어법에 맞게 일상적인 표현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혹은 규정된...”으로 하면 될 것이다.

3) “해당하는 경우에는”에서는 시제를 바꾸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 따라서 “해당할 경우에는 혹은 해당할 때에는”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4) “證據保全의 請求를 할 수 있다”는 관형격조사 “의”를 남발한 일본식 번역문을 순화하여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다고 본다.

第3章 性暴力被害相談所等

第23條 (相談所의 설치)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被害相談所(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相談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相談所의 設置基準과 申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令으로 정한다.

“상담소의 설치”는 법령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형격조사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우리어법에 맞게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상담소를 설치”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第24條 (相談所의 業務) 相談所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性暴力被害를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 응하는 일
 2. 性暴力被害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病院 또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는 일
 3. 加害者에 대한 告訴와 被害賠償請求등 司法處理節次에 관하여 大韓辯護士協會·大韓法律救助公團등 關係機關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性暴力犯罪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性暴力犯罪 및 性暴力被害에 관하여 調査·研究하는 일

1) “상담에 응하는 일”은 상담소에서 성폭력피해자가 상담하는 것을 응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응하는 일이란 응한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고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담하는 일” 이라고 하여도 이는 상담에 응하는 일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2) “性暴力被害로 인하여”는 “성폭력피해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본다.

3) “기타 사정으로”는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밖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加害者에 대한 告訴와 被害賠償請求등 司法處理節次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문장을 순화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가해자를 고소,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서...”라고 하는 것이 순화되고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V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25條 (保護施設의 설치)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 (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고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保護施設의 設置基準과 申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令으로 정한다.

1) “保護施設의 설치”는 관형격조사를 빼고 “보호시설을 설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고 본다.

2)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에서 기타는 그 밖의 그 이외의를 사용하여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第26條 (保護施設의 業務) 保護施設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第24條 各號의 일
2. 性暴力被害者를 一時保護하는 일
3. 性暴力被害者의 신체적·정신적 安定回復과 사회복지를 도우는 일
4. 기타 性暴力被害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1) “一時保護”는 잠시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시보호라는 표현보다는 임시보호 혹은 잠시보호라고 하는 것이 보다 순화된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물론 일시보호라고 하여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2) “安定回復”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것을 만하는 것으로 안정회복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여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령을 권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본다.

3) “性暴力被害者の...”는 관형격조사를 없애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고 본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에게...”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기타 性暴力被害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은 기타라는 한자어를 그 밖의 혹은 그 이외의 라고 고치고, 관형격조사를 없애고 하는 것

이 우리 어법에 맞다고 본다. 예를 들어 “그 밖의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순화되고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第27條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休止 또는 廢止) 第23條第2項 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女性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休止 또는 廢止”에서 관형격조사를 사용하여 표제어를 만드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일상적이어서 순화된 것이라 본다.

2) “휴지 또는 폐지”는 휴지는 하던 일을 그치는 것을 말하고 폐지는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없앤다는 말이다. 이를 보면 사전적으로는 휴지 속에 폐지가 포함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조에서 휴지나 폐지는 잠시 중단하거나 아주 없애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분명히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자어는 일상적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인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상담소나 상담보호시설을 그침(중지) 또는 없앴”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3) “규정에 의하여”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령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25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4) “保護施設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은 보호시설을 중지하거나 없앨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VI.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28條 (監督) ①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保護施設의 長으로 하여금”은 문어체문장으로 된 것은 번역문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간결하게 하여 문장을 우리 어법에 맞게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보호시설의 장에게...”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본다.

2) “당해”는 해당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당해”라는 표현은 한자어를 일상적인 용어와 달리 뒤집어 사용함으로써 권위적인 이미지를 가지려는 법령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된다.

3)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은 “관계공무원에게” 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적절하다고 본다.

4) “기타 서류”는 “그 밖의 서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5)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는 “제1항에서 규정된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아 순화된 문장이라고 본다.

第29條 (施設의 閉鎖等) 시장·군수·구청장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業務의 停止 또는 廢止를 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

1. 第23條第3項 또는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正當한 사유없이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1) “폐쇄”는 시설 내에 출입을 못하도록 입구를 막는 것을 말한다. 시

설을 폐쇄한다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반인은 이를 읽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시설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 적적할 것으로 본다.

2) “...제3項의 規定에 의한”은 번역문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법령의 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다. 물론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 어법에 맞게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3항에서 규정된(혹은 규정한)”으로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

3) “미달”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이지만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따라서 “설치기준에 못 미친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순화된 법령이라고 생각된다.

4)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는 전체적으로 문장을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1항에서 규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시제를 맞게 하여 “허위로 보고할 때,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라고 고치는 것이 시제를 맞게 하여 어법에 맞다고 본다.

第29條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廢止를 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7.12.13]

1)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는 일본식 번역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법령의 관행으로 우리 어법에 맞게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제29조에 규정된 혹은 제29조에서 규정한”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은 문어체 문장으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없앨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여 순화된 문장이 될 것이다.

VI.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30條 (經費의 보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3條第2項 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1)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순화된 문장이다.

2) “소요”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내키는 대로 슬슬 거닐며 다님, 왈자하고 떠들썩함, 또는 슬렁거리고 소란스러움, 필요로 함. 요구되는 바” 의미하는 것으로 소요라는 단어만으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자어를 한글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법령에서 소요된다는 표현은 많이 사용되지만 일상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전체 문장의 흐름을 보아 적절하게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치운영에 필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본다.

3) “경비”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냥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좀 순화된 표현이라고 본다.

4) “보조”는 도와준다는 의미의 한자어로 흔히 사용되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가능하면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본 논문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보조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다 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순화된 표현으로 본다.

5) 그러므로 표제의 경우에도 “경비의 보조”라고 하지 말고 “비용을 도움(줌)”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순화된 표현으로 본다.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면 어색함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

第31條 (秘密嚴守의 義務)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엄수는 엄격하게 지킨다는 의미의 한자어이다. 물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자어를 사용하여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행적으로 한자어를 법령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글화하려는 의도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관형격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어법에도 맞게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비밀을 지킬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본다.

第32條 (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아니면 性暴力被害相談所 ·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유사명칭”은 비슷한 이름을 말하는 한자어로 우리말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을 쉽게 고치려는 의도를 반영하여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비슷한 이름”이라고 하면 일반인인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쉬운 법령을 사용하려는 의도에도 맞다고 본다.

2) “이 법에 의한 상담소...”는 일본의 번역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 법에서 말하는 이 법에서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보다 쉬운 문장이라고 할 것이다.

3)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슷한 이름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쉬운 문장이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第33條 (醫療保護) ①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國·公立病院·保健所 또는 民間醫療施設을 性暴力被害者の 治療를 위한 專擔醫療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專擔醫療機關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醫療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性暴力被害者の 保健相談 및 指導
 2. 性暴力被害의 治療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治療

VI.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 “피해자의 治療를 위한”은 번역문의 형태를 그대로 법령상 사용하는 관행적인 것으로 이를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우리 어법에도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성폭력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으로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는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번역문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여 관행화 되어 있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방향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제1항에서 규정에 따라서...혹은 제1항에서 규정한...”이라고 하면 될 것이라 본다.

3) “기타 大統領令이...”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도 않아 해석상의 문제를 많이 남기기도 한다.¹⁰⁸⁾ 그러므로 “그 밖에(혹은 그 이외) 대통령령이 정하는...”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第34條 (權限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權限의 위임”은 관형격조사를 남발한 일본식 문장으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권한을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표현이어서 쉽고 생각된다.

108) 외국환관리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6-13호) 제6-15조의4 제2호 (나)목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한정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할 것인데,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유인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을 허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모법인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 등의 규제요건 및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규제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8. 6. 18. 선고 97도2231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은 어순을 바꾸고 관형격조사를 사용하지 않는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쉬운 문장이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 법에서 말하는 권한을 일부 시도지사...위임할 수 있다”

第4章 罰則

第3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營利를 目的으로 이 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한 者
2. 第21條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義務를 위반한 者
3.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閉鎖, 業務의 休止 또는 廢止命令을 받고도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계속 운영한 者

1) “각호의 1에”는 관형격조사를 습관적으로 넣어 사용하는 것이 일본 식문장을 번역한 탓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관형격조사를 빼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이 법에 의한”은 “이 법에서 말하는, 이 법에서 정한 혹은 이 법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는 표현이라고 본다.

3) “第21條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義務를 위반한 者”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우리 어법에 맞게 쉽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식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따라서 “제21조 또는 제31조에서 규정한...비밀을 지킬 의무를 어긴 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쉬워서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이라고 본다.

4)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閉鎖, 業務의 休止 또는 廢止命令을 받고...”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순화할 필요성이 크다. 불필요한 한자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법령의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법에 맞고 쉬운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제29조에 따른 시설을 없애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그만둘 것을 명령을 받고도...”라고 하면 일반인이 이

VI.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해하기 쉬운 것으로 본다.

第36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正當한 사유없이 第22조의5 또는 第2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者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者

2.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유를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은 번역문의 형태를 버리고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혹은 규정된...”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본다.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은 “제32조에 규정된 비슷한 이름을 못쓰게 하는 것을 어긴 자”라고 하면 쉽고 일상적이어서 보다 순화된 문장이라고 본다.

4)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은 “제1항에서 규정한 과태료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고 쉬운 문장이라고 본다.

5)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처분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에 맞는 문장이라고 본다.

6) “지체없이”는 지체없이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이 없이 라는 의미

를 가진 한자어이다. 그러나 지체없이가 한글화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라고 할 수 없고, 지체없이 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여야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곧바로”라고 하면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될 것이다.

7) “통보”는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될 수 있으면 한자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한자어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을 권위적이고 일반인과 멀어지게 하여 결과적으로 법령에 대한 신뢰를 적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유를 알려야...”라고 하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8)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는 “국세와 지방세체납처분과 같이 징수¹⁰⁹⁾한다”라고 하는 것이 순화된 표현이라고 본다.

第3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4條의2 또는 第3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기타는 그 이외 혹은 그 밖에 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한자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109) 징수라는 한자어 또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쉬운 한자어는 아니다. 한글화하여 사용되고 있어도 징수라는 표현은 권위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거두어들인다”라고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VII.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1條 (目的) 이 법은 基本的 倫理와 社會秩序를 침해하는 特定強力犯罪에 대한 處罰과 節次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生命과 身體의 安全을 保障하고 犯罪로부터 社會를 防衛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 법은 基本的 倫理와 社會秩序를 침해하는 特定強力犯罪에 대한 處罰과 節次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生命과 身體의 安全을 保障하고 犯罪로부터 社會를 防衛함을 目的으로 한다”는 보다 우리 어법에 맞게 순화하여 문장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지만 문장이 어색하다. 예를 들어 “이 법은...침해하는 특정 강력범죄를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사회를 방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순화된 문장일 것이다.

第2條 (適用範圍) ①이 법에서 “特定強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

1. 刑法 第24章의 殺人의 罪중 第250條(殺人·尊屬殺害), 第253條(偽計등에 의한 囑託殺人등), 第254條(未遂犯. 다만, 第251條 및 第252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2. 刑法 第31章의 略取와 誘引의 罪중 第287條(未成年者의 略取·誘引), 第288條(營利등을 위한 略取·誘引·賣買등), 第289條(國外移送을 위한 略取·誘引·賣買), 第293條(常習犯), 第294條(未遂犯. 다만, 第291條 및 第292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3. 刑法 第32章의 貞操에 관한 罪중 凶器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合同하여 범한 第297條(強姦), 第298條(強制醜行), 第299條(準強姦·準強制醜行), 第300條(未遂犯), 第305條(未成年者에 대한 姦淫·醜行)의 罪 및 第301條(強姦등에 의한 致死傷)의 罪

VII.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4. 刑法 第38章의 强盜의 罪중 第333條(强盜), 第334條(特殊强盜), 第335條(準强盜), 第336條(略取强盜), 第337條(强盜傷害·致傷), 第338條(强盜殺人·致死), 第339條(强盜强姦), 第340條(海上强盜), 第341條(常習犯),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29條 내지 第332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5.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第4條(團體등의 구성·活動),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關한法律 第5條의8(團體등의 組織)
- ②第1項 各號의 犯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하는 罪는 特定強力犯罪로 본다.

1)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에서 관형격조사를 빼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고 본다. 따라서 “각호 1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여 관형격조사를 빼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촉탁”은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일상적이라 본다.

3) “휴대하고”의 뜻은 소지 혹은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소지할 필요는 없고 몸 가까이 지니고 있으면 된다.¹¹⁰⁾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여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표현이다. 특히 우리 법원은 이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라고 해석하여 자동차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조의 경우에 특수폭행 또는 협박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보이거나 사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범죄이므로 그 의미를 풀어 사용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해석상의 문제도 남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조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보이거나 사용하여”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장이 된다.

4) “第329條 내지 第332조”는 내지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는 아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여 “제329조부터 333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第3條 (累犯의 刑) 特定強力犯罪로 刑을 받아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3年이내에 다시 特定強力犯罪를 범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倍까지 加重한다.

110) 이재상, 형법각론, 271면 참조.

“累犯”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형법제35조 제1항). 누범¹¹¹⁾은 실체법상 일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시에는 과거의 범죄행위가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서 과형상 수죄라고 할 수 있다.¹¹²⁾ 이는 실체법상 일죄를 과형상 수죄로 한다는 것은 피고인을 실체보다 불리하게 소송에서 취급한다는 점에서 책임주의에 위반되고 나아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¹¹³⁾ 그리고 누범은 법령상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일반인에게는 낯설은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범”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재범이 누범과의 의미가 분명하게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법 제35조에 보면 누범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어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第4條 (少年에 대한 刑) ①特定強力犯罪를 범한 때 18歲미만인 少年에 대하여 死刑 또는 無期徒刑으로 處할 것인 때에는 少年法 第5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20年の 有期懲役으로 한다.

②特定強力犯罪를 범한 少年에 대하여 不定期刑을 宣告할 때에는 少年法 第60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長期는 15年, 短期는 7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1) “特定強力犯罪를 범한 때 18歲미만인 少年에 대하여 死刑 또는 無期徒刑으로 處할 것인 때에는 少年法 第5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20年の 有期懲役으로 한다”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어순을 바꾸고 순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문장에서 주어는 18세 미만자 임으로 이를 앞으로 보내어

111)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 가중은 정당하다(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2004 판결).

112)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조 제2항).

113)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672면.

VII.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문장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 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2) “特定強力犯罪를 범한 少年에 대하여 不定期刑을 宣告할 때에는 少年法 第60條第1項 但書の 規定에 불구하고 長期는 15年, 短期는 7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는 규정을 어순을 바꾸는 등의 우리 어법에 맞게 순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때에는...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第5條 (執行猶豫의 缺格期間) 特定強力犯罪로 刑의 宣告를 받아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가 다시 特定強力犯罪를 범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猶豫하지 못한다.

“경과하지 아니한 者가”는 “지나지 않은 자”라고 하여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장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第6條 (保釋등의 取消) 法院은 特定強力犯罪事件의 被告人이 被害者 기타 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害를 加하거나 加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釋 또는 拘束의 執行停止를 取消할 수 있다.

1) “기타 事件의 裁判에” 기타는 표현을 그 밖의 경우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2)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는 일본식 번역문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청구하면...”이라고 고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조금은 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第7條 (證인에 대한 身邊安全措置) ①檢事は 特定強力犯罪事件의 證인이 被告人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生命·身體에 害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管轄警察署長에게 證人の 身邊安全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證인은 檢事에게 第1項의 措置를 취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

③裁判長은 檢事에게 第1項의 措置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第1項의 요청을 받은 管轄警察署長은 즉시 證人の 身邊安全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 이를 檢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에서 신변은 신체 또는 신체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대한 안전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변이라는 표현은 법령 등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거나 읽기에 어려운 한자어에 해당하며, 이것이 법령을 권위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신체라고 하면 당연히 신체의 주변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의미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2)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에서 ‘증인에 대한’이라는 것도 일본식 번역문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이를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증인을 위한 신체안전조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3) “기타의 사람으로부터”에서 기타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는 한자어이고, 굳이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할 필요가 없이 ‘그 이외의 사람 혹은 그 밖의 사람’이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본다.

4) “管轄警察署長에게 證人の 身邊安全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전체적으로 문장을 순화하여 쉽게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체안전에 필요한 조치를.....’이라고 하는 것이 문어체 문장을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법령을 순화할 수 있다고 본다.

5) “통보”에서 통보는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통보라고 하지 않고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VII.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8條 (出版物등으로부터의 被害者 보호) 特定強力犯罪중 第2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 및 第2項(다만, 第1項第1號를 제외한다)에 規定된 犯罪로 搜查 또는 審理중에 있는 事件의 被害者나 特定強力犯罪로 搜查 또는 審理중에 있는 事件을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에 대하여는 姓名, 年齡, 住所, 職業, 容貌등에 의하여 그가 被害者 또는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寫眞을 新聞紙 기타 出版物에 게재하거나 放送 또는 有線放送하지 못한다. 다만, 被害者,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被害者, 申告 또는 告發한 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配偶者, 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이 명시적으로 同意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出版物등으로부터의...”는 관형격조사 의를 빼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고 본다. 관형격조사를 사용하는 관행을 벗어나 할 것으로 본다.

2) “第2號 내지 第5號”에서 내지는 법령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법을 전공하려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잘 사용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제2호부터5호’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본다.

3) “姓名, 年齡”은 성명이나 연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고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이러한 한자어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름이나 나이로 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4) “容貌”은 얼굴모양을 말하는데 ‘얼굴’이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본다.

5) “등에 의하여 그가 被害者 또는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는 ‘얼굴 등으로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 고발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면서 우리 어법에 맞다고 본다.

6) “기타”는 그 이외 혹은 그 밖에 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를 “신고, 고발한 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간결한 표현이 될 것이다.

第9條 (訴訟進行의 協議) ①法院은 特定強力犯罪에 關하여 檢事 및 辯護人과 公判期日의 지정 기타 訴訟의 進行에 필요한 사항을 協議할 수 있다.

②그 協議는 訴訟進行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判決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特定強力犯罪에 關하여 證據書類 또는 證據物의 調査를 請求하는 경우에는 相對方에게 미리 閱覽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相對方이 異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訴訟進行의 協議”에서 소송진행을 협의하는 것으로 ‘소송진행을 협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 법령의 표제어에 관형격조사를 남발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물론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2)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문어체 문장으로 이를 일상적인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문어체 문장은 법령이 권위주의적으로 비추어 질 수 있어, 법령을 일반인과 멀어지게 하는 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영향을 주면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3) “相對方이 異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는 ‘이의’는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반인에게는 쉽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른 뜻이 없으면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법문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第10條 (集中審理) ①法院은 特定強力犯罪事件의 審理에 2日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계속 開廷하여 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②裁判長은 특별한 事情이 없는 한 前의 公判期日로부터 7日이내로 다음 公判期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이 公判期日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措置를 행할 수 있다.

VII.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1) “소요되는 때에는”에서 ‘소요’는 필요로 하는 혹은 요구되는 뜻을 지닌 한자어로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요를 한글화할 경우 의미의 혼란도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2일 이상이 필요한 때에는’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前的”는 불필요한 한자의 남발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의’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4) “준수”는 명령이나 규칙등을 그대로 좇아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판기일을 준수하다’는 ‘공판기일을 지키다’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第11條 (公判廷에서의 身體拘束) 裁判長은 特定強力犯罪로 公訴提起된 被告人이 暴力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判廷에서 被告人의 身體를 拘束할 것을 命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1)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을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판정에서 신체구속”라고 하는 것이 관형격조사의 남발을 막고, 예서라는 조사가 처소격조사이므로 공판정에서라고 하면 이미 장소적 의미가 있어서 의미를 전달하는데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2) ‘인정하는 때에는’은 ‘인정될 때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시제를 맞게 하고, 어법에도 맞고 일반인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기타”는 그 이외 혹은 ‘그 밖의’라고 하면 될 것이다.

4)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순화된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VII.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

第12條 (簡易公判節次의 決定) ①特定強力犯罪의 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公訴事實을 自白한 때에는 法院은 簡易公判節次에 의하여 審判할 것을 決定할 수 있다. 特定強力犯罪와 다른 罪가 併合된 경우에도 같다.
②第1項의 決定이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86條의3, 第297條의2, 第301條의2, 第318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 1) “簡易公判節次의 決定”은 관형격조사를 빼고 “간이공판절차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고 본다.
- 2) ‘第1項의 決定이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은 “제1항에서 결정된 사건은”이라고 하는 것이 순화되고 우리 어법에도 맞아 이해하기 쉽다.

第13條 (判決宣告) 法院은 特定強力犯罪事件에 관하여 辯論을 終結한 때에는 신속하게 判決을 宣告하여야 한다. 복잡한 事件이나 기타 특별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도 判決의 宣告는 辯論終結日부터 14日을 초과하지 못한다.

“종결한”은 마친다는 의미로 우리말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따라서 ‘변론을 마친 때에는’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1. 균형법 순화대비표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순화대비표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순화대비표
4.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순화대비표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순화대비표
6.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순화대비표

1. 군형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1條 (被適用者) ①이 법은 大韓民國의 領域內外를 不問하고 이 법에 規定된 罪를 犯한 大韓民國軍人에게 適用한다.</p> <p>②前項에서 軍人이라 함은 現役に 服務하는 將校, 准士官, 副士官 및 兵을 말한다. 다만, 轉換服務중인 兵은 제외한다.</p> <p>③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軍人に 準하여 이 법을 適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軍務員 2. 軍籍을 가진 軍의 學校의 學生·生徒와 士官候補生·副士官候補生 및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軍籍을 가지는 在營중인 學生 <p>第2條 (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의 各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上官이라 함은 命令服從關係에 있는 者間에서 命令權을 가진 者를 말한다. 命令服從關係가 없는 者間에서의 上階級者와 上序列者는 上官에 準한다. 2. 指揮官이라 함은 中隊以上の 單位部隊의 長과 艦船部隊의 長 또는 艦艇 및 航空機를 指揮하는 者를 말한다. 3. 哨兵이라 함은 警戒를 그 固有의 任務로 하여 守地, 守所 또는 守空에 配置된 者를 말한다. 4. 部隊라 함은 軍隊, 軍의 機關 및 學校와 戰時 또는 事變時에 있어서 이에 準하는 特設機關을 말한다. 5. 敵前이라 함은 敵에 對하여 攻擊防禦의 戰鬪行動을 開始하기 直前과 	<p>第1條 (被適用者) ①이 법은 大韓民國의 領域內外를 不問하고 이 법에 規定된 罪를 犯한 大韓民國軍人에게 適用한다.</p> <p>②前項에서 軍人이라 함은 現役に 服務하는 將校, 准士官, 副士官 및 兵을 말한다. 다만, 轉換服務중인 兵은 제외한다.</p> <p>③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사람은 軍人に 準하여 이 법을 適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軍務員 2. 軍籍을 가진 軍學校의 學生·生徒와 士官候補生·副士官候補生 및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軍籍을 가지는 在營중인 學生 <p>第2條 (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의 各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上官이란 命令服從關係에 있는 者 사이에 命令權을 가진 者를 말한다. 命令服從關係가 없는 者 사이에서 上階級者와 上序列者는 上官에 準한다. 2. 指揮官이란 中隊以上の 單位部隊의 長과 艦船部隊의 長 또는 艦艇 및 航空機를 指揮하는 者를 말한다. 3. 보초병(경계병)이란 警戒를 그 固有의 任務로 하여 守地, 守所 또는 守空에 配置된 者를 말한다. 4. 部隊란 軍隊, 軍의 機關 및 學校와 戰時 또는 事變時에 있어서 이에 準하는 特設機關을 말한다. 5. 敵앞이란 敵에 對하여 攻擊防禦의 戰鬪行動을 시작하기 바로전과

【부록】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開始後의 狀態 또는 敵과 直接對峙하여 그 來襲을 警戒하는 狀態를 말한다.</p> <p>6. 戰時라 함은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 대하여 宣傳布告를 하였거나 對敵行爲를 取한때로부터 當該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 對한 休戰協定이 成立된 때까지의 期間을 말한다.</p> <p>7. 事變이라 함은 戰時에 準하는 動亂狀態로서 全國 또는 地域別로 戒嚴이 宣布된 期間을 말한다.</p> <p>第 3 條 (死刑執行) 死刑은 所屬軍參謀總長 또는 軍事法院의 管轄官이 指定한 指所에서 銃殺로써 이를 執行한다.</p> <p>第 4 條 (他法適用例) 第1條의 規定에 依한 이 法의 被適用者가 犯한 罪에 關하여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을 때에는 他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p> <p>第 5 條 (叛亂) 作黨하여 兵器를 携帶하고 叛亂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首魁는 死刑에 處한다.</p> <p>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其他 重要な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한 者도 또한 같다.</p> <p>3. 附和雷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 6 條 (叛亂目的의 軍用物奪取) 叛亂을 目的으로 作黨하여 兵器, 彈藥 其他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奪取한 者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p>	<p>開始後의 狀態 또는 敵과 直接對峙하여 그 습격 혹은 기습(공격)을 警戒하는 狀態를 말한다.</p> <p>6. 戰時라 함은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게 宣傳布告를 하였거나 對敵行爲를 取한때로부터 當該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 對한 休戰協定이 成立된 때까지를 말한다.</p> <p>7. 事變이란 戰時에 準하는 動亂狀態로서 全國 또는 地域別로 戒嚴이 宣布된 期間을 말한다.</p> <p>第 3 條 (死刑執行) 死刑은 所屬軍參謀總長 또는 軍事法院의 管轄官이 정한 곳에서 銃殺로써 이를 執行한다.</p> <p>第 4 條 (他法適用例) 이 법 제1조에서 규정한 被適用者가 犯한 罪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他法令에서 규정한 대로 한다.</p> <p>第 5 條 (叛亂) 집단적으로(때를 지어) 兵器를 가지고(사용혹은 이용하여) 叛亂을 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두목(우두머리)는 死刑에 處한다.</p> <p>2. 謀議에 參與 또는 指揮하거나 그 밖의 重要な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죽이거나 다 치거나, 부수고 빼앗는 행위를 한 자도 또한 같다.</p> <p>3. 생각없이 동조하여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 6 條 (叛亂目的의 軍用物奪取) 叛亂을 目的으로 단체를 만들어(때를 지어) 兵器, 彈藥 그 밖의 軍用に 제공되는 물건을 빼앗은 자는 전조 처럼 벌한다.</p>

현행	순화안
<p>第8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は 5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u>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u></p> <p>②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第9條 (叛亂不報告) ①叛亂을 알고도 이를 上官 其他 關係官에게 遲滯없이 報告하지 아니한 者は 2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②前項의 境遇에 敵을 利롭게 할 目的으로 報告하지 아니한 者は 7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11條 (軍隊 및 軍用施設提供) ①軍隊要塞, 陣營 또는 軍用に 供하는 艦船이나 航空機 其他 場所, 設備 또는 建造物을 敵에게 提供한 者は 死刑에 處한다.</p> <p>②兵器 또는 彈藥 其他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敵에게 提供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第12條 (軍用施設等破壞) 敵을 爲하여 前條에 規定된 軍用施設 其他 物件을 破壞하거나 使用할 수 없게한 者は 死刑에 處한다.</p> <p>第13條 (間諜) ①敵을 爲하여 間諜한 者は 死刑에 處하고 敵의 間諜을 幫助한 者は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p> <p>②軍事上의 機密을 敵에게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第8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は 5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u>但 그 目的한 罪를 실행하기 前에 自首하면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u></p> <p>②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것을 부추기거나 알린 자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第9條 (叛亂不報告) ①叛亂을 알고도 이를 上官 <u>그 밖의</u> 關係官에게 遲滯없이 알리지 아니한 者は 2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②前項의 境遇에 敵을 利롭게 할 目的으로 알리지 아니한 者は 7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11條 (軍隊 및 軍用施設提供) ①軍隊要塞, 陣營 또는 軍用に 供하는 艦船이나 航空機 <u>그 밖의</u> 場所, 設備 또는 建造物을 敵에게 提供한 者は 死刑에 處한다.</p> <p>②兵器 또는 彈藥 <u>그 밖에 軍에 제공하는</u> 物件을 敵에게 提供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第12條 (軍用施設等破壞) 敵전조에 규정된 軍용시설 <u>그 이외의 物건을 적을 위하여 부수거나 쓸모없이 만든 자는 死刑에 處한다.</u></p> <p>第13條 (間諜) ①간첩행위를 한 자는 死刑에 處하고 간첩을 도와준 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p> <p>②軍事上 비밀을 적이 알게 한 자도 前項의 刑과 같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地域내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部隊·基地·軍港地域 <u>기타</u> 軍事施設保護를 위한 法令에 의하여 告示 또는 公告된 地域.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指定 또는 委囑된 방위산업체와 研究機關. 3. 部隊移動地域·部隊訓練地域·對間諜作戰地域 <u>기타</u> 軍의 特殊作戰을 수행하는 地域. <p>第14條 (一般利敵) 前3條에 記載한 以外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을 爲하여 嚮導하거나 地理를 指示한 者. 2. 敵에게 降服하게 하기 爲하여 指揮官에게 이를 強要한 者. 3. 敵을 隱匿하거나 庇護한 者. 4. 敵을 爲하여 通路, 橋梁, 燈臺, 標識 其他 交通施設을 損壞하거나 不通하게 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部隊 또는 軍用に 供하는 艦船, 航空機 또는 車輛의 往來를 妨害한 者. 5. 敵을 爲하여 暗號 또는 信號를 使用하거나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詐傳하거나 傳達을 怠慢히 하거나 또는 虛僞의 命令, 通報나 報告를 한 者. 6. 敵을 爲하여 部隊, 艦隊, 編隊 또는 隊員을 解散시키거나 混亂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그 連絡이나 集음을 妨害한 者.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地域내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部隊·基地·軍港地域 <u>그 밖에</u> 軍事施設保護를 위하여 법령에서 告示 또는 公告된 地域.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u>따라서</u> 정하거나 부당한 방위산업체와 研究機關. 3. 部隊移動地域·部隊訓練地域·對間諜作戰地域 <u>그 밖에</u> 軍이 特殊作戰을 수행하는 地域. <p>第14條 (一般利敵) 前3條에 記載한 以外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에게 <u>길이나</u> 지리를 알려주거나 <u>인도한 자</u>. 2. 敵에게 降服할 것을 <u>지휘관에게</u> 強요한 者. 3. 敵을 숨기거나 보호한 者. 4. 敵을 爲하여 通路, 橋梁, 燈臺, 標識 <u>그 이외의</u> 交通施設을 <u>부수거나</u> 못쓰게 하거나 <u>그 밖의</u> 方法으로 部隊 또는 軍에 제공되는 艦船, 航空機 또는 車輛의 通行을 妨害한 者. 5. 敵을 爲하여 暗號 또는 信號를 使用하거나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u>속여서</u> 전하거나 傳達을 <u>게을리</u> 하거나 또는 虛僞의 命令, 通報나 報告를 한 者. 6. 部隊, 艦隊, 編隊 또는 隊員을 <u>解散시키거나</u> 混亂을 일으켜 <u>적을</u> 이롭게 하거나 또는 그 連絡이나 集음을 妨害한 者.

현행	순화안
<p>7. 軍用に 供하지 아니하는 兵器, 彈藥 또는 戰鬪用に 供할 수 있는 物件을 敵에게 提供한 者.</p>	<p>7. 軍用に 제공되지 않은 兵器, 彈藥 또는 戰鬪用に 제공할 수 있는 物件을 敵에게 提供한 者.</p>
<p>8. 前各號以外에 大韓民國의 軍事上 利益을 害하거나 敵에게 軍事上 利益을 供與한 者.</p>	<p>8. 前各號以外에 大韓民國의 軍事上 利益을 害하거나 敵에게 軍事上 利益을 供與한 者.</p>
<p>第16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 第11條 乃至 第14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p>	<p>第16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 第11條부터 第14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p>
<p>②第11條 乃至 第14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②第11條부터 第14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第18條 (不法戰鬪開始) 指揮官이 正當한 事由없이 外國에 對하여 戰鬪를 開始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p>	<p>第18條 (위법전투시작) 指揮官이 正當한 事由없이 外國과 戰鬪를 시작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p>
<p>第19條 (不法戰鬪繼續) 指揮官이 休戰 또는 講和의 告知를 받고도 正當한 事由없이 戰鬪를 繼續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p>	<p>第19條 (위법戰鬪繼續) 指揮官이 休戰 또는 講和를 告知를 받고도 正當한 事由없이 戰鬪를 繼續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p>
<p>第20條 (不法進退)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에 있어서 指揮官이 權限을 濫用하여 不得已한 事由없이 部隊, 艦船 또는 航空機를 進退시킨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20條 (不法進退)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에서 指揮官이 權限을 濫用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部隊, 艦船 또는 航空機를 進退시킨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22條 (降服) 指揮官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敵에게 降服하거나 部隊, 陣營, 要塞, 艦船 또는 航空機를 敵에게 放任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p>	<p>第22條 (降服) 指揮官이 자신의 일을 다하지 않고 敵에게 降服하거나 部隊, 陣營, 要塞, 艦船 또는 航空機를 敵에게 버린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23條 (率隊逃避) <u>指揮官이 敵前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部隊를 引率하여 逃避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u></p>	<p>第23條 (率隊逃避) <u>指揮官이 敵앞에서 자신의 일을 다하지 않고 部隊를 이끌고 도망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u></p>
<p>第24條 (職務遺棄) <u>指揮官이 正當한 事由없이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또는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敵前의 境遇에는 死刑에 處한다.</u> 2. <u>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u> 3. <u>其他의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u> 	<p>第24條 (職務遺棄) <u>指揮官이 正當한 事由없이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또는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敵앞에서 境遇에는 死刑에 處한다.</u> 2. <u>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u> 3. <u>그 이외의 경우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u>
<p>第27條 (指揮官의 守所離脫) <u>指揮官이 正當한 理由없이 部隊를 引率하여 守所를 離脫하거나 配置區域에 臨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敵前인 境遇에는 死刑에 處한다.</u> 2. <u>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u> 3. <u>其他의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u> 	<p>第27條 (指揮官의 守所離脫) <u>指揮官이 正當한 理由없이 部隊를 데리고 밖 어지를 벗어나거나 配置區域에 臨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敵앞에서 그러면 死刑에 處한다.</u> 2. <u>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u> 3. <u>그 이외의 경우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u>
<p>第28條 (哨兵의 守所離脫) <u>哨兵이 正當한 事由없이 守所를 離脫하거나 指定된 時間내에 守所에 臨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적앞에서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u> 2. <u>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u> 3. <u>其他의 境遇에는 2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u> 	<p>第28條 (哨兵의 守所離脫) <u>보초병(경계병)이 正當한 事由없이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指定된 時間내에 근무지에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적앞에서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u> 2. <u>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u> 3. <u>그 밖에 그러면 2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u>

현행	순화안
<p>第30條 (軍務離脫) ①軍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部隊 또는 職務를 離脫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2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p>②部隊 또는 職務에서 <u>離脫된 者로서 正當한 事由없이 相當한 期間內에 復歸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u></p> <p>第31條 (特殊軍務離脫) 危險 또는 重要한 任務를 回避할 目的으로 配置地 또는 職務를 離脫한 者도 前條의 例에 依한다.</p> <p>第32條 (離脫者庇護) 前2條의 罪를 犯한 者를 隱匿 또는 庇護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5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p>第33條 (敵陣에의 逃走) 敵에게 逃走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p> <p>第35條 (勤務怠慢) 勤務를 怠慢히 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無期 또는 1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指揮官 또는 이에 準하는 將校로서 그 任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敵과의 交戰이 豫測되는 境遇에 戰鬪準備를 怠慢히 한 者. 2. 將校로서 部隊 또는 兵員을 <u>引率하여 그 任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敵에 遭遇하거나 其他 危難에 處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部隊 또는 兵員을 遺棄한 者.</u> 	<p>第30條 (軍務離脫) ①軍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部隊 또는 職務를 <u>벗어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敵앞에서</u>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3. <u>그 밖의 境遇에는</u> 2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p>②部隊 또는 職務에서 離脫한 자가 <u>正當한 事由없이 相當한 期間內에 돌아오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u></p> <p>第31條 (特殊軍務離脫) 危險 또는 重要한 任務를 回避할 目的으로 配置地 또는 職務를 離脫한 者도 <u>앞조처럼 처벌한다.</u></p> <p>第32條 (離脫者보호) 前2條의 罪를 犯한 者를 <u>숨겨주거나 보호한 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5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2. <u>그 밖의 境遇에는</u> 3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p>第33條 (敵陣으로 도망) 敵에게 <u>도망한 자는</u> 死刑에 處한다.</p> <p>第35條 (勤務怠慢) 勤務를 <u>게을리 하여</u>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無期 또는 1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指揮官 또는 이에 準하는 將校가 <u>그가 맞은 일을 하면서 적과의 싸움이 예상됨에도 戰鬪準備를 게을리한 자.</u> 2. 將校로서 部隊 또는 兵員을 <u>이끌고 그가 맡은 일을 하면서 적과 마주치거나 그 이외(그 밖의) 위험에 처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部隊 또는 부대원을 버린 자.</u>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3. <u>職務上 攻撃하여야 할 敵에 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攻撃하지 아니하거나 職務上 當面하여야 할 危難으로부터 離脫한 者.</u></p> <p>4. 軍事機密의 文書 또는 物件을 保管하는 者로서 危急한 境遇에 있어서 不得已한 事由없이 敵에게 이를 放任한 者.</p> <p>5.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에서 兵器, 彈藥, 食糧, 被服 其他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運搬 또는 供給하는 者로서 不得已한 事由없이 이를 缺乏하도록 한 者.</p>	<p>3. <u>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攻撃하지 아니하거나 職務上 當面하여야 할 危難으로부터 離脫한 者.</u></p> <p>4. 軍事機密의 文書 또는 物件을 保管하는 者가 危急한 境遇에 있어서 不得已한 事由없이 敵에게 이를 放任한 者.</p> <p>5.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에서 兵器, 彈藥, 食糧, 被服 <u>그 밖에</u> 軍用に 供給하는 物件을 運搬 또는 供給하는 者로서 不得已한 事由없이 이를 <u>모자라게</u> 한 者.</p>
<p>第36條 (飛行軍紀紊亂) 飛行에 關한 法規 또는 命令을 違反하여 航空機를 操縱함으로써 飛行軍紀를 紊亂하게 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依하여</u> 處罰한다.</p> <p>1. <u>敵前인 境遇에는</u> 1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p> <p>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3. 其他의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36條 (飛行軍紀紊亂) 飛行에 關한 法規 또는 命令을 違反하여 航空機를 操縱함으로써 飛行軍紀를 紊亂하게 한 者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u> 處罰한다.</p> <p>1. <u>敵앞에서</u> 그러면 1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p> <p>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3. <u>그 이외의 境遇에는</u>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37條 (僞計로 因한 航行危險) <u>詐僞의 信號를 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軍用に 供하는 艦船 또는 航空機의 航行에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u></p> <p>1.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2. 其他의 境遇에는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第37條 (속임수 때문에 航行危險) <u>거짓 信號를 하거나 그 밖의 方法으로 軍에 제공되는 艦船 또는 航空機의 航行에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u></p> <p>1.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그 밖의 境遇에는</u>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현행	순화안
<p>第38條 (虛僞의 命令, 通報, 報告) ① 軍事에 關하여 虛僞의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依하여</u>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7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p>第39條 (命令等의 虛僞傳達)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에서 軍事에 關한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傳達하는 者가 이를 虛僞傳達하거나 傳達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p> <p>第40條 (哨令違反) ①정당한 사유없이 所定の 規則에 依하지 아니하고 哨兵을 交替시키거나 交替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依하여</u>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2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경우에는 5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p>②哨兵으로서 睡眠 또는 飲酒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p> <p>[全文改正 1994.1.5]</p> <p>第41條 (勤務忌避目的의 詐術) ①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身體를 傷害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依하여</u>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p>第38條 (虛僞의 命令, 通報, 報告) ① 軍事에 關하여 虛僞의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한 者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u>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앞에서 그러면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7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3. <u>그 밖의 境遇</u>에는 1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p>第39條 (命令等을 虛僞傳達)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에서 軍事에 關한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傳達하는 者가 이를 虛僞傳達하거나 傳達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p> <p>第40條 (경계규정違反) ①정당한 사유없이 所定の 規則에 依하지 아니하고 哨兵을 交替시키거나 交替한 者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u>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앞에서 그러면 死刑, 無期 또는 2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경우에는 5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3. <u>그 밖에서 그러면</u> 2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p>②哨兵으로서 睡眠 또는 飲酒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p> <p>[全文改正 1994.1.5]</p> <p>第41條 (勤務거부目的으로 詐術) ①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身體를 傷害한 者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u>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앞에서 그러면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u>그 밖의 境遇</u>에는 3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부록】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②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假病 其他 僞計를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境遇에는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2. 其他의 境遇에는 1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42條 (有害飲食物供給) ①有毒性이 있는 飲食物을 軍에 供給한 者는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②前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③過失로 因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④敵을 利롭게하기 爲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第43條 (出兵拒否) 指揮官이 出兵을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者로부터 그 要求를 받고 相當한 理由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7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44條 (抗命) 上官의 正當한 命令에 反抗하거나 服從하지 아니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1年以上 7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3. 其他의 境遇에는 3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第45條 (集團抗命)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②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假病 그 밖의 僞計를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2. 그 밖의 境遇에는 1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42條 (有害한 음식물 공급) ①有毒性이 있는 飲食物을 軍에 供給한 者는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②前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③過失로 因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④敵제1항의 죄를 적을 돕기위하여 범한 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第43條 (出兵拒否) 指揮官이 出兵을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者로부터 그 要求를 받고 相當한 理由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7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44條 (抗命) 上官의 正當한 命令에 反抗하거나 服從하지 아니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1年以上 7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3. 그 밖의 境遇에는 3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第45條 (集團抗命) 集團으로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과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현행	순화안
<p>1. 敵前인 境遇에는 <u>首魁</u>는 死刑에 處하고 <u>其他의 者</u>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p> <p>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u>首魁</u>는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u>其他의 者</u>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3. <u>其他의 境遇</u>에는 首魁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하고 <u>其他의 者</u>는 7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46條 (上官의 制止不服從) 暴行을 하는 者가 <u>上官의 制止에 服從하지 아니한 때</u>에는 3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47條 (命令違反) 正當한 命令 또는 規則을 <u>遵守할 義務</u>가 있는 者가 이를 違反하거나 <u>遵守하지 아니한 때</u>는 2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48條 (上官에 對한 暴行, 脅迫) <u>上官에 對하여</u>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依하여</u> 處罰한다.</p> <p>1. 敵前인 境遇에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2. <u>其他의 境遇</u>에는 5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49條 (上官에 對한 集團暴行, 脅迫) <u>集團을 이루어</u>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依하여</u> 處罰한다.</p> <p>1. 敵前인 境遇에는 <u>首魁</u>는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u>其他의 者</u>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2. <u>其他의 境遇</u>에는 <u>首魁</u>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u>其他의 者</u>는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u>우두머리(두목)</u>는 死刑에 處하고 <u>그 밖의 사람</u>은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p> <p>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u>우두머리</u>는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u>그 밖의 사람</u>은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3. <u>그 밖의 境遇</u>에는 首魁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하고 <u>그 외의 者</u>는 7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46條 (上官의 制止不服從) 暴行을 하는 者가 <u>上官이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u>는 3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47條 (命令違反) 正當한 命令 또는 規則을 <u>지킬할 義務</u>가 있는 者가 이를 違反하거나 <u>지키지 않으면</u> 2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48條 (上官을 暴行, 脅迫) <u>上官을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u>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u> 處罰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1年以上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2. <u>그 밖에서</u> 그러면 5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49條 (上官에 對한 集團暴行, 脅迫) <u>集團으로</u>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u> 處罰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u>우두머리</u>는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u>그 밖의 者</u>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2. <u>그 이외의 곳에서</u> 그러면 <u>우두머리</u>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u>그 밖의 者</u>는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50條 (上官에 對한 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48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境遇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2. 其他의 境遇에는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第51條 (上官에 對한 集團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49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死刑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2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第52條 (上官에 對한 暴行致死傷) ① 第48條 내지 第51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0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② 第48條 내지 第51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을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52條의2 (上官에 對한 傷害) 上官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第50條 (上官에 對한 特殊暴行, 脅迫) 兇器 그 밖에 危險한 物件을 이용하여(가지고) 第48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2. 그 밖에서 그러면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第51條 (上官에 對한 集團特殊暴行, 脅迫) 兇器 그 밖의 危險한 物件을 가지고 第49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우두머리는 死刑에 處하고 그 밖의 사람은 10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그 밖에서 그러면 두목은 無期 또는 10년 이상의 懲役に 處하고 그 이외의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第52條 (上官을 暴行致死傷) ① 第48條 내지 第51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을 致死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10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그 밖에서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② 第48條 부터 第51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을 致傷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그 밖에서는 1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52條의2 (上官을 傷害) 上官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현행	순화안
<p>1. <u>敵前인</u> 경우에는 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기타의</u> 경우에는 1년 이상의 有期 懲役に 處한다.</p> <p>第52條의3 (上官에 대한 重傷害) 第52條第2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u>上官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u>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u></p> <p>1. <u>敵前인</u>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0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기타의</u>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63.12.16]</p>	<p>1. <u>敵앞에서</u> 그러면 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그 밖에서</u> 그러면에는 1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52條의3 (上官을 重傷害) 第52條第2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u>上官의 生命에 危險을 발생하게</u>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u></p> <p>1. <u>敵앞에서</u>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10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그 밖에서</u>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63.12.16]</p>
<p>第52條의3 (上官에 대한 重傷害) 第52條第2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u>上官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u>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u></p> <p>1. <u>敵前인</u>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0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기타의</u>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63.12.16]</p>	<p>第52條의3 (上官에게 중상해) 第52條第2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u>上官의 生命에 危險을 발생시키거나</u>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u></p> <p>1. <u>敵앞에서</u>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10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그 밖에서</u>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63.12.16]</p>
<p>第54條 (哨兵에 對한 暴行, 脅迫) <u>哨兵에 對하여</u>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u></p> <p>1. <u>敵前인 境遇에</u>는 7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2. <u>其他의 境遇에</u>는 3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第54條 (보초兵을 暴行, 脅迫) <u>보초병 (경계병)을</u>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u></p> <p>1. <u>敵앞에서</u> 그러면 7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그 밖의 곳에서</u> 그러면 3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第55條 (哨兵에 對한 集團暴行, 脅迫)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u></p>	<p>第55條 (보초병을 集團暴行, 脅迫)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u></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1. <u>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u></p> <p>2. <u>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5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u></p> <p>第56條 (哨兵에 對한 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54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u>敵前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u></p> <p>2. <u>其他의 境遇에는 1年以上의 有器懲役に 處한다.</u></p> <p>第57條 (哨兵에 對한 集團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55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u>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u></p> <p>2. <u>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10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u></p> <p>第58條 (哨兵에 對한 暴行致死傷) ① <u>第54條 내지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u></p> <p>1. <u>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u></p> <p>2. <u>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u></p>	<p>1. <u>敵앞에서 그러면 우두머리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하고 그 밖의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u></p> <p>2. <u>그 밖의 境遇에는 우두머리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하고 그 밖의 者는 5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u></p> <p>第56條 (보초병을 特殊暴行, 脅迫) 兇器 <u>그 밖에 危險한 物件을 보이고</u>하고 第54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u>敵앞에서 그러면 死刑,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u></p> <p>2. <u>그 이외의 곳에서 그러면 1年以上의 有器懲役に 處한다.</u></p> <p>第57條 (보초병을 集團特殊暴行, 脅迫) 兇器 <u>그 밖에 危險한 物件을 보이고 (이용혹은 사용하고)</u> 第55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u>적앞에서 그러면 우두머리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그 밖의 者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u></p> <p>2. <u>그 밖의 곳에서 그러면 우두머리 (두목)는 10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하고 그 이외의 자는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u></p> <p>第58條 (보초병(경계병)을 暴行致死傷) ① <u>第54條부터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보초병을 致死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u></p> <p>1. <u>敵앞에서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u></p> <p>2. <u>그 밖에서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u></p>

현행	순화안
<p>②第54條 내지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1年이상의 有期 懲役に 處한다.</p> <p>[全文改正 1963.12.16]</p>	<p>②第54條부터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警戒병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그 밖에서 그러면 1年이상의 有期 懲役に 處한다.</p> <p>[全文改正 1963.12.16]</p>
<p>第58條의2 (哨兵에 대한 傷害) 哨兵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1年이상의 有期 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63.12.16]</p>	<p>第58條의2 (보초병을 傷害) 보초병(警戒병)을 傷害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그 밖에서 그러면 1年이상의 有期 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63.12.16]</p>
<p>第58條의3 (哨兵에 대한 重傷害) 第58條 第2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2年이상의 有期 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63.12.16]</p>	<p>第58條의3 (보초병을 重傷害) 第58條 第2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보초병에게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그 밖에서 그러면 2年이상의 有期 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63.12.16]</p>
<p>第58條의4 (哨兵에 대한 傷害致死) 第58條의2 및 第58條3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63.12.16]</p>	<p>第58條의4 (警戒병(보초병)을 傷害致死) 第58條의2 및 第58條3의 罪를 犯하여 보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그 밖에서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63.12.16]</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59條 (哨兵殺害와 豫備,陰謀) ①哨兵을 殺害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p> <p>②前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第60條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暴行·脅迫등) ①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7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3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②兇器 기타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1年以上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5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③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을 하여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④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을 하여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第59條 (보초병殺害와 豫備,陰謀) ①보초병을 殺害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p> <p>②前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第60條 (職務遂行중인 者를 暴行·脅迫등) ①上官 또는 보초병(경계병)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를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처벌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7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2. 그 밖에서 그러면 3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②兇器 또는 危險한 物件을 보이고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1年以上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2. 그 밖에서 그러면 5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③上官 또는 보초병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를 暴行을 하여 致死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2. 그 밖에서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④上官 또는 보초병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를 暴行을 하여 致傷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현행	순화안
<p>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⑤集團을 이루어 第1項 내지 第4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p>	<p>2. 그 밖에서 그러면 1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⑤ 무리를 지어 第1項 내지 第4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p>
<p>[全文改正 1963.12.16]</p>	<p>[全文改正 1963.12.16]</p>
<p>第60條의3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重傷害) 第60條第4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 또는 哨兵 이외에 職務遂行중인 者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다음 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p>	<p>第60條의3 (職務遂行중인 者를 重傷害) 第60條第4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 또는 보초병 이외에 職務遂行중인 者에게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시키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다음 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그 밖에서 그러면 2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63.12.16]</p>	<p>[本條新設 1963.12.16]</p>
<p>第60條의4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傷害致死) 第60條의2 및 第60條의3의 罪를 犯하여 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를 致死한 者는 다음 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p>	<p>第60條의4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傷害致死) 第60條의2 및 第60條의3의 罪를 犯하여 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를 致死한 者는 다음 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1. 敵앞에서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그 밖에서 그러면 死刑·無期 또는 1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63.12.16]</p>	<p>[本條新設 1963.12.16]</p>
<p>第61條 (特殊騷擾) 集團을 이루어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한 者는 다음 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第61條 (特殊騷擾) 무리를 지어 兇器 또는 危險한 物件을 보이고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한 者는 다음 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首魁는 3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2. 他人을 指揮하거나 率先하여 助勢한 者는 1년 이상 10년 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1. 우두머리는 3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2. 他人을 指揮하거나 앞장서서 도운 자는 1년 이상 10년 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3. <u>附和雷同한</u> 者는 2年以下の 懲役에 處한다.</p> <p>第62條 (苛酷行爲) 職權을 濫用하여 虐待 또는 苛酷한 行爲를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第64條 (上官侮辱등) ①<u>上官을 그 面前에서 侮辱한</u> 者는 2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文書, 圖書 또는 偶像을 公示하거나 演說 其他 公然한 方法으로 上官을 侮辱한 者는 3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③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上官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④公然히 虛偽의 事實을 摘示하여 上官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65條 (哨兵侮辱) <u>哨兵을 그 面前에서 侮辱한</u> 者는 1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66條 (軍用施設等에의 放火) ①불을 놓아 軍의 工場, 艦船, 航空機 또는 戰鬪用に 供하는 施設, 汽車, 電車, 自動車, 橋梁을 燒毀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②불을 놓아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貯藏하는 倉庫를 燒毀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軍用に 供하는 物件이 現存하는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軍用に 供하는 物件이 現存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3. <u>जू대없이 따른(당달아 따른)</u> 者는 2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62條 (苛酷行爲) 職權을 濫用하여 虐待 또는 苛酷한 行爲를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第64條 (上官侮辱등) ①<u>上官을 그 앞에서 侮辱한</u> 者는 2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文書, <u>그림</u> 또는 偶像을 公示하거나 演說 <u>그 밖의</u> 公然한 方法으로 上官을 侮辱한 者는 3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③<u>다수가 알 수 있게 사실을 알려서</u> 上官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④<u>다수가 알 수 있게 거짓사실을 알려서</u> 上官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65條 (哨兵侮辱) <u>보초兵(경계병)을 그 앞에서 侮辱한</u> 者는 1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66條 (軍用施設等을 放火) ①불을 놓아 軍의 工場, 艦船, 航空機 또는 戰鬪用に <u>제공하는</u> 施設, 汽車, 電車, 自動車, 橋梁을 燒毀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②불을 질러 軍用に <u>제공하는</u> 物件을 貯藏하는 倉庫를 燒毀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 1. 軍用に <u>제공된</u> 物件이 現存하는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2. 軍用に <u>제공된</u> 物件이 現存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현행	순화안
<p>第67條 (露積軍用物에의 放火) <u>불을놓아</u> <u>露積한</u> 兵器, 彈藥, 車輛, 裝具, 器材, 食糧, 被服 <u>其他</u> 軍用에 <u>供하는</u> 物件을 燒毀한 者는 <u>다음의</u> <u>區別에</u> <u>依하여</u> 處罰한다.</p> <p>1.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2. <u>其他의</u> 境遇에는 無期 또는 3年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第68條 (爆發物破裂) 火藥, 汽罐 <u>其他</u> 爆發性있는 物件을 破裂하게 하여 前2條에 規定된 物件을 損壞한 者도 前2條의 <u>例에</u> <u>依한다</u>.</p> <p>第69條 (軍用施設等損壞) 第66條에 規定된 物件 또는 軍用에 <u>供하는</u> 鐵道, 電線 <u>其他의</u> 施設이나 物件을 損壞하거나 <u>其他의</u>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無期 또는 2年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第70條 (鹵獲物毀損) 敵으로부터 <u>鹵獲한</u> 物件을 橫領하거나 燒毀 또는 損壞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71條 (艦船, 航空機의 覆沒損壞) ① <u>就役중에</u> 있는 艦船을 衝突 또는 <u>坐礁</u>시키거나 危險한 곳을 航行하게 하여 艦船을 覆沒 또는 破壞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② <u>就役중에</u> 있는 航空機를 墜落시키거나 覆沒 또는 損壞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③ 前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第67條 (야적軍用物에의 放火) <u>불을질러</u> <u>쌓아둔</u> 兵器, 彈藥, 車輛, 裝具, 器材, 食糧, 被服 <u>그 밖의</u> 軍用에 <u>제공된</u> 物件을 燒毀한 者는 <u>다음과</u> <u>같이</u> <u>구별하여</u> 處罰한다.</p> <p>1.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2. <u>그 밖에</u> 그러던 無期 또는 3年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第68條 (爆發物破裂) 火藥, <u>보일러</u> 그 밖의 爆發性있는 物件을 파괴하여 前2條에 規定된 物件을 損壞한 者도 前2條처럼 처벌한다.</p> <p>第69條 (軍用施設等損壞) 第66條에 規定된 物件 또는 軍用에 <u>제공된</u> 鐵道, 電線 <u>그 밖의</u> 施設이나 物件을 損壞하거나 <u>그 밖의</u>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無期 또는 2年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第70條 (빼앗은것을 毀損) 敵으로부터 <u>빼앗은</u> 物件을 橫領하거나 燒毀 또는 損壞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71條 (艦船, 航空機의 <u>침몰</u>損壞) ① <u>운항중에</u> 있는 艦船을 衝突 또는 <u>안초</u>등에 <u>걸리게</u> 하거나 危險한 곳을 航行하게 하여 艦船을 <u>침몰</u> 또는 <u>부순</u>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② <u>운항중에</u> 있는 航空機를 墜落시키거나 覆沒 또는 損壞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③ 前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72條 (未遂犯) 第66條 <u>乃至</u> 前條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72條 (未遂犯) 第66條 부터 前條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73條 (過失犯) ① <u>過失로 因하여</u> 第66條 <u>乃至</u> 第71條의 罪를 犯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 <u>業務上過失</u> 또는 重大한 <u>過失로 因하여</u>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73條 (過失犯) ① <u>過失</u> 第66條 부터 第71條의 罪를 犯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 <u>業務上過失</u> 또는 重大한 <u>過失로</u>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74條 (軍用物 <u>紛失</u>) 銃砲·彈藥·爆發物·車輛·裝具·器材·食糧·被服 <u>기타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保管할 責任이 있는 者로서 이를 紛失한 者</u>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74條 (軍用物 <u>잃어버림</u>) 銃砲·彈藥·爆發物·車輛·裝具·器材·食糧·被服 <u>그 밖에 軍用に 제공된 物件을 保管할 責任이 있는 者가 이를 잃어버린 자</u>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75條 (軍用物등 犯罪에 대한 刑의 加重) ① 銃砲·彈藥·爆發物·車輛·裝具·器材·食糧·被服 <u>기타 軍用に 供하는 物件</u> 또는 軍의 財産上의 利益에 關하여 刑法 第2編第38章 내지 第41章의 罪를 犯한 때에는 <u>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銃砲·彈藥 또는 爆發物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第1號 이외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p>② 第1項第2號의 경우에는 刑法에 정한 刑과 比較하여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p> <p>③ 第1項의 罪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罰金を 併科할 수 있다.</p> <p>[全文改正 1975.4.4]</p>	<p>第75條 (軍用物등 犯罪에 대한 刑의 加重) ① 銃砲·彈藥·爆發物·車輛·裝具·器材·食糧·被服 <u>그 밖의 軍용에 제공된 物件</u> 또는 軍의 財産上의 利益에 關하여 刑法 第2編第38章 내지 第41章의 罪를 犯한 때에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銃砲·彈藥 또는 爆發物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第1號 이외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p>② 第1項第2號의 경우에는 刑法에 정한 刑과 比較하여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p> <p>③ 第1項의 罪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罰金を 併科할 수 있다.</p> <p>[全文改正 1975.4.4]</p>

현행	순화안
<p>第76條 (豫備, 陰謀) 第66條 乃至 第69條와 第71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p> <p>第77條 (外國의 軍用施設 또는 軍用物에 對한 行爲) 이 章의 規定은 國軍과 共同作戰에 從事하고 있는 外國軍의 軍用施設 또는 軍用に 供하는 物件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p> <p>第78條 (哨所侵犯) 哨兵을 欺罔하여 哨所를 通過하거나 哨兵의 制止에 不應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前인 境遇에는 1年以上 5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p>第79條 (無斷離脫) 許可없이 勤務場所 또는 指定場所를 一時離脫하거나 指定한 時間內에 指定한 場所에 到達하지 못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80條 (軍事機密漏泄) ①軍事上の 機密을 漏泄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前項의 罪를 범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76條 (豫備, 陰謀) 第66條부터 第69條와 第71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죄를 실행하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p> <p>第77條 (外國의 軍用施設 또는 軍用物에 對한 行爲) 이 章의 規定은 國軍과 共同作戰에 從事하고 있는 外國軍의 軍用施設 또는 軍에 제공된 物件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p> <p>第78條 (哨所侵犯) 哨兵을 속여서 哨所를 通過하거나 보초병이 정지에 불응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앞에서 그러면 1年以上 5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3. 그 밖에서 그러면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p>第79條 (無斷離脫) 許可없이 勤務場所 또는 指定場所를 一時離脫하거나 指定한 時間內에 指定한 場所에 도착하지 못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80條 (軍事機密漏泄) ①軍事上の 비밀을 퍼뜨린(알게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前項의 罪를 범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81條 (暗號不正使用) 暗號를 許可없이 發信하거나 受信할 資格이 없는 者에게 受信하게 하거나 또는 自己가 受信한 暗號를 傳達하지 아니하거나 虛僞傳達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p> <p>第82條 (掠奪) ①戰鬪地域 또는 占領地域에서 軍의 威力 또는 戰鬪의 恐怖를 利用하여 住民의 財物을 掠取한 者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戰鬪地域에서 戰死者 또는 戰傷病者의 衣類 其他의 財物을 掠取한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83條 (掠奪로 인한 致死傷) ①前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殺害하거나 致死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②前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하거나 致傷한 者는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全文改正 1963.12.16]</p> <p>第84條 (戰地強姦) ①戰鬪地域 또는 占領地域에서 婦女를 強姦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②前項의 罪에 對한 公訴에는 告訴를 要하지 아니한다.</p> <p>第86條 (捕虜) 敵에게 捕虜가 된 者로서 友軍部隊 또는 陣地로 歸還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歸還할 適切한 行動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他友軍 捕虜로 하여금 歸還하지 못하게 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第87條 (看守者의 捕虜逃走援助) 捕虜를 看守 또는 護送하는 者가 그 捕虜를 逃走하게 한 때에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81條 (暗號不正使用) 暗號를 許可없이 보내거나 받을 資格이 없는 者에게 받게하게 하거나 또는 自己가 받은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虛僞傳達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p> <p>第82條 (掠奪) ①戰鬪地域 또는 占領地域에서 軍의 威力 또는 戰鬪의 恐怖를 利用하여 住民의 財物을 빼앗은 者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②戰鬪地域에서 戰死者 또는 戰傷病者의 衣類 그 밖의 財物을 빼앗은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83條 (掠奪로 인한 致死傷) ①前條의 罪를 저질러 사람을 殺害하거나 致死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②前條의 罪를 저질러 사람을 傷害하거나 致傷한 者는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全文改正 1963.12.16]</p> <p>第84條 (戰地強姦) ①戰鬪地域 또는 占領地域에서 여자를 強姦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②前項의 罪에 對한 公訴에는 告訴를 要하지 아니한다.</p> <p>第86條 (捕虜) 敵에게 捕虜가 된 자가 友軍部隊 또는 陣地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歸돌아가기위한 적절한 行動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다른友軍捕虜로 하여금 돌아가지 못하게 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第87條 (看守者의 捕虜도망도움) 捕虜를 看守 또는 護送하는 者가 그 捕虜를 逃走하게 한 때에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현행	순화안
<p>第88條 (捕虜逃走援助) ①捕虜를 <u>逃走하게 한</u> 者는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②捕虜를 <u>逃走시킬</u> 目的으로 捕虜에게 器具를 供與하거나 其他 그 逃走를 <u>容易하게</u> 하는 行爲를 한 者는 7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89條 (捕虜奪取) 捕虜를 <u>奪取한</u>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90條 (逃走捕虜庇護) 逃走한 捕虜를 <u>隱匿하거나 庇護한</u> 者는 5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91條 (未遂犯) 第87條 <u>乃至</u>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92條 (醜行) <u>鷄姦 其他</u> 醜行을 한 者는 1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93條 (部下犯罪不鎮定) <u>部下가 多數 共同하여</u> 罪를 犯함을 알고도 그 <u>鎮定을</u> 爲하여 必要한 方法을 다하지 아니한 者는 3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94條 (政治關與) 政治團體에 加入하거나 演說 또는 文書 <u>其他의 方法으로</u> 政治的意見을 <u>公表하거나 其他</u> 政治運動을 한 者는 2年以下の 禁錮에 處한다.</p>	<p>第88條 (捕虜逃走援助) ①捕虜를 <u>도망하게 한</u> 者는 10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②捕虜를 <u>도망시킬</u> 目的으로 捕虜에게 器具를 제공하거나 <u>그 밖에 그 도망을 쉽게</u> 하는 行爲를 한 者는 7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89條 (捕虜奪取) 捕虜를 <u>빼앗은</u>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90條 (도망捕虜보호) 도망한 捕虜를 <u>숨기거나 보호한</u> 者는 5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91條 (未遂犯) 第87條<u>부터</u>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92條 (醜行) <u>항문성교 그 밖의</u> 醜行을 한 者는 1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93條 (部下犯罪不鎮定) <u>部下가 무리 지어</u> 罪를 犯함을 알고도 그 <u>막음을</u> 爲하여 必要한 方法을 다하지 아니한 者는 3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94條 (政治關與) 政治團體에 加入하거나 演說 또는 文書 <u>그 밖의 方法으로</u> 政治的意見을 <u>공개적으로 알리거나 그 밖의</u> 政治運動을 한 者는 2年以下の 禁錮에 處한다.</p>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1條 (目的) 이 법은 集團의, 常習의 또는 夜間에 暴力行爲等을 恣行하는 者等을 處罰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暴行等) ①常習의으로 刑法 第257條第1項(傷害), 第260條第1項(暴行), 第276條第1項(逮捕, 監禁), 第283條第1項(脅迫), 第319條(住居侵入, 退去不應), 第324條(暴力에 依한 權利行使妨害), 第350條(恐喝) 또는 第366條(損壞)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夜間 또는 2人以上이 共同하여 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때에는 各 刑法 本條에 定한 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p> <p>③이 법 違反(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 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 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p> <p>④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第3項의 境遇에는 刑法 第260條第3項 및 第283條第3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第3條 (集團의 暴行等) ①團體나 多衆의 威力으로써 또는 團體나 集團을 假裝하여 威力을 보임으로써 第2條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者 또는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그 罪를 犯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夜間에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1條 (目的) 이 법은 集團의, 常習의 또는 夜間에 暴力行爲等을 行하는 者等을 處罰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暴行等) ①常習의으로 刑法 第257條第1項(傷害), 第260條第1項(暴行), 第276條第1項(逮捕, 監禁), 第283條第1項(脅迫), 第319條(住居侵入, 退去不應), 第324條(<u>폭력</u>으로 權利行使妨害), 第350條(恐喝) 또는 第366條(損壞)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夜間 또는 2人以上이 <u>같이</u> 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때에는 各 刑法 本條에 定한 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p> <p>③이 법 違反(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 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 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하여 <u>재범</u>으로 處罰할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p> <p>④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第3項의 境遇에는 刑法 第260條第3項 및 第283條第3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第3條 (集團의 暴行等) ①團體나 多衆의 威力으로 또는 團體나 集團을 <u>강</u>하여 威力을 보임으로써 第2條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者 또는 <u>兇器 그 밖의 危險한 物件을 보이고</u> 그 罪를 犯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第1項의 罪를 夜間에 犯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③常習的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④이 法 違反(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 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 第1項의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도 第3項과 같다.</p> <p>第4條 (團體등의 구성·活動) ①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目的으로 한 團體 또는 集團을 構成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首魁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幹部는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3. 그외의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構成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가 團體 또는 集團의 威力을 과시하거나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의 行위를 한 때에는 그 罪에 대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p> <p>1. 刑法 第8章 公務妨害에 關한 罪중 第136條(公務執行妨害)·第141條(公用書類등의 無效·公用物の 破壞)의 罪, 同法 第24章 殺人の 罪중 第250條第1項(殺人)·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第253條(偽計等に 依한 囑託殺人等)·第255條(豫備, 陰謀)의 罪, 同法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중 第314條(業務妨害)·第315條(競賣, 入札의 妨害)의 罪, 同法 第38章</p>	<p>③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④이 法 違反(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 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재범 處罰할 경우도 第3項과 같다.</p> <p>第4條 (團體등을 구성활동) ①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目的으로 한 團體 또는 集團을 만들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p>1. 우두머리(두목)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幹部는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3. 그외의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만들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가 團體 또는 集團의 威力을 과시하거나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의 行위를 한 때에는 그 罪에 대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p> <p>1. 刑法 第8章 公務妨害에 關한 罪중 第136條(公務執行妨害)·第141條(公用書類등의 無效·公用物の 破壞)의 罪, 同法 第24章 殺人の 罪중 第250條第1項(殺人)·第252條(부탁, 承諾에 依한 殺人等)·第253條(偽計等に 依한 囑託殺人等)·第255條(豫備, 陰謀)의 罪, 同法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중 第314條(業務妨害)·第315條(競賣, 入札의 妨害)의 罪, 同法 第38章 竊盜</p>

현행	순화안
<p>竊盜와 強盜의 罪중 第333條(竊盜)·第334條(特殊強盜)·第335條(준강도)·第336條(약취강도)·第337條(強盜傷害, 致傷)·第339條(強盜強姦)·第340條第1項(海上強盜) 및 第2項(海上強盜傷害, 致傷)·第341條(常習犯)·第343條(豫備, 陰謀)의 罪를 犯한 者.</p> <p>2. 이 法 第2條 또는 第3條의 罪를 犯한 者.</p> <p>③他人에게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할 것을 強要하거나 勸誘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④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여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金品을 모집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 5 條 (團體등의 이용·지원) ①第4條第1項의 團體나 集團을 利用하여 이 法 또는 其他 刑罰法規에 規定된 罪를 犯하게 한 者는 그 罪에 對한 刑中 가장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p> <p>②第4條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로서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資金을 제공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 7 條 (虞犯者) 正當한 理由없이 이 法에 規定된 犯罪에 供用될 憂慮가 있는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거나 提供 또는 斡旋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와 強盜의 罪중 第333條(強盜)·第334條(特殊強盜)·第335條(준강도)·第336條(약취강도)·第337條(強盜傷害, 致傷)·第339條(強盜強姦)·第340條第1項(海上強盜) 및 第2項(海上強盜傷害, 致傷)·第341條(常習犯)·第343條(豫備, 陰謀)의 罪를 犯한 者.</p> <p>2. 이 法 第2條 또는 第3條의 罪를 犯한 者.</p> <p>③他人에게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할 것을 強要하거나 부추긴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④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여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金品을 모집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 5 條 (團體등의 이용·지원) ①第4條第1項의 團體나 集團을 利用하여 이 法 또는 그 밖의 刑罰法規에 規定된 罪를 犯하게 한 者는 그 罪에 對한 刑中 가장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p> <p>②第4條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만들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가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의 만들고 유지하기 위하여 資金을 제공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 7 條 (虞犯者) 正當한 理由없이 이 法에 規定된 犯罪에 제공될 걱정이 있는 兇器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보이거나 提供 또는 斡旋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8條 (正當防衛等) ①이 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u>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等</u>으로 사람에게 危害를 加하거나 加하려 할 때 이를 豫防 또는 防衛하기 위하여 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p> <p>②第1項의 境遇에 防衛行爲가 <u>그 程度를 超過한 때</u>에는 그 刑을 減輕한다.</p> <p>③第2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u>夜間 其他 不安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驚愕·興奮 또는 唐慌</u>으로 因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p> <p>第9條 (司法警察官吏의 職務遺棄) ① <u>司法警察官吏로서</u> 이 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를 搜查하지 아니하거나 犯人을 알면서 이를 逮捕하지 아니하거나 搜查上 情報를 <u>漏洩하여</u> 犯人의 <u>逃走를 容易하게</u> 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p> <p>②<u>賂物의 收受要求</u> 또는 約束을 하고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p> <p>第10條 (司法警察官吏의 行政的 責任) ①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第2條 乃至 第6條의 犯罪가 <u>發生하였음에도 不拘</u>하고 이를 그에게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그 搜查를 <u>怠慢히</u> 하거나 또는 <u>搜查能力不足 其他의 理由로써 司法警察官吏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者에 對하여</u>는 그 任命權者에게 當該 司法警察官吏의 懲戒, 解任 또는 替任을 要求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要求가 있을 境遇에는 任命權者는 2週日以內에 當該 司法警察官吏에 對하여 行政處分을 한 後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通報하여야 한다.</p>	<p>第8條 (正當防衛等) ①이 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u>兇器 그 밖의 危險한 物件等</u>으로 사람에게 危害를 加하거나 加하려 할 때 이를 豫防 또는 防衛하기 위하여 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p> <p>②第1項의 境遇에 防衛行爲가 <u>그 정도를 넘는 때</u>에는 그 刑을 減輕한다.</p> <p>③第2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u>夜間 그 밖의 不安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驚愕·興奮 또는 唐慌</u>으로 因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p> <p>第9條 (司法警察官吏가 職務遺棄) ① <u>司法警察官吏가</u> 이 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를 搜查하지 아니하거나 犯人을 알면서 이를 逮捕하지 아니하거나 搜查上 情報를 <u>알려서</u> 犯人의 <u>도망을 쉽게</u> 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p> <p>②<u>賂物의 收受要求</u> 또는 約束을 하고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p> <p>第10條 (司法警察官吏의 行政的 責任) ①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第2條부터 第6條의 犯罪가 <u>發生하였는데도</u> 이를 그에게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그 搜查를 <u>게을리</u> 하거나 또는 <u>搜查能力不足 그 밖의 理由 때문에 司法警察官吏로서 不適當하다고 보여지는 자에게는</u> 그 任命權者에게 해당 司法警察官吏의 懲戒, 解任 또는 替任을 要求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要求가 있으면 任命權者는 2週日以內에 <u>당해 司法警察官吏에게</u> 行政處分을 한 後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通報하여야 한다.</p>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1條 (目的) 이 법은 刑法·關稅法·租稅犯處罰法·山林法 및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에 規定된 特定犯罪에 대한 <u>加重處罰等을 規定함으로써</u> 健全한 社會秩序의 維持와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賂物罪의 加重處罰) ①刑法第129條·第130條 또는 第132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그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賂物의 價額(이하 本條에서 “<u>收賂額</u>”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p> <p>1. 收賂額이 5千萬元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收賂額이 1千萬元이상 5千萬元미만인 때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削 除 <1990.12.31></p> <p>第3條 (斡旋收財) <u>公務員의 職務에 속한 事項의 알선에 관하여</u> 金品이나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元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4條 (賂物罪適用對象의 擴大)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團體(이하 “<u>企業體</u>”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企業體(이하 “<u>政府管理企業體</u>”라 한다)의 幹部職員은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p> <p>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資本金의 2分の 1</p>	<p>第1條 (目的) 이 법은 刑法·關稅法·租稅犯處罰法·山林法 및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에 規定된 特定犯罪에 대한 <u>加重處罰等을 規定하여</u> 健全한 社會秩序의 維持와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賂物罪의 加重處罰) ①刑法第129條·第130條 또는 第132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그 <u>받은</u>·要求 또는 約束한 賂物의 價額(이하 本條에서 “<u>收賂額</u>”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p> <p>1. 收賂額이 5千萬元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收賂額이 1千萬元이상 5千萬元미만인 때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削 除 <1990.12.31></p> <p>第3條 (斡旋收財) <u>公務員이 職務에 속한 事項을 알선하면서</u> 金品이나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元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4條 (賂物罪適用對象을 擴大)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團體(이하 “<u>企業體</u>”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企業體(이하 “<u>政府管理企業體</u>”라 한다)의 幹部職員은 刑法第129條부터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p> <p>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資本金의 2分の 1</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	순 화 안
<p>이상을 出資하였거나 出捐金·補助金등 그 財政支援의 규모가 그 企業體 基本財産의 2分の 1이상인 企業體.</p> <p>2. 國民經濟 및 産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業務의 公共性이 현저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導·監督하거나 株主權의 행사등을 통하여 重要사업의 決定 및 任員의 任免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實質的인 支配力을 행사하고 있는 企業體.</p> <p>②第1項의 幹部職員의 범위는 企業體의 設立目的, 資産, 職員의 규모 및 해당 職員의 구체적인 業務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全文改正1995.12.29]</p> <p>第 4 條의2 (逮捕·監禁等の 加重處罰) ①刑法 第124條·第125條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사람을 致傷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刑法 第124條, 第125條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사람을 致死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83.12.31]</p> <p>第 4 條의3 (公務上 秘密漏泄의 加重處罰) 國會法 第5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本條新設 1994.6.28]</p> <p>第 5 條 (國庫등 損失) 會計關係職員等의 責任에關한法律 第2條第1號·第2號 또는 第4號(第1號 또는 第2號에</p>	<p>이상을 出資하였거나 出捐金·補助金등 그 財政支援의 규모가 그 企業體 基本財産의 2分の 1이상인 企業體.</p> <p>2. 國民經濟 및 産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業務의 公共性이 현저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導·監督하거나 株主權을 행사하는 등을 통하여 重要사업의 決定 및 任員의 任免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實質的인 支配力을 행사하고 있는 企業體.</p> <p>②第1項의 幹部職員의 범위는 企業體의 設立目的, 資産, 職員의 규모 및 해당 職員의 구체적인 業務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全文改正1995.12.29]</p> <p>第 4 條의2 (逮捕·監禁等の 加重處罰) ①刑法 第124條·第125條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刑法 第124條, 第125條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83.12.31]</p> <p>第 4 條의3 (公務上 秘密漏泄의 加重處罰) 國會法 第54條의2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本條新設 1994.6.28]</p> <p>第 5 條 (國庫등 損失) 會計關係職員等의 責任에關한法律 第2條第1號·第2號 또는 第4號(第1號 또는 第2號에</p>

현행	순화안
<p>規定된 者의 補助者로서 그 會計事務의 일부를 처리하는 者에 한한다)에 規定된 者도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損失을 미칠 것을 認識하고 그 職務에 관하여 刑法 第355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u>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失이 5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失이 5千萬원이상 5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p>第5條의2 (略取·誘引罪의 加重處罰) ①刑法 第287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略取 또는 誘引한 目的에 따라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의 父母 기타 그 未成年者의 <u>安全을 念慮하는 者의 憂慮를 利用하여</u>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할 目的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殺害할 目的인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p>②刑法 第287條의 罪를 犯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의 父母 기타 그 未成年者의 <u>安全을 念慮하는 者의 憂慮를 利用하여</u>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이를 要求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p>規定된 者의 補助者가 그 會計事務의 일부를 처리하는 者에 한한다)에 規定된 者도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損失을 미칠 것을 認識하고 그 職務에 관하여 刑法 第355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加重處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失이 5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失이 5千萬원이상 5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p>第5條의2 (略取·誘引罪의 加重處罰) ①刑法 第287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略取 또는 誘引한 目的에 따라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의 父母 <u>그 이외 그 未成年者의 安全을 檢정하는 자의 심리를 利用하여</u>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할 目的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殺害할 目的인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p>②刑法 第287條의 罪를 犯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의 父母 <u>그 이외의 그 未成年者의 安全을 念慮하는 者의 憂慮를 利用하여</u>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이를 要求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3.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暴行·傷害·監禁 또는 遺棄하거나 그 未成年者에게 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4. 第3號의 罪를 犯하여 未成年者를 致死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한 者를 幫助하여 略取 또는 誘引된 未成年者를 隱匿 기타의 方法으로 歸家하지 못하게 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④刑法 第288條·第289條 또는 第292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⑤常習으로 第4項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 정한 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p> <p>⑥第1項·第2項(第2項第4號를 제외한다) 및 第4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⑦第1項 내지 第6項의 罪를 범한 者를 은닉 또는 逃避하게 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⑧第1項, 第2項第1號·第2號 또는 第4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73.2.24]</p> <p>第5條의3 (逃走車輛運轉者의 加重處罰)</p> <p>①道路交通法 第2條에 규정된 自動車·原動機裝置自轉車 또는 軌道車의 交通으로 인하여 刑法 第268條의 罪를 犯한 當해 車輛의 運轉者(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道路交通法 第50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하고 逃走한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p>	<p>3.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暴行·傷害·監禁 또는 遺棄하거나 그 未成年者에게 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4. 第3號의 罪를 犯하여 未成年者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한 者를 幫助하여 略取 또는 誘引된 未成年者를 숨기거나 다른 方法으로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한 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④刑法 第288條·第289條 또는 第292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⑤常習으로 第4項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 정한 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p> <p>⑥第1項·第2項(第2項第4號를 제외한다) 및 第4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⑦第1項부터 第6項의 罪를 범한 者를 은닉 또는 도망시킨 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⑧第1項, 第2項第1號·第2號 또는 第4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73.2.24]</p> <p>第5條의3 (逃走車輛運轉者의 加重處罰)</p> <p>①道路交通法 第2條에 규정된 自動車·原動機裝置自轉車 또는 軌道車가 다니다가 刑法 第268條의 罪를 犯한 해당 車輛의 運轉者(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道路交通法 第50條第1項에서 규정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하고 逃走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加重處罰한다.</p>

현행	순화안
<p>1. 被害者を 致死하고 逃走하거나, 逃走後에 被害者が 死亡한 때에는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被害者を 致傷한 때에는 1년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事故運轉者が 被害者を 事故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逃走한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p> <p>1. 被害者を 致死하고 逃走하거나 逃走後에 被害者が 死亡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被害者を 致傷한 때에는 3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73.2.24]</p>	<p>1. 被害者を 致死하고 도망하거나, 도망후에 被害者が 死亡한 때에는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被害者を 致傷한 때에는 1년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事故運轉者が 被害者を 事故場所로부터 옮겨 버리고 도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加重處罰한다.</p> <p>1. 被害者を 致死하고 도망하거나 도망후에 被害者が 死亡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被害者を 致傷한 때에는 3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73.2.24]</p>
<p>第 5 條의4 (常習強·竊盜罪등의 加重處罰) ①常習으로 刑法 第329條 내지 第331條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②5人 이상이 共同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③常習으로 刑法 第333條·第334條·第336條·第340條第1項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④刑法 第363條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⑤刑法 第329條 내지 第331條와 第333條 내지 第336條·第340條·第362條의 罪 또는 그 未遂罪로 3회 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 이들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도 第1項 내지 第4項과 같다.</p> <p>[本條新設 1980.12.18]</p>	<p>第 5 條의4 (常習強·竊盜罪등의 加重處罰) ①常習으로 刑法 第329條부터 第331條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②5人 이상이 共同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③常習으로 刑法 第333條·第334條·第336條·第340條第1項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④刑法 第363條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⑤刑法 第329條 내지 第331條와 第333條 내지 第336條·第340條·第362條의 罪 또는 그 未遂罪로 3회 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가 다시 이들 罪를 犯하여 누범으로 處罰할 경우도 第1項부터 第4項까지와 같다.</p> <p>[本條新設 1980.12.18]</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	순 화 안
<p>第 5 條의5 (強盜傷害등 再犯者의 加重處罰) 刑法 第337條·第339條의 罪 또는 그 未遂罪로 刑을 받아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를 받은 후 3年내에 다시 이들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80.12.18]</p>	<p>第 5 條의5 (強盜傷害등 再犯者를 加重處罰) 刑法 第337條·第339條의 罪 또는 그 未遂罪로 刑을 받아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를 받은 후 3年내에 다시 이들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本條新設 1980.12.18]</p>
<p>第 5 條의8 (團體등의 組織) 他人의 財物을 竊取할 目的으로 團體 또는 集團을 構成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首魁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幹部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3. 加入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p>[本條新設 1980.12.18] [제5조의7에서 이동<1990.12.31>]</p>	<p>第 5 條의8 (團體등을 組織) 他人의 財物을 竊取할 目的으로 團體 또는 集團을 만든 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두머리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幹部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3. 加入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p>[本條新設 1980.12.18] [제5조의7에서 이동<1990.12.31>]</p>
<p>第 5 條의9 (報復犯罪의 加重處罰등)</p> <p>①刑法 第250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가 자기 또는 他人의 刑事事件의 搜查 또는 裁判과 관련하여 告訴·告發등 “<u>搜查端緒의 제공</u>”, 陳述, 證言 또는 資料提出에 대한 報復의 目的인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告訴·告發등 <u>搜查端緒의 제공</u>, 陳述, 證言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告訴·告發을 取消하게 하거나 虛偽의 陳述·證言·資料提出을 하게 할 目的인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刑法 第257條第1項·第260條第1項·第276條第1項 또는 第283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가 第1項의 目的인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 5 條의9 (報復犯罪를 加重處罰등)</p> <p>①刑法 第250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가 자기 또는 他人의 刑事事件의 搜查 또는 裁判과 관련하여 告訴·告發등 “<u>搜查端緒를 제공</u>”, 陳述, 證言 또는 資料提出에 대한 報復의 目的인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告訴·告發등 <u>搜查端緒를 제공</u>, 陳述, 證言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告訴·告發을 取消하게 하거나 虛偽의 陳述·證言·資料提出을 하게 할 目的인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刑法 第257條第1項·第260條第1項·第276條第1項 또는 第283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가 第1項의 目的인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현행	순화안
<p>③第2項의 罪중 刑法 第257條第1項·第260條第1項 또는 第276條第1項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致死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④자기 또는 他人의 刑事事件의 搜查 또는 裁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者 또는 그 親族에게 正当한 사유없이 面談을 强要하거나 威力을 보인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本條新設 1990.12.31]</p> <p>第6條 (關稅法違反行爲의 加重處罰)</p> <p>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加重處罰한다.</p> <p>1. 輸出 또는 輸入한 物品의 價額 (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千萬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物品價額이 1千萬원이상 5千萬원 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加重處罰한다.</p> <p>1. 輸入한 物品原價가 5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輸入한 物品原價가 2億원이상 5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로서 輸出 또는 返送한 物品原價가 2億원이상인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③第2項의 罪중 刑法 第257條第1項·第260條第1項 또는 第276條第1項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시킬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④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刑事事件의 搜查 또는 裁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者 또는 그 親族에게 正当한 사유없이 面談을 强要하거나 威力을 보인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本條新設 1990.12.31]</p> <p>第6條 (關稅法違反行爲의 加重處罰)</p> <p>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加重處罰한다.</p> <p>1. 輸出 또는 輸入한 物品의 價額 (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千萬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物品價額이 1千萬원이상 5千萬원 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加重處罰한다.</p> <p>1. 輸入한 物品原價가 5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輸入한 物品原價가 2億원이상 5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輸出 또는 返送한 物品原價가 2億원이상인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u>다음의 구분에 따라</u> 加重處罰한다.</p> <p>1. 逋脫·減免·免脫 또는 還給받은 稅額이 1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逋脫·減免·免脫 또는 還給받은 稅額이 2千萬원이상 1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加重處罰한다.</p> <p>⑦관세법 제271조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u>第1項 내지 第6項의 예에 의한 그 正犯 또는 本罪에 준하여</u> 處罰한다.</p> <p>⑧團體 또는 集團을 <u>구성하거나 常習으로</u>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全文改正 1997.8.22]</p> <p>第7條 (關係公務員의 武器使用) 關稅法違反事犯을 團束할 權限있는 公務員은 海上에서 關稅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停止命令을 받고 <u>逃避하는</u> 경우에 이를 制止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u>있는</u> 때에는 銃器를 사용할 수 있다.</p> <p>第8條 (租稅逋脫의 加重處罰) ①租稅犯處罰法 第9條第1項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u>다음의 區分에 따라</u> 加重處罰한다.</p>	<p>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u> 加重處罰한다.</p> <p>1. 逋脫·減免·免脫 또는 <u>돌려받을</u> 稅액이 1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逋脫·減免·免脫 또는 <u>돌려받을</u> 稅액이 2千萬원이상 1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加重處罰한다.</p> <p>⑦관세법 제271조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u>第1項부터 第6項의 예에 의한 그 正犯 또는 本罪에 준하여</u> 處罰한다.</p> <p>⑧團體 또는 集團을 <u>만들거나</u> 관세법 제269조 부터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規定된 罪를 <u>상습으로</u> 犯한 者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全文改正 1997.8.22]</p> <p>第7條 (關係公務員의 武器使用) 關稅法違反事犯을 團束할 權限있는 公務員은 海上에서 關稅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停止命令을 받고 <u>도망하는</u> 경우에 이를 制止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u>있으면</u> 銃器를 사용할 수 있다.</p> <p>第8條 (租稅逋脫의 加重處罰) ①租稅犯處罰法 第9條第1項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u> 加重處罰한다.</p>

현행	순화안
<p>第9條 (山林法 違反行爲의 加重處罰) ①山林法 第116條·第118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u>다음의 區分에 따라</u> 加重處罰한다. 1. 林産物의 原産地價額이 1千萬元 이상이거나 山林毀損面積이 5萬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林産物의 原産地價額이 100萬元 이상 1千萬元미만이거나 山林毀損面積이 5千제곱미터이상 5萬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山林法 第117條·第119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全文改正 1980.12.18]</p>	<p>第9條 (山林法 違反行爲의 加重處罰) ①山林法 第116條·第118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u> 加重處罰한다. 1. 林産物의 原産地價額이 1千萬元 이상이거나 山林毀損面積이 5萬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林産物의 原産地價額이 100萬元 이상 1千萬元미만이거나 山林毀損面積이 5千제곱미터이상 5萬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山林法 第117條·第119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全文改正 1980.12.18]</p>
<p>第10條 (<u>通貨僞造</u>의 加重處罰) 刑法 第207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第10條 (<u>通貨僞造를</u> 加重處罰) 刑法 第207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第11條 (<u>麻藥事犯</u>의 加重處罰) ①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 第58條중 麻藥과 관련된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②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 第59條·第60條중 麻藥과 관련된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u>다음의 區分에 따라</u> 加重處罰한다. 1. 所持·栽培·사용등을 행한 麻藥의 價額(이하 이 條에서 “價額”이라 한다)이 500萬원이상인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第11條 (<u>麻藥事犯을</u> 加重處罰) ①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 第58條중 麻藥과 관련된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②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 第59條·第60條중 麻藥과 관련된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u> 加重處罰한다. 1. 所持·栽培·사용등을 행한 麻藥의 價額(이하 이 條에서 “價額”이라 한다)이 500萬원이상인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2. 價額이 50萬원이상 500萬원未滿인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懲役に 處한다.</p> <p>[全文改正 1980.12.18]</p> <p>第12條 (外國人을 위한 脫法行爲) 外國人에 의한 取得이 금지 또는 制限된 財産權을 外國人을 위하여 外國人의 資金으로 取得한 者는 <u>다음의 區分에 따라</u> 處罰한다.</p> <p>1. 財産權의 價額이 1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財産權의 價額이 1億원미만인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14條 (誣告罪) 이 法에 規定된 罪에 대하여 刑法 第156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15條 (特殊職務遺棄) 犯罪搜查의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를 <u>認知하고</u>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16條 (訴追에 관한 特例) 第6條 및 第8條의 罪에 대한 公訴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要하지 아니한다.</p>	<p>2. 價額이 50萬원이상 500萬원未滿인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懲役に 處한다.</p> <p>[全文改正 1980.12.18]</p> <p>第12條 (外國人을 위한 脫法行爲) 外國人에 의한 取得이 금지 또는 制限된 財産權을 外國人을 위하여 外國人의 資金으로 取得한 者는 <u>다음과 같이 구별하여</u> 處罰한다.</p> <p>1. 財産權의 價額이 1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財産權의 價額이 1億원미만인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14條 (誣告罪) 이 法에 規定된 罪에 대하여 刑法 第156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15條 (特殊職務遺棄) 犯罪搜查의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를 <u>알게되면</u>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16條 (공소제기의 特례) 第6條 및 第8條의 罪에 대한 公訴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要하지 아니한다.</p>

4.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1條 (目的) 이 법은 사람의 生命·身體, 上水源 또는 自然生態系등에 有害한 環境汚染 또는 環境毀損을 초래하는 행위를 加重處罰하고, 그에 대한 行政處分을 強化함으로써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다.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u>내지</u>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p> <p>다. 廢棄物管理法 第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場廢棄物을 버리거나 埋立하는 행위.</p> <p>아.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毒物을 관리함으로써 有毒物을 排出·漏出하는 행위.</p> <p>자. 악취방지법 제15조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p> <p>차. 大氣環境保全法 第8條 또는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p> <p>마. 土壤環境保全法 제2조제4호의 規定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p> <p>4. “營業”이라 함은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業을 말한다.</p> <p>가. 水質環境保全法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p>	<p>第1條 (目的) 이 법은 사람의 生命·身體, 上水源 또는 自然生態系등에 有害한 環境汚染 또는 環境毀損을 초래하는 행위를 加重處罰하고, 그에 대한 行政處分을 強化하여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다.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u>부터</u> 第3號에서 규정된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p> <p>다. 廢棄物管理法 第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場廢棄物을 버리거나 묻어버리는 행위.</p> <p>아.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毒物을 관리하면서 有毒物을 排出·漏出하는 행위.</p> <p>자. 악취방지법 제15조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p> <p>차. 大氣環境保全法 第8條 또는 第13條第4項에서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p> <p>마. 土壤環境保全法 제2조제4호에서 규정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p> <p>4. “營業”이라 함은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業을 말한다.</p> <p>가. 水質環境保全法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p>

【부록】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나. <u>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u></p> <p>다. <u>廢棄物管理法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u></p> <p>라. <u>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처리에 관한法律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등 關聯營業.</u></p> <p>마. <u>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골프場業 및 스키場業.</u></p> <p>바. <u>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u></p> <p>사. <u>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숙박업.</u></p> <p>아. <u>觀光振興法 第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宿泊業.</u></p> <p>자. <u>骨材採取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業.</u></p> <p>5. “不法排出施設”이라 함은 다음 각目の 1에 해당하는 施設을 말한다.</p> <p>가. <u>第3號 各目的 法律에 의하여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申告를 하여야 하는 排出施設로서許可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排出施設.</u></p> <p>나. <u>第3號 各目的 法律에 의하여許可 또는 승인이 取消되거나(許可 또는 승인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閉鎖命令을 받은 후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排出施設.</u></p> <p>다. <u>第4號 各目的 法律에 의한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u></p>	<p>나. <u>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서 규정된 有毒物營業 및 同法 第20條에서 規定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u></p> <p>다. <u>廢棄物管理法 第26條第4項에서 규정한 棄物處理業.</u></p> <p>라. <u>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처리에 관한法律 第35條第2項에서 규정된 의한 糞尿등 關聯營業.</u></p> <p>마. <u>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第1號에서 규정된 골프場業 및 스키場業.</u></p> <p>바. <u>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u></p> <p>사. <u>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숙박업.</u></p> <p>아. <u>觀光振興法 第3條第1項第2號에서 규정한 觀光宿泊業.</u></p> <p>자. <u>骨材採取法 第2條第2號에서 규정된 骨材採取業.</u></p> <p>5. “不法排出施設”이라 함은 다음 각目の 1에 해당하는 施設을 말한다.</p> <p>가. <u>第3號 各目的 法律에서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申告를 하여야 하는 排出施設로서許可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排出施設.</u></p> <p>나. <u>第3號 各目的 法律에서 許可 또는 승인이 取消되거나(許可 또는 승인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閉鎖命令을 받은 후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排出施設.</u></p> <p>다. <u>第4號 各目的 法律에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그 밖의 施設物.</u></p>

현행	순화안
<p>라. <u>第4號 各目的 法律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許可가 停止된 경우를 포함한다) 閉鎖命 命을 받은 후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u></p> <p>마. <u>法律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된 地域에 設置된 排出施設 또는 營業이 금지된 地域에서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u></p> <p>바. <u>大氣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 第2號,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 항 각호의 1 또는 汚水·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8條第1項第1號·第2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u></p> <p>6. <u>“事業者”라 함은 排出施設 또는 不法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또는 營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u></p> <p>7. <u>“環境保護地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地域·區域 또는 島嶼를 말한다.</u></p> <p>가. <u>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特別對策地域.</u></p> <p>나. <u>自然環境保全法 第2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地域, 同法 第2條第13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留保地域,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臨時生態系保全地域 및 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市·道生態系保全地域.</u></p> <p>다. <u>獨島等島嶼地域의生態系保全에 관한特別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特定島嶼.</u></p>	<p>라. <u>第4號 各目的 法律에서 許可가 取消되거나(許可가 停止된 경우를 포함한다) 閉鎖命 命을 받은 후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그 밖의 施設物.</u></p> <p>마. <u>法律에서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된 地域에 設置된 排出施設 또는 營業이 금지된 地域에서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그 밖의 施設物.</u></p> <p>바. <u>大氣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 第2號,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 항 각호의 1 또는 汚水·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8條第1項第1號·第2號에서 규정한 시설.</u></p> <p>6. <u>“事業者”라 함은 排出施設 또는 不法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또는 營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u></p> <p>7. <u>“環境保護地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地域·區域 또는 섬을 말한다.</u></p> <p>가. <u>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特別對策地域.</u></p> <p>나. <u>自然環境保全法 第2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地域, 同法 第2條第13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留保地域,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臨時生態系保全地域 및 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市·道生態系保全地域.</u></p> <p>다. <u>獨島等섬지역의生態系保全에 관한特別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特定島嶼.</u></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라. <u>自然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公園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公園保護區域.</u></p> <p>마. <u>水道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公告된 上水源保護區域.</u></p> <p>바. <u>濕地保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濕地保護地域.</u></p> <p>사. <u>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u></p> <p>아. <u>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水邊區域.</u></p>	<p>라. <u>自然公園法 第2條第1號에서 규정된 自然公園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公園保護區域.</u></p> <p>마. <u>水道法 第5條에서 규정한 지정·公告된 上水源保護區域.</u></p> <p>바. <u>濕地保全法 第8條에서 규정된 지정·告示된 濕地保護地域.</u></p> <p>사. <u>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에서 규정된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u></p> <p>아. <u>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 第4條에서 규정한 지정·告示된 水邊區域.</u></p>
<p>第3條 (汚染物質 不法排出의 加重處罰)</p> <p>①汚染物質을 <u>不法排出함으로써</u> 公衆의 生命 또는 身體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上水源汚染을 초래하여 公衆의 食水使用에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第1項의 罪를 범하여 <u>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u>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③汚染物質을 <u>不法排出한 者로서</u>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거나 <u>土砂를 排出한 者로서</u> 第3號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상 7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1. 農業·畜産業·林業 또는 園藝業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土地를 당해用途로 이용할 수 없게 한 者.</p>	<p>第3條 (汚染物質 不法排出의 加重處罰)</p> <p>①汚染物質을 <u>不法排出하여</u> 公衆의 生命 또는 身體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上水源汚染을 초래하여 公衆의 食水使用에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第1項의 罪를 범하여 <u>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u>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③汚染物質을 <u>不法排出한 者</u>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거나 모래를 <u>排出한 者</u>는 第3號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상 7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1. 農業·畜産業·林業 또는 園藝業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土地를 당해用途로 이용할 수 없게 한 者.</p>

현행	순화안
<p>2. 바다·河川·湖沼 또는 地下水를 別表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汚染시킨 者.</p> <p>3. 魚貝類를 別表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集團斃死에 이르게 한 者.</p> <p>第4條 (環境保護地域 汚染行爲등의 加重處罰) ①環境保護地域에서 第3條第1項 내지 第3項의 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는 해당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할 수 있다.</p> <p>②環境保護地域에서 自然環境保全法 第20條第1項第2號(同法 第28條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獨島등 島嶼地域의 生態系保全에 관한 特別法 第8條, 自然公園法 第23條(公園區域중 自然保存地區 및 自然環境地區의 경우에 한한다), 濕地保全法 第13條 第1項第1號 또는 水道法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土地를 300제곱미터 이상 形質變更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③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하거나 第2項의 罪를 범하여 環境保護地域을 그 設定 또는 지정의 目的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5條 (過失犯) ①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3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3條第2項 또는 第4條第3項의 罪를 범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億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2. 바다·河川·<u>호수</u>는 地下水를 別表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汚染시킨 者.</p> <p>3. 魚貝類를 別表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u>集團</u>으로 죽게 한 者.</p> <p>第4條 (環境保護地域 汚染行爲등을 加重處罰) ①環境保護地域에서 第3條第1項 <u>부터</u> 第3項의 罪를 범한 者는 해당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할 수 있다.</p> <p>②環境保護地域에서 自然環境保全法 第20條第1項第2號(同法 第28條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獨島등 <u>섬</u>地域의 生態系保全에 관한 特別法 第8條, 自然公園法 第23條(公園區域중 自然保存地區 및 自然環境地區의 경우에 한한다), 濕地保全法 第13條第1項第1號 또는 水道法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土地를 300제곱미터 이상 形質變更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③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하거나 第2項의 罪를 범하여 環境保護地域을 그 設定 또는 지정의 目的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5條 (過失犯) ①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第3條第1項에서 규정된 죄를 범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第3條第2項 또는 第4條第3項에서 규정된 죄를 범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億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③<u>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3條第3項의 罪를 범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千萬元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p> <p>제 6 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p> <p>[전문개정 2004.2.9]</p> <p>第 7 條 (廢棄物不法處理의 加重處罰) 團體 또는 集團이 營利를 目的으로 廢棄物管理法 第58條의2의 罪를 범한 者는 2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하고 廢棄物의 投棄 또는 埋立으로 인하여 취득한 價額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併科한다.</p> <p>第 8 條 (累犯의 加重) 第3條 내지 第5條 또는 第7條의 罪로 禁錮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3年내에 第3條第1項, 第4條第3項 또는 第7條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이 경우 第7條의 罪를 범한 者는 廢棄物의 投棄 또는 埋立으로 인하여 취득한 價額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併科한다.</p> <p>第 9 條 (命令不履行者에 대한 處罰등) ①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撤去命令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③<u>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第3條第3項에서 規정한 罪를 범한 자는 3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千萬元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p> <p>제 6 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68조제1호부터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p> <p>[전문개정 2004.2.9]</p> <p>第 7 條 (廢棄物不法處理의 加重處罰) 團體 또는 集團이 營利를 目的으로 廢棄物管理法 第58條의2의 罪를 범한 者는 2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하고 廢棄物의 投棄 또는 몰어서 얻은 價額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併科한다.</p> <p>第 8 條 (累犯의 加重) 第3條 내지 第5條 또는 第7條의 罪로 禁錮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3年내에 第3條第1項, 第4條第3項 또는 第7條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이 경우 第7條의 罪를 범한 者는 廢棄物의 投棄 또는 파몰어 얻게된 價額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併科한다.</p> <p>第 9 條 (命令不履行者에 대한 處罰등) ①第13條第1項에서 規정한 命令(撤去命令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현행	순화안
<p>②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撤去命令을 위반한 者 또는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標識板을 제거·훼손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1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5條 내지 第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p>第11條 (推定) 汚染物質을 사람의 生命·身體, 上水源 또는 自然生態系등 (이하 “生命·身體등”이라 한다)에 위험(第3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不法排出한 事業者가 있는 경우 그 物質의 不法排出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地域안에서 同種의 物質에 의하여 生命·身體등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不法排出과 발생한 위험 사이에 상당한 蓋然性이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 事業者가 不法排出한 物質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推定한다.</p> <p>第12條 (課徵金) ①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이하 “特定汚染物質”이라 한다)을 不法排出(第2條第2號 各目 내지 各目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事業者에 대하여 不法排出利益(不法排出한 때부터 摘發된 때까지 特定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함으로써 支出하지 아니하게 된 當해 特定汚染物質의 處理費用을 말한다.</p>	<p>②第13條第1項에서 규정된 撤去命令을 위반한 者 또는 第13條第4項에서 규정에 따라서 設置된 標識板을 제거·훼손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1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사용인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5條 내지 第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p>第11條 (推定) 汚染物質을 사람의 生命·身體, 上水源 또는 自然生態系등 (이하 “生命·身體등”이라 한다)에 위험(第3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不法排出한 事業者가 있는 경우 그 物質을 不法排出하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地域안에서 同種의 物質 때문에 生命·身體등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不法排出과 발생한 위험 사이에 상당한 蓋然性이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 事業者가 不法排出한 物質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推定한다.</p> <p>第12條 (課徵金) ①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이하 “特定汚染物質”이라 한다)을 不法排出(第2條第2號 各目 내지 各目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事業者에게 不法排出利益(不法排出한 때부터 摘發된 때까지 特定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함으로써 支出하지 아니하게 된 當해 特定汚染物質의 處理費用을 말한다. 이하</p>

【부록】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이하 같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과 <u>特定汚染物質의 제거 및 原狀回復에 소요되는 費用(이하 “淨化費用”이라 한다)을 課徵金으로 賦課·徵收한다.</u></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法排出利益을 算定함에 있어 <u>不法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한 날부터 不法排出이 摘發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特定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한 것으로 推定한다.</u></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함에 있어서 水質環境保全法 第19條, 大氣環境保全法 第19條 또는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이 賦課된 경우에는 不法排出한 때부터 摘發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排出賦課金の 금액을 課徵金에서 減額한다.</p> <p>④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罰金이 併科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淨化費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위반횟수, 特定汚染物質의 종류 및 不法排出期間등을 고려하여 算定하되, 구체적인 算定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⑥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の 賦課處分을 받은 자가 課徵金を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p> <p>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p>	<p>같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과 <u>特定汚染物質을 제거 및 原狀回復에 소요되는 費用(이하 “淨化費用”이라 한다)을 課徵金으로 賦課·徵收한다.</u></p> <p>②第1項에서 규정된 不法排出利益을 算定함에 있어 <u>不法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한 날부터 不法排出이 摘發된 때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特定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한 것으로 推定한다.</u></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함에 있어서 水質環境保全法 第19條, 大氣環境保全法 第19條 또는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이 賦課된 경우에는 不法排出한 때부터 摘發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排出賦課金の 금액을 課徵金에서 減額한다.</p> <p>④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第7條에서 규정된 罰金이 併科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淨化費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第1項에서 규정된 課徵金은 위반횟수, 特定汚染物質의 종류 및 不法排出期間등을 고려하여 算定하되, 구체적인 算定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⑥環境部長官은 第1項에서 규정된 課徵金の 賦課處分을 받은 자가 課徵金を 期限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p> <p>⑦第1項에서 규정된 課徵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p>

현행	순화안
<p>⑧環境部長官은 <u>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u>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課徵金の 賦課·徵收에 관한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徵收된 課徵金の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p> <p>第13條 (代執行등) ①環境部長官은 不法排出施設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u>당해施設의 사용중지·撤去 또는 閉鎖</u>를 명할 수 있다.</p> <p>②不法排出施設이 第2條第4號 바目 내지 아目的 規定에 의한 營業을 영위하는 施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당해</u> 不法排出施設이 다음 各號의 1의 地域에 <u>所在하는</u> 경우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環境保護地域. 2. 湖沼水質管理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湖沼水質保全區域. 3. 河川(河川法 第2條第1號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과 小河川整備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을 말한다)·<u>湖沼</u>(湖沼水質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湖沼를 말한다)·<u>바다</u>(水路業務法 第5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海岸線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境界로부터 直線距離 500m 이내인 地域. <p>③環境部長官은 <u>第1項의 規定에 의한</u> 不法排出施設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撤去命令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하고 그 費用을 所有者 또는 占有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p>	<p>⑧環境部長官은 第19條에서 규정된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課徵金の 賦課·徵收에 관한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徵收된 課徵金の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p> <p>第13條 (代執行등) ①環境部長官은 不法排出施設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u>해당施設을 사용중지·撤去 또는 閉鎖</u>를 명할 수 있다.</p> <p>②不法排出施設이 第2條第4號 바目 내지 아目的 規定에 의한 營業을 영위하는 施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해당</u> 不法排出施設이 다음 各號의 1의 地域에 <u>所在하는</u> 경우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環境保護地域. 2. 湖沼水質管理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湖沼水質保全區域. 3. 河川(河川法 第2條第1號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과 小河川整備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을 말한다)·<u>호수</u>(湖沼水質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湖沼를 말한다)·<u>바다</u>(水路業務法 第5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海岸線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境界로부터 直線距離 500m 이내인 地域. <p>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에서 규정된 不法排出施設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撤去命令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하고 그 費用을 所有者 또는 占有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法排出施設에 대한 撤去命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不法排出施設 또는 그 事業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標識板을 設置하여야 한다.</p> <p>第14條 (行政處分效果의 承繼) 事業者가 不法排出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併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事業者에 대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行政處分의 效果는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새로이 設立되는 法人에 承繼된다.</p> <p>第15條 (賞金)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發覺전에 搜查機關 또는 環境部長官, 地方環境官署의 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通報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p> <p>第16條 (事業場의 出入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2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을 하기 위하여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不法排出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汚染物質을 採取하거나 關係書類·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p> <p>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染物質을 採取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에 그 汚染度檢査를 의뢰할 수 있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에서 규정된 不法排出施設에 대한 撤去命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不法排出施設 또는 그 事業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標識板을 設置하여야 한다.</p> <p>第14條 (行政處分效果를 이어 받은) 事業者가 不法排出施設을 넘겨주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併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事業者에 대하여 第13條의 規定에 따라서 행한 行政處分의 效果는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새로이 設立되는 法人에 承繼된다.</p> <p>第15條 (賞金)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發覺전에 搜查機關 또는 環境部長官, 地方環境官署의 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알린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p> <p>第16條 (事業場의 出入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2條 또는 第13條에 規定된 行政處分을 하기 위하여 關係公務員에게 不法排出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들어가서 汚染物質을 찾아 내거나 關係書類·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p> <p>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에서 규정된 汚染物質을 採取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에 그 汚染度檢査를 의뢰할 수 있다.</p> <p>③第1項에서 규정된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현행	순화안
<p>第17條 (關係機關의 協助) 環境部長官은 關係機關의 長에게 이 法에 의한 行政處分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第18條 (資料의 電算管理)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犯罪의 團束 및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電算管理할 수 있다.</p> <p>第19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第17條 (關係機關을 協助) 環境部長官은 關係機關의 長에게 이 法에서 行政處分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p> <p>第18條 (資料의 電算管理)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서 규정한 犯罪의 團束 및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電算管理할 수 있다.</p> <p>第19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서 규정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p>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1條 (目的) 이 법은 性暴力犯罪을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그 節次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人權伸張과 건강한 社會秩序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性暴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p> <p>1. 刑法 第22章 性風俗에 관한 罪중 第242條(淫行媒介)·第243條(淫書等의 頒布等)·第244條(淫書等의 製造等) 및 第245條(公然淫亂)의 罪.</p> <p>5. 이 법 第5條(特殊強盜強姦等) 내지 第14條의2(카메라등利用撮影)의 罪.</p> <p>②第1項 各號의 犯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罪는 性暴力犯罪로 본다.</p> <p>第3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p> <p>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犯罪을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有害環境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필요한 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p> <p>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을 건전하게 育成하기 위하여 靑少年에 대한 性教育 및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教育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에 대한 性教育 및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教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條 (目的) 이 법은 性暴力犯罪을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그 節次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人權伸張과 건강한 社會秩序를 확립할 것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性暴力犯罪”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p> <p>1. 刑法 第22章 性風俗에 관한 罪중 第242條(淫行媒介)·第243條(淫書等의 頒布等)·第244條(淫書等의 製造等) 및 第245條(公然淫亂)의 罪.</p> <p>5. 이 법 第5條(特殊強盜強姦等) 부터 第14條의2(카메라등利用撮影)의 罪.</p> <p>②第1項 各號의 犯罪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罪는 性暴力犯罪로 본다.</p> <p>第3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p> <p>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犯罪을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有害環境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필요한 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p> <p>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을 건전하게 育成하기 위하여 靑少年에 대한 性教育 및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教育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第2項에서 規정한 靑少年에 대한 性教育 및 性暴力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教育과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4條 (被害者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를 고용하고 있는 者는 누구든지 性暴力犯罪와 관련하여 被害者를 害고하거나 <u>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u></p> <p>第5條 (特殊强盜强姦등) ①刑法 第319條第1項(住居侵入), 第330條(夜間住居侵入竊盜), 第331條(特殊竊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0條 및 第331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 第297條(强姦) 내지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②刑法 第334條(特殊强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4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 第297條(强姦) 내지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第6條 (特殊强盜등) ①凶器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人이상이 合同하여 刑法 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②第1項의 方法으로 刑法 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③第1項의 方法으로 刑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p> <p>④第1項의 方法으로 身體障得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女子를 姦淫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醜行한 者도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p>	<p>第4條 (被害者에게 불이익처분을 금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를 고용하고 있는 者는 누구든지 性暴力犯罪와 관련하여 被害者를 害고하거나 <u>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u></p> <p>第5條 (特殊强盜强姦등) ①刑法 第319條第1項(住居侵入), 第330條(夜間住居侵入竊盜), 第331條(特殊竊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0條 및 第331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 第297條(强姦) 내지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②刑法 第334條(特殊强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4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u>같은 법 第297條(强姦) 부터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u></p> <p>第6條 (特殊强盜등) ①凶器 <u>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보이거나</u> 2人이상이 合同하여 刑法 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②刑法 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第1項의 方法으로 범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③刑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第1項의 方法으로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p> <p>④第1項의 方法으로 身體障得로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女子를 姦淫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醜行한 者도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p>

현행	순화안
<p>第7條 (親族關係에 의한 強姦등) ① <u>親族關係에 있는 者가</u> 刑法 第297條 (強姦)의 罪를 범한 때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 <u>親族關係에 있는 者가</u> 刑法 第298條 (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③ <u>親族關係에 있는 者가</u> 刑法 第299條 (準強姦, 準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p> <p>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의 범위는 4寸이내의 血族과 2寸이내의 姻戚으로 한다.</p> <p>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은 事實상의 關係에 의한 親族을 포함한다.</p> <p>第8條 (障礙人에 대한 姦淫등) 身體 障礙 또는 <u>精神上的의 障礙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u> 女子를 姦淫하거나 <u>사람에 대하여 醜行한 者는</u> 刑法 第297條 (強姦) 또는 第298條 (強制醜行)에 정한 刑으로 處罰한다.</p> <p>第8條의2 (13歲미만의 未成年者에 대한 強姦, 強制醜行등) ① <u>13歲미만의 女子에 대하여</u> 刑法 第297條 (強姦)의 罪를 범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 <u>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u> 刑法 第298條 (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③ <u>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u> 刑法 第299條 (準強姦, 準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p>	<p>第7條 (親族關係에 의한 強姦등) ① 刑法 第297條 (強姦)의 罪를 <u>親族關係에 있는 者가</u> 범한 때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 刑法 第298條 (強制醜行)의 罪를 <u>親族關係에 있는 者가</u> 범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③ 刑法 第299條 (準強姦, 準強制醜行)의 罪를 <u>親族關係에 있는 者가</u> 범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p> <p>④ 第1項부터 第3項의 親族의 범위는 4寸이내의 血族과 2寸이내의 姻戚으로 한다.</p> <p>⑤ 第1項부터 第3項의 親族은 事實상의 關係에 의한 親族을 포함한다.</p> <p>第8條 (障礙人에 대한 姦淫등) 身體 障礙 또는 <u>精神上的의 障礙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女子를</u> 姦淫하거나 <u>사람을 醜行한 者는</u> 刑法 第297條 (強姦) 또는 第298條 (強制醜行)에 정한 刑으로 處罰한다.</p> <p>第8條의2 (13歲미만의 未成年者에 대한 強姦, 強制醜行등) ① 刑法 第297條 (強姦)의 罪를 <u>13歲미만의 女子에 대하여</u> 범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 刑法 第298條 (強制醜行)의 罪를 <u>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u> 범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③ 刑法 第299條 (準強姦, 準強制醜行)의 罪를 <u>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u>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④ <u>偽計 또는 威力으로써 13歲미만의 女子를 姦淫하거나 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醜行을 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u> [本條新設 1997.8.22]</p> <p>第9條 (强姦등 傷害·致傷) ①第5條 第1項, 第6條 또는 第12條(第5條 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u>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u> ②第7條, 第8條 또는 第12條(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u>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u></p> <p>第10條 (强姦등 殺人·致死) ①第5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5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 또는 刑法 第297條(强姦) 내지 第300條(未遂犯)의 罪를 범한 者가 <u>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u> ②第6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6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u>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u></p> <p>第11條 (業務상 威力등에 의한 醜行) ①業務·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u>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偽計 또는 威力으로써 醜行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②法律에 의하여 拘禁된 사람을 監護하는 者가 그 사람을 醜行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④ <u>偽計 또는 威力으로써 13歲미만의 女子를 姦淫하거나 13歲미만의 사람을 醜行을 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u> [本條新設 1997.8.22]</p> <p>第9條 (强姦등 傷害·致傷) ①第5條 第1項, 第6條 또는 第12條(第5條 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u>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u> ②第7條, 第8條 또는 第12條(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u>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u></p> <p>第10條 (强姦등 殺人·致死) ①第5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5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 또는 刑法 第297條(强姦)부터 第300條(未遂犯)까지의 罪를 범한 者가 <u>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u> ②第6條부터 第8條, 第12條(第6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u>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u></p> <p>第11條 (業務상 威力등으로 醜行) ①業務·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偽計 또는 威力으로써 醜行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法律에 의하여 拘禁된 사람을 監護하는 者가 그 사람을 醜行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현행	순화안
<p>第12條 (未遂犯) <u>第5條 내지 第10條 및 第14條의2의 未遂犯은 處罰한다.</u></p> <p>第13條 (公衆密集場所에서의 醜行) 대 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u>기타 公衆이 밀집하는 場所에서</u> 사람을 醜行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14條 (通信媒體利用淫亂)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性的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目的으로 전화·우편·컴퓨터 <u>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性的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圖畫, 映像 또는 물건을 相對方에게 도달하게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p> <p>第14條의2 (카메라등 利用撮影) <u>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機械裝置를 利用하여 性的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他人의 身體를 그 意思에 反하여 撮影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本條新設 1998.12.28]</p> <p>第16條 (保護觀察등) ①<u>法院이 性暴力犯罪을 범한 者에 대하여 刑의 宣告를 猶豫할 경우에는 1年동안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性暴力犯罪을 범한 者가 少年인 경우에는 반드시 保護觀察을 명하여야 한다.</u> ②<u>法院이 性暴力犯罪을 범한 者에 대하여 刑의 執行을 猶豫할 경우에는 그 執行猶豫期間내에서 일정기간동안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u></p>	<p>第12條 (未遂犯) <u>第5條부터 第10條 및 第14條의2의 未遂犯은 處罰한다.</u></p> <p>第13條 (公衆密集場所에서의 醜行) 대 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u>그 밖의 公衆이 밀집하는 場所에서</u> 사람을 醜行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14條 (通信媒體利用淫亂)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性的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目的으로 전화·우편·컴퓨터 <u>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性的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圖畫, 映像 또는 물건을 相對方에게 도달하게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p> <p>第14條의2 (카메라등 利用撮影) <u>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機械裝置를 利用하여 性的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身體를 그 意思에 反하여 撮影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本條新設 1998.12.28]</p> <p>第16條 (保護觀察등) ①<u>法院이 性暴力犯罪을 범한 者에게 刑의 宣告를 猶豫할 경우에는 1年동안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性暴力犯罪을 범한 者가 少年인 경우에는 반드시 保護觀察을 명하여야 한다.</u> ②<u>法院이 性暴力犯罪을 범한 者에게 刑의 執行을 猶豫할 경우에는 그 執行猶豫期間내에서 일정기간동안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社會</u></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併科할 수 있다. 다만, 性暴力犯罪을 범한 者가 <u>少年인 경우에는 반드시 保護觀察·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하여야 한다.</u></p> <p>③性暴力犯罪을 범한 者로서 刑의 執行중에 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동안 保護觀察을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許可한 行政官廳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保護觀察·社會奉仕 및 受講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保護觀察등에 관한法律을 準用한다.</p> <p>第17條 (保護監護) 第5條 내지 第10條 및 第12條의 罪는 社會保護法 第5條 (保護監護)의 別表에 規定된 罪로 본다.</p> <p>第19條 (告訴期間) ①性暴力犯罪중 親告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30條 (告訴期間)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犯人을 알게 된 날부터 1年을 <u>경과하면</u> 告訴하지 못한다. 다만, 告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u>起算한다.</u></p> <p>②刑事訴訟法 第230條(告訴期間)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第20條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 관한特例法의 準用) ①性暴力犯罪에 대한 處罰節次에는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 관한 特例法 第7條(證人에 대한 <u>身邊安全</u> 措置)· 第8條(出版物등으로부터의 被害者保護)· 第9條(訴訟進行의 協議)· 第12條(簡易公判節次의 決定) 및 第13條(判決宣告)의 規定을 準用한다.</p>	<p>奉仕 또는 受講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併科할 수 있다. 다만, 性暴力犯罪을 범한 者가 <u>少年에게는</u> 반드시 保護觀察·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하여야 한다.</p> <p>③性暴力犯罪을 범한 者가 刑의 執行중에 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동안 保護觀察을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許可한 行政官廳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保護觀察·社會奉仕 및 受講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保護觀察등에 관한法律을 準用한다.</p> <p>第17條 (保護監護) 第5條부터 第10條 및 第12條의 罪는 社會保護法 第5條 (保護監護)의 別表에 規定된 罪로 본다.</p> <p>第19條 (告訴期間) ①性暴力犯罪중 親告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30條 (告訴期間)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犯人을 알게 된 날부터 1年을 <u>지나면</u> 告訴하지 못한다. 다만, 告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u>계산한다.</u></p> <p>②刑事訴訟法 第230條(告訴期間)第2項의 規定은 第1項에서 規정을 이를 準用한다.</p> <p>第20條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 관한特例法을 準用) ①性暴力犯罪에 대한 處罰節次에는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 관한 特例法 第7條(證人에 대한 <u>身邊安全</u> 措置)· 第8條(出版物등으로부터의 被害者保護)· 第9條(訴訟進行의 協議)· 第12條(簡易公判節次의 決定) 및 第13條(判決宣告)의 規定을 準用한다.</p>

현행	순화안
<p>②第5條·第6條·第9條·第10條 및 第12條(第5條·第6條·第9條 및 第10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는 特定強力犯罪의 處罰에 관한 特例法 第2條(適用範圍)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強力犯罪로 본다.</p> <p>第21條 (被害者の 身元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①性暴力犯罪의 搜查 또는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關여하는 公務員은 被害者の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被害者를 特定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人的事項과 사진등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第1項에 規定된 者는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 犯罪構成事實을 제외한 被害者の 사생활에 關한 비밀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1조의2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第5條·第6條·第9條·第10條 및 第12條(第5條·第6條·第9條 및 第10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는 特定強力犯罪의 處罰에 관한 特例法 第2條(適用範圍)第1項에서 規定된 特定強力犯罪로 본다.</p> <p>第21條 (被害者の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①性暴力犯罪의 搜查 또는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關여하는 公務員은 被害者の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의 被害者를 特定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人的事項과 사진등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第1項에 規定된 者는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 犯罪構成事實을 제외한 被害者の 사생활에 關한 비밀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1조의2 (영상물을 촬영·보존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다치게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않된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④수사기관은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3.12.11]</p> <p>第22條 (審理의 非公開) ①性暴力犯罪에 대한 審理는 그 被害者의 사생활을 保護하기 위하여 決定으로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證人으로 召喚받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와 그 家族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證人訊問의 非公開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裁判長은 第2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許可與否 및 公開, 法廷외의 場所에서의 訊問등 證人의 訊問方式 및 場所에 관하여 決定할 수 있다.</p> <p>④法院組織法 第57條(裁判의 公開)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제22조의2 (전문가의 의견조회) ①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p> <p>②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를 참작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같이 있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④수사기관은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3.12.11]</p> <p>第22條 (審理를 非公開) ①性暴力犯罪을 심리할 때에는 그 被害者의 사생활을 保護하기 위하여 決定으로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證人으로 召喚받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와 그 家族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證人訊問의 非公開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裁判長은 第2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許可與否 및 公開, 法廷외의 場所에서의 訊問등 證人의 訊問方式 및 場所에 관하여 決定할 수 있다.</p> <p>④法院組織法 第57條(裁判의 公開)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제22조의2 (전문가의 의견조회) ①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p> <p>②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에서 규정한 의견조회를 참작하여야 한다.</p>

현행	순화안
<p>[본조신설 2003.12.11]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03.12.11>]</p> <p>第22條의3 (信賴關係에 있는 者등의 同席) ①法院은 第5條 내지 第9條와 第11條 및 第12條(第10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의 犯罪의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는 경우에는 檢査,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申請에 의하여 被害者와 信賴關係에 있는 者를 同席하게 할 수 있다.</p> <p>②搜查機關이 第1項의 被害者를 調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의 신청에 의하여 被害者가 지정하는 者를 同席하게 할 수 있다.</p> <p>③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21조의2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때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p> <p>[本條新設 1997.8.22]</p> <p>제22조의4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第22條의5 (申告義務) 18歲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敎育 또는 治療하는 施設의 責任者 및 關聯從事者는 자기의</p>	<p>[본조신설 2003.12.11]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03.12.11>]</p> <p>第22條의3 (信賴關係에 있는 者등을 同席) ①法院은 第5條부터 第9條와 第11條 및 第12條(第10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의 犯罪의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는 경우에는 檢査,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의 申請에 의하여 被害者와 信賴關係에 있는 者를 함께 할 수 있다.</p> <p>②搜查機關이 第1項의 被害者를 調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이 신청하면 被害者가 지정하는 者를 함께있게 할 수 있다.</p> <p>③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21조의2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할 때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함께 하게 하여야 한다.</p> <p>[本條新設 1997.8.22]</p> <p>제22조의4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 ①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서 규정된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第22條의5 (申告義務) 18歲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敎育 또는 治療하는 施設의 責任者 및 關聯從事者는 자기의</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u>第5條 내지 第10條, 刑法 第301條(强姦 등 傷害·致傷) 및 第301條의2(强姦 등 殺人·致死)의 犯罪의 被害者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搜查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u> [本條新設 1997.8.22]</p> <p>第22條의6 (證據保全의 特例) ①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被害者가 公判期日에 출석하여 證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u>疏明하여 당해 性暴力犯罪을 搜查하는 檢事에 대하여 刑事訴訟法 第184條(證據保全의 請求와 그 節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保全의 請求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피해자가 제21조의2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②第1項의 요청을 받은 檢事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u>인정하는 때에는 證據保全의 請求를 할 수 있다.</u> [本條新設 1997.8.22]</p> <p>第23條 (相談所의 설치)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被害相談所(이하 “<u>相談所</u>”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者가 相談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u>第5條부터 第10條, 刑法 第301條(强姦 등 傷害·致傷) 및 第301條의2(强姦 등 殺人·致死)의 犯罪의 被害者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搜查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u> [本條新設 1997.8.22]</p> <p>第22條의6 (證據保全의 特例) ①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被害者가 公判期日에 출석하여 證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u>밝혀서 당해 性暴力犯罪을 搜查하는 檢事에 대하여 刑事訴訟法 第184條(證據保全의 請求와 그 節次)第1項에서 규정된 證據保全의 請求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피해자가 제21조의2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②第1項의 요청을 받은 檢事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u>인정할 때에는 證據保全을 請求를 할 수 있다.</u> [本條新設 1997.8.22]</p> <p>第23條 (相談所를 설치)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被害相談所(이하 “<u>相談所</u>”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者가 相談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현행	순화안
<p>③相談所의 設置基準과 申告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습으로 定한다.</p> <p>第24條 (相談所의 業務) 相談所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性暴力被害를 申告받거나 이에 關한 相談에 應하는 일. 2. 性暴力被害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社會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事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人을 病院 또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는 일. 3. 加害者에 對한 告訴와 被害賠償 請求등 司法處理節次에 關하여 大韓辯護士協會·大韓法律救助公團 등 關係機關에 필요한 協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性暴力犯罪의 예방 및 防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其外 性暴力犯罪 및 性暴力被害에 關하여 調査·研究하는 일. <p>第25條 (保護施設의 설치)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社會福祉法人 其外 非營利法人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고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保護施設의 設置基準과 申告등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女性部습으로 定한다.</p> <p>第26條 (保護施設의 業務) 保護施設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24條 各號의 일. 2. 性暴力被害者를 一時保護하는 일. 	<p>③相談所의 設置基準과 申告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습으로 定한다.</p> <p>第24條 (相談所의 業務) 相談所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性暴力被害를 申告받거나 이에 關한 相談을 하는 일. 2. 性暴力被害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社會생활이 어렵거나 其外의 事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人을 病院 또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는 일. 3. 加害者에 對한 告訴와 被害賠償 請求등 司法處理節次를 大韓辯護士協會·大韓法律救助公團 등 關係機關에 필요한 協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性暴力犯罪의 예방 및 防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其外의 性暴力犯罪 및 性暴力被害에 關하여 調査·研究하는 일. <p>第25條 (保護施設을 설치)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社會福祉法人 其外의 非營利法人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고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保護施設의 設置基準과 申告등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女性部습으로 定한다.</p> <p>第26條 (保護施設의 業務) 保護施設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24條 各號의 일. 2. 性暴力被害者를 잠시保護하는 일.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3. <u>性暴力被害者の 신체적·정신적 安定回復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u></p> <p>4. <u>기타 性暴力被害者の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u></p> <p>第27條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休止 또는 廢止) 第23條第2項 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女性部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第28條 (監督) ①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第29條 (施設의 閉鎖등) 시장·군수·구청장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業務의 停止 또는 廢止를 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p> <p>1. 第23條第3項 또는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2. 正當한 사유없이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p> <p>第29條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p>	<p>3. <u>性暴力被害者에게 신체적·정신적 安定回復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u></p> <p>4. <u>그 밖의 性暴力被害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u></p> <p>第27條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休止 또는 廢止) 第23條第2項 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女性部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第28條 (監督) ①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에게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그 밖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p> <p>②第1項에서 규정된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第29條 (施設의 閉鎖등) 시장·군수·구청장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業務의 停止 또는 廢止를 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p> <p>1. 第23條第3項 또는 第25條第3項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2. 正當한 사유없이 第28條第1項에서 규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p> <p>第29條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9條에서 규정한 業務의 廢</p>

현행	순화안
<p>의 廢止를 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本條新設 1997.12.13]</p> <p>第30條 (經費의 보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3條第2項 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p> <p>第31條 (秘密嚴守의 義務)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32條 (유사명칭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아니면 性暴力被害相談所·性暴力被害者 保護施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第33條 (醫療保護) ①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國·公立病院·保健所 또는 民間醫療施設을 性暴力被害者의 治療를 위한 專擔醫療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專擔醫療機關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醫療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性暴力被害者의 保健相談 및 指導. 2. 性暴力被害의 治療.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治療.</p> <p>第34條 (權限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止를 명하거나 施設을 없애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本條新設 1997.12.13]</p> <p>第30條 (經費를 보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3條第2項 또는 第25條第2項에서 규정에 따라서 설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설치·운영에 들어가는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p> <p>第31條 (秘密嚴守을 義務)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32條 (유사명칭사용금지) 이 法에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아니면 性暴力被害相談所·性暴力被害者 保護施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第33條 (醫療保護) ①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國·公立病院·保健所 또는 民間醫療施設을 性暴力被害者를 治療하기 위한 專擔醫療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에서 규정된 지정된 專擔醫療機關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醫療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性暴力被害者의 保健相談 및 指導. 2. 性暴力被害의 治療. 3. 그 밖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治療.</p> <p>第34條 (權限을 위임) 여성부장관은 이 法에 따라서 權限의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35條 (罰則) 다음 <u>各號의 1에</u>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營利를 目的으로 이 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한 者.</u> 2. <u>第21條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義務를 위반한 者.</u> 3. <u>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閉鎖, 業務의 休止 또는 廢止命令을 받고도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계속 운영한 者.</u> <p>第36條 (過怠料) ①다음 <u>各號의 1에</u>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5 또는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者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者.</u> 2. <u>第32條의 規定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者.</u>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賦課·徵收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지체없이</u> 管轄法院에 그 사유를 通報하여야</p>	<p>第35條 (罰則) 다음 <u>各號 1에</u>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營利를 目的으로 이 法에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한 者.</u> 2. <u>第21條 또는 第31條에서 規정한 秘密嚴守義務를 위반한 者.</u> 3. <u>第29條에서 규정된 施設의 閉鎖, 業務의 쉬거나 또는 廢止命令을 받고도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계속 운영한 者.</u> <p>第36條 (過怠料) ①다음 <u>各號 1에</u>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5 또는 제28조제1항에서 規정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者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者.</u> 2. <u>第32條에서 規정한 유사명칭사용 금지를 위반한 者.</u> <p>②第1項에서 규정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賦課·徵收한다.</p> <p>③第2項에서 規정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第2項에서 규정된 過怠料處분을 받은 者가 第3項에서 規정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지체없이</u> 管轄法院에 그 사유를 <u>알려야</u> 하며, 그</p>

현행	순화안
<p>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p> <p>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p> <p>第3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以下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4條의2 또는 第3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p>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p> <p>⑤第3項에 따라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p> <p>第3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4條의2 또는 第3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6.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1條 (目的) 이 법은 基本的 倫理와 社會秩序를 침해하는 特定強力犯罪에 대한 處罰과 節次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生命과 身體의 安全을 保障하고 犯罪로부터 社會를 防衛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1條 (目的) 이 법은 基本的 倫理와 社會秩序를 침해하는 特定強力犯罪에 대한 處罰과 節次에 관한 特例를 規定하여 國民의 生命과 身體의 安全을 保障하고 犯罪로부터 社會를 防衛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適用範圍) ①이 법에서 “特定強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p>	<p>第2條 (適用範圍) ①이 법에서 “特定強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p>
<p>1. 刑法 第24章의 殺人의 罪중 第250條(殺人·尊屬殺害), 第253條(僞計 등에 의한 囑託殺人등), 第254條(未遂犯. 다만, 第251條 및 第252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p>	<p>1. 刑法 第24章의 殺人의 罪중 第250條(殺人·尊屬殺害), 第253條(僞計 등에 의한 囑託殺人등), 第254條(未遂犯. 다만, 第251條 및 第252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p>
<p>2. 刑法 第31章의 略取와 誘引의 罪중 第287條(未成年者의 略取·誘引), 第288條(營利등을 위한 略取·誘引·賣買등), 第289條(國外移送을 위한 略取·誘引·賣買), 第293條(常習犯), 第294條(未遂犯. 다만, 第291條 및 第292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p>	<p>2. 刑法 第31章의 略取와 誘引의 罪중 第287條(未成年者의 略取·誘引), 第288條(營利등을 위한 略取·誘引·賣買등), 第289條(國外移送을 위한 略取·誘引·賣買), 第293條(常習犯), 第294條(未遂犯. 다만, 第291條 및 第292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p>
<p>3. 刑法 第32章의 貞操에 관한 罪중 凶器 기타 위험한 物건을 휴대하거나 2人이상이 合同하여 범한 第297條(強姦), 第298條(強制醜行), 第299條(準強姦·準強制醜行), 第300條(未遂犯), 第305條(未成年者에 대한 姦淫·醜行)의 罪 및 第301條(強姦등에 의한 致死傷)의 罪.</p>	<p>3. 刑法 第32章의 貞操에 관한 罪중 凶器 그 밖의 위험한 物건을 보이거나 2人이상이 合同하여 범한 第297條(強姦), 第298條(強制醜行), 第299條(準強姦·準強制醜行), 第300條(未遂犯), 第305條(未成年者에 대한 姦淫·醜行)의 罪 및 第301條(強姦등에 의한 致死傷)의 罪.</p>
<p>4. 刑法 第38章의 強盜의 罪중 第333條(強盜), 第334條(特殊強盜), 第335條(準強盜), 第336條(略取強盜),</p>	<p>4. 刑法 第38章의 強盜의 罪중 第333條(強盜), 第334條(特殊強盜), 第335條(準強盜), 第336條(略取強盜),</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337條(强盜傷害·致傷), 第338條(强盜殺人·致死), 第339條(强盜强姦), 第340條(海上强盜), 第341條(常習犯),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29條 내지 第332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p> <p>5.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第4條(團體등의 구성·活動),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關한法律 第5條의8(團體등의 組織).</p> <p>②第1項 各號의 犯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하는 罪는 特定强力犯罪로 본다.</p> <p>第3條 (累犯의 刑) 特定强力犯罪로 刑을 받아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3年이내에 다시 特定强力犯罪를 범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倍까지 加重한다.</p> <p>第4條 (少年에 대한 刑) ①特定强力犯罪를 범한 때 18歲미만인 少年에 대하여 死刑 또는 無期刑으로 處할 것인 때에는 少年法 第5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20年의 有期懲役으로 한다.</p> <p>②特定强力犯罪를 범한 少年에 대하여 不定期刑을 宣告할 때에는 少年法 第6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長期는 15年, 短期는 7年을 초과하지 못한다.</p> <p>第5條 (執行猶豫의 缺格期間) 特定强力犯罪로 刑의 宣告를 받아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가 다시 特定强力犯罪를 범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猶豫하지 못한다.</p>	<p>第337條(强盜傷害·致傷), 第338條(强盜殺人·致死), 第339條(强盜强姦), 第340條(海上强盜), 第341條(常習犯),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29條부터 第332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p> <p>5.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第4條(團體등의 구성·活動),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關한法律 第5條의8(團體등의 組織).</p> <p>②第1項 各號의 犯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하는 罪는 特定强力犯罪로 본다.</p> <p>第3條 (累犯의 刑) 特定强力犯罪로 刑을 받아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3年이내에 다시 特定强力犯罪를 범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倍까지 加重한다.</p> <p>第4條 (少年에 대한 刑) ①18歲미만인 少年이 特定强力犯罪를 범한 때 死刑 또는 無期刑으로 處할 것인 때에는 少年法 第5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20年의 有期懲役으로 한다.</p> <p>②特定强力犯罪를 범한 少年에 대하여 不定期刑을 宣告할 때에는 少年法 第60條第1項 但書에도 불구하고 長期는 15年, 短期는 7年을 넘지 못한다.</p> <p>第5條 (執行猶豫의 缺格期間) 特定强力犯罪로 刑의 宣告를 받아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가 다시 特定强力犯罪를 범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猶豫하지 못한다.</p>

현행	순화안
<p>第6條 (保釋등의 取消) 法院은 特定強力犯罪事件의 被告人이 被害者 <u>기타</u> 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害를 加하거나 加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釋 또는 拘束의 執行停止를 取消할 수 있다.</p> <p>第7條 (證인에 대한 身邊安全措置) ① 檢事는 特定強力犯罪事件의 證人이 被告人 <u>기타의 사람으로부터</u> 生命·身體에 害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管轄警察署長에게 證人의 身邊安全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證人은 檢事에게 第1項의 措置를 취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p> <p>③ 裁判長은 檢事에게 第1項의 措置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第1項의 요청을 받은 管轄警察署長은 즉시 證人의 身邊安全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 이를 檢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p> <p>第8條 (出版物등으로부터의 被害者 보호) 特定強力犯罪중 第2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 및 第2項(다만, 第1項第1號를 제외한다)에 規定된 犯罪로 搜查 또는 審理중에 있는 事件의 被害者나 特定強力犯罪로 搜查 또는 審理중에 있는 事件을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에 대하여는 姓名, 年齡, 住所, 職業, 容貌등에 依하여 그가 被害者 또는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p>	<p>第6條 (保釋등의 取消) 法院은 特定強力犯罪事件의 被告人이 被害者 <u>그 밖의 事件을 裁判하면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害를 加하거나 加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하여 決定으로 保釋 또는 拘束의 執行停止를 取消할 수 있다.</u></p> <p>第7條 (證人を 신체安全措置) ① 檢事는 特定強力犯罪事件의 證人이 被告人 <u>그 밖의 사람으로부터</u> 生命·身體에 害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管轄警察署長에게 證人의 신체安全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證人은 檢事에게 第1項의 措置를 취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p> <p>③ 裁判長은 檢事에게 第1項의 措置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第1項의 요청을 받은 管轄警察署長은 즉시 證人의 身邊安全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 이를 檢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p> <p>第8條 (出版物등으로부터 被害者 보호) 特定強力犯罪중 第2條第1項第2號부터 第5號 및 第2項(다만, 第1項第1號를 제외한다)에 規定된 犯罪로 搜查 또는 審理중에 있는 事件의 被害者나 特定強力犯罪로 搜查 또는 審理중에 있는 事件을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에 대하여는 <u>이름 나이, 住所, 職業, 얼굴등에 依하여 그가 被害者 또는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u></p>

【부록】 형사특별법령의 용어순화 대비표

현행	순화안
<p><u>이나</u> 寫眞을 新聞紙 <u>기타</u> 出版物에 게재하거나 放送 또는 有線放送하지 못한다. 다만, 被害者, <u>申告하거나 告發한 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被害者, 申告 또는 告發한 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配偶者, 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이 명시적으로 同意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第9條 (訴訟進行的 協議) ①法院은 特定強力犯罪에 관하여 檢事 및 辯護人과 公判期日의 지정 <u>기타</u> 訴訟의 進行에 필요한 사항을 協議할 수 있다. ②그 協議는 訴訟進行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判決에 영향을 주어서는 <u>아니된다.</u> ③特定強力犯罪에 관하여 證據書類 또는 證據物의 調査를 請求하는 경우에는 相對方에게 미리 閱覽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u>相對方이 異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第10條 (集中審理) ①法院은 特定強力犯罪事件의 審理에 2日이상이 <u>소요 되는 때에는</u> 可能한 한 매일 계속 開廷하여 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②裁判長은 <u>특별한 事情이 없는 前의</u> 公判期日로부터 7日이내로 다음 公判期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이 公判期日을 <u>준수하도록</u>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措置를 행할 수 있다.</p> <p>第11條 (公判廷에서의 身體拘束) 裁判長은 特定強力犯罪로 公訴提起된 被告人이 暴力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虞려가 있다고 <u>인정하는 때에는</u> 公</p>	<p>寫眞을 新聞紙 <u>그 밖의</u> 出版物에 게재하거나 放送 또는 有線放送하지 못한다. 다만, 被害者, <u>申告, 告發한 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被害者, 申告 또는 告發한 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配偶者, 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이 명시적으로 同意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第9條 (訴訟進行을 協議) ①法院은 特定強力犯罪에 관하여 檢事 및 辯護人과 公判期日의 지정 <u>그 밖의</u> 訴訟의 進行에 필요한 사항을 協議할 수 있다. ②그 協議는 訴訟進行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判決에 영향을 주어서는 <u>안된다.</u> ③特定強力犯罪에 관하여 證據書類 또는 證據物의 調査를 請求하는 경우에는 相對方에게 미리 <u>볼 수 있는</u>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u>相對方이 異議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u></p> <p>第10條 (集中審理) ①法院은 特定強力犯罪事件의 審理에 2日이상이 <u>필요한 때에는</u> 可能한 한 매일 계속 開廷하여 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②裁判長은 <u>특별한 事情이 없으면 前의</u> 公判期日로부터 7日이내로 다음 公判期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이 公判期日을 <u>준수하도록</u>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措置를 행할 수 있다.</p> <p>第11條 (公判廷에서 身體拘束) 裁判長은 特定強力犯罪로 公訴提起된 被告人이 暴力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虞려가 있다고 <u>인정하는 때에는</u> 公判廷</p>

현행	순화안
<p>判廷에서 被告人의 身體를 拘束할 것을 命하거나 <u>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u></p> <p>第12條 (簡易公判節次의 決定) ①特定強力犯罪의 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公訴事實을 自白한 때에는 法院은 簡易公判節次에 의하여 審判할 것을 決定할 수 있다. 特定強力犯罪와 다른 罪가 併呑된 경우에도 같다.</p> <p>②第1項의 決定이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86條의3, 第297條의2, 第301條의2, 第318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p> <p>第13條 (判決宣告) 法院은 特定強力犯罪事件에 관하여 辯論을 終結한 때에는 신속하게 判決을 宣告하여야 한다. 복잡한 事件이나 <u>기타 특별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도 判決의 宣告는 辯論終結日부터 14日을 초과하지 못한다.</u></p>	<p>에서 被告人의 身體를 拘束할 것을 命하거나 <u>그 밖의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u></p> <p>第12條 (簡易公判節次 決定) ①特定強力犯罪의 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公訴事實을 自白한 때에는 法院은 簡易公判節次에 의하여 審判할 것을 決定할 수 있다. 特定強力犯罪와 다른 罪가 併呑된 경우에도 같다.</p> <p>②第1項의 決定이 있는 事件은 刑事訴訟法 第286條의3, 第297條의2, 第301條의2, 第318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p> <p>第13條 (判決宣告) 法院은 特定強力犯罪事件에 관하여 辯論을 <u>끝나면</u> 신속하게 判決을 宣告하여야 한다. 복잡한 事件이나 <u>그 밖에</u> 특별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도 判決의 宣告는 辯論終結日부터 14日을 초과하지 못한다.</p>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성천, 형법총론, 동헌출판사, 2005.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4.

_____, 형법각론, 박영사, 2005.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

_____, 형법각론, 박영사, 2005.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_____, 형법각론, 홍문사, 2002.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5.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_____, 형법각론, 박영사, 200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_____,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이훈동/이주일, 행형관련법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임 용, 형법총론, 법문사, 2004.

_____, 형법각론, 법문사, 2005.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4.

2. 논문 및 기타자료

강현철,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고영신, 법률용어 바로쓰기, 사법연수25, 2000.10.

국회법제실,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국가기관 합동회의, 국회법제실, 2004.

류창호, 민법 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법제처,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제2집, 상,하, 법제처, 2003.

_____, 법령용어순화편람 : 일상생활공용법령용어, 법제처, 1996.

신각철,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식 표기 용어의 정비, 새국어생활 95.6, 국립국어연구원, 1995

신근호, 법령순화사업의 발전방향과 관련사례 연구, 법제 통권 제423호, 법제처, 1993.9.

이상희, 법률 한글화작업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글사랑 14, 2000.8.

정완/윤동호/김정태 공저, 형사법령용어의 순화(醇化)와 체계적 통일화 방안 연구 :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3.

한국법제연구원, 法令用語에 관한 研究 : 用語整備를 위한 基礎理論, 한국법제연구원, 1995.

_____,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